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전 문 위 원 황 충 연

목 차

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 1

1.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 1

2. 세입·세출 개요 ····· 3

가. 세 입 ····· 3

나. 세 출 ····· 4

3. 기금 개요 ····· 6

가. 수 입 ····· 6

나. 지 출 ····· 7

4. 예비비 지출 ····· 9

5. 재무회계 ····· 10

가. 재정상태 ····· 10

나. 재정운영 ····· 11

다. 순자산변동 ····· 13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 14

1. 일반회계 ····· 14

가. 개 요 ····· 14

1) 세입결산 ····· 14

2) 세출결산 ····· 1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8

1) 총괄: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 의무 준수 필요 ····· 18

(1)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필요 ····· 20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준수 필요 ····· 24

2) 총괄: 성인지 예결산의 실효성 제고 필요 ····· 27

3) 농업협상대응: 연구용역의 연례적·반복적인 이월 주의 필요 ··· 33

4) 국제기구분담금: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 검토 필요 ····· 37

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 연간 기금 조성 목표액이 크게 미달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부 유치 방안 필요 등 ····· 41

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기사형 광고 등의 투명성 제고 및 홍보비의 예산 집행지침 준수 필요 등 ····· 47

(1) 기사형 광고의 투명성 및 식별성 제고 필요 ····· 50

(2) 언론사 배너광고의 홍보 효과성 제고 필요 ····· 52

(3) 홍보비 등의 예산 집행지침 준수 필요 ····· 54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56

가. 개 요 ····· 56

1) 세입결산 ····· 56

2) 세출결산 ····· 5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60

1) 총괄: 실집행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타 계정· 기금 등에 대한 적정 규모의 전출 등 필요 ····· 60
(1) 세입재원 없는 이월 지양 필요 ····· 61
(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64
(3) 계정 및 회계·기금 간 재원 이동의 적정성 확보 필요 ····· 68
(4) 공익직불기금의 농특회계로의 이관 검토 필요 ····· 70
2) 농촌고용인력지원: 기숙사 건립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철저 등 필요 ····· 72
3) 경영이양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수요의 현실적 예측 및 성과지표 개발 필요 ····· 77
(1) 사업 수요의 현실적 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 필요 ····· 73
(2)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82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연도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예산 편성 및 안정적 농지 공급 방안 마련 등 필요 ····· 84
(1) 연도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예산을 편성 필요 ····· 85
(2) 청년농에 대한 안정적 농지 공급기반 마련 필요 ····· 88
5) 수리시설개보수: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 시 부당한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검토 필요 ····· 90
6) 산업·식품용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 99
(1)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100
(2) 예산의 실제 집행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106
7)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사업 수요 예측의 정확성 및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108
(1)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 설계 및 예산 편성 필요 ····· 109

(2)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14
8) 가축방역대응지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부진 방지 필요 ····· 117
9)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 기반 마련 필요 ····· 124
10) 연구개발(R&D) 사업 공통: 연구개발(R&D)사업 관련 미환수 금액의 조속한 환수 필요 등 ····· 129
(1) 제재사유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환수액의 조속한 환수 필요 132
(2)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관련 미흡한 R&D 정책 지원 개선 필요 ····· 139
11) 임대형 스마트팜(지역특화): 보조금 관련 지침 위반 주의 및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147
(1) 보조금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보조금 교부 필요 ····· 149
(2) 이월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점검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152
12) 도시농업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개선 필요 ····· 155
13)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보조금 관련 지침 위반 주의 및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163
14) 종자산업활성화지원: 종자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170
15)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식품기업 창업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검토 및 사업관리 개선 필요 ····· 175
16) 푸드서비스선진화: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 목적 외 사용 소지 등 ····· 181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소지 ····· 183
(2)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선별지원 효과 저조 ····· 184

(3)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185
17) 식품산업정책관 SOC 사업: 사업 지연 방지 및 보조금 교부시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 187
(1) SOC 사업의 과다한 지연 방지 필요 ····· 188
(2) 집행가능성 검토가 미흡한 보조금 교부의 문제점 ·····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92

가. 개 요 ····· 192
1) 세입결산 ····· 192
2) 세출결산 ····· 193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194

가. 개 요 ····· 194
1) 세입결산 ····· 194
2) 세출결산 ····· 194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95

가. 개 요 ····· 195
1) 세입결산 ····· 195
2) 세출결산 ····· 19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97
1)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연례적 실집행부진 및 이월 문제 개선 필요 ····· 197
2)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205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12
가. 개 요 ····· 212
1) 세입결산 ····· 212
2) 세출결산 ····· 212
7. 양곡관리특별회계 ····· 213
가. 개 요 ····· 213
1) 세입결산 ····· 213
2) 세출결산 ····· 21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17
1) 정부양곡매입비: 쌀값변동대응 예산의 적절한 규모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최소한의 반영 필요 ····· 217
2) 정부양곡관리비: 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사업계획 마련을 통한 이월 방지 노력 필요 ····· 222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28
가. 개 요 ····· 228
1) 수입결산 ····· 228
2) 지출결산 ····· 23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33
1) 비축지원: 콩 수매·비축 계획액의 수급관리정책에 맞는 현실화 필요 ····· 233
2) 자조금지원: 자조금단체의 자체재원 이월금 과다 누적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40
3)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정책지원이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되는 구조 개선 등 ····· 248
(1) 정책지원이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되는 문제 개선 필요 ·· 250
(2)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 이행 관리체계 강화 필요 ····· 252

9. 농지관리기금 ····· 254
가. 개 요 ····· 254
1) 수입결산 ····· 254
2) 지출결산 ····· 25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59
1) 총괄: 농지관리기금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검토 등 필요 ····· 259
(1) 농지관리기금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60
(2) 농지관리기금 재정구조의 안정성 제고 필요 ····· 264
(3)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 지양 필요 ····· 265
2) 농지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267
(1) 자의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268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재원 확보 필요 ····· 271
3) 맞춤형농지지원(융자):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 존중 및 청년농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필요 ····· 275
4) 새만금지구개발: 새만금사업지역 내 조속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노력 필요 ····· 282
5)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특정 국가들에 집중된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 진출국 다변화 필요 ····· 289
1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295
가. 개 요 ····· 295
1) 수입결산 ····· 295
2) 지출결산 ····· 297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298
가. 개 요 ····· 298
1) 수입결산 ····· 298
2) 지출결산 ····· 30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03
1) 총괄: FTA기금의 재정안전성 확보 등 필요 ····· 303
(1) FTA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농특회계 전입금 확충 필요 ····· 304
(2) FTA기금 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311
(3) 보조금 정산 및 미반납액 환수 철저 필요 ····· 313
2) 피해보전직불: 계획액과 집행액 간 괴리 축소 노력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315
3)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투자 지연 방지, 회수재원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필요 등 ····· 321
(1) 자펀드의 투자 지연 방지 필요 ····· 322
(2) 세컨더리 펀드 등 운용 심사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 ····· 327
(3) 회수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필요 ····· 330
4) 축사시설현대화(보조, 융자):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 등 ····· 338
(1)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관리 강화 등 필요 ····· 339
(2) 신규 사업 기획 미흡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 불용 ····· 347

1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350
가. 개 요 ····· 350
1) 수입결산 ····· 350
2) 지출결산 ····· 353

13. 축산발전기금 ····· 354
가. 개 요 ····· 354
1) 수입결산 ····· 354
2) 지출결산 ····· 35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59
1) 말산업육성지원 :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기금 보조사업과 마사회 운영경비 간 기능·역할 구분 필요 ····· 359
(1)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 360
(2) 기금 보조사업과 마사회 운영경비 간 기능·역할 구분 필요 ···· 367
2) 축산물수급관리(보조): 축산물수급안정(위탁)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준수 및 객관적 집행 필요 등 ····· 373
(1) 축산물수급안정(위탁)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준수 및 객관적 집행 필요 ····· 374
(2) 비육용암소시장 육성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 ····· 381
3) 가축개량지원: 한우젖소개량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령 준수 필요 등 ····· 386
(1) 한우젖소개량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령 준수 필요 ···· 387
(2) 계획적 신규사업 추진 필요 ····· 395
4) 가축분뇨처리지원(보조·융자):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 개선 필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축산환경관리원 청사신축 기본계획 용역 분할 계약 ····· 400
(1)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 주민수용성 확인 절차 강화 및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401
(2)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사업 건축기획 용역 계약 ····· 408
5) 기타경비: 관서운영경비 미대상 지출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 413

14. 양곡증권정리기금 ····· 417

가. 개 요 ····· 417

1) 수입결산 ····· 417

2) 지출결산 ····· 419

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세입 예산액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30조 2,101억원이며, 29조 1,27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7조 8,827억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1조 2,443억원이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7,312,657	16,639,958	16,606,963	2	32,993	△705,694
기 금	12,897,420	12,487,033	11,275,728	-	1,211,304	△1,621,692
총 계	30,210,077	29,126,991	27,882,691	2	1,244,297	△2,327,386

* 총계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세출예산(당초지출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35조 527억원이며,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예산(지출)현액은 35조 8,87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31조 9,828억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조 8,083억원과 불용액 1조 4,745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 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예산	22,180,051	672,693	128,900	228,544 △228,544	14,731 △14,731	-	22,981,644	20,707,110	1,785,621	488,913
기금	12,872,620	8,797	11,500	-	13,300	107,074 △107,074	12,906,217	11,275,728	22,688	985,565
총계	35,052,671	681,489	140,400	228,544 △228,544	28,031 △14,731	107,074 △107,074	35,887,860	31,982,838	1,808,309	1,474,477
총지출**	18,339,237	500,450	70,200	228,544 △228,544	28,031 △14,731	107,074	19,030,261	17,746,158	829,403	454,700

* 총계 기준

** 총지출: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 기타증감: (예산) 내역변경, 세목변경, (기금) 공자기금 예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 세입·세출 개요

가. 세 입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7조 3,127억원이고, 16조 6,40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6조 6,070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30억원이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21,216	17,175	10,916	2	6,257	△10,300
농특회계[1]	14,490,553	13,729,308	13,707,888	-	21,419	△782,665
에특회계[2]	43,047	5,716	5,667	-	49	△37,380
혁특회계[3]	-	51	50	-	1	50
지특회계[4]	11,822	16,361	12,053	-	4,308	231
고특회계[5]	-	-	-	-	-	-
양특회계[6]	2,746,019	2,871,348	2,870,389	-	959	124,370
계	17,312,657	16,639,958	16,606,963	2	32,993	△705,694

* 총계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 양곡관리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가 당초 예산액보다 5,950억원이 적게 수납되어 전체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7,057억원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0억원으로, 발생 사유는 체납자 재력 부족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 체납 및 납기 미도래 등임.

나. 세 출

□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계 기준 22조 1,801억원이며,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액 6,727억원, 예비비 1,289억원 등 8,016억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22조 9,816억원임.

【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일반회계	5,804,217	9,716	70,200	1,955 △1,955	4,189 △4,189	5,884,133	5,736,362	4,841	142,930
농특회계	12,799,379	561,429	58,700	6,631 △6,631	4,656 △4,656	13,419,509	11,466,360	1,611,977	341,172
에특회계	17,363	-	-	-	-	17,363	16,873	-	490
혁특회계	-	-	-	-	-	-	-	-	-
지특회계	795,256	101,493	-	-	-	896,749	727,145	167,803	1,801
고특회계	17,817	-	-	-	-	17,817	15,297	-	2,520
양특회계	2,746,019	55	-	219,958 △219,958	5,886 △5,886	2,746,073	2,745,073	1,000	-
총계	22,180,051	672,693	128,900	228,544 △228,544	14,731 △14,731	22,981,644	20,707,110	1,785,621	488,913
총지출	9,896,323	491,654	58,700	228,544 △228,544	14,731 △14,731	10,446,677	9,551,049	806,715	88,913
내부거래	12,283,728	181,039	70,200	-	-	12,534,967	11,156,061	978,906	400,000

* 총계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이·전용액은 2,285억원으로 가축방역, 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 정부양곡관리비, 정부양곡매입비, 쌀소비기반구축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에서 충당하였음.

□ 예산현액 22조 9,816억원 중 20조 7,071억원을 지출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금부족, 공사기간 소요 등으로 1조 7,85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889억원은 불용처리하였음.

3. 기금 개요

가. 수 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의 2024 회계연도 총 수입계획액은 12조 8,974억원이며, 12조 4,87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조 2,757억원을 수납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농지기금)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1조 2,113억원은 미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수입계획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대비 수납증감 (B-A)
	당초	변경 (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94,770	2,419,570	2,203,261	2,199,892	3,369	-	△219,678
농지관리기금	4,006,330	4,006,330	4,064,658	2,868,163	1,196,495	-	△1,138,167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3,019,399	3,019,399	2,974,467	2,970,267	4,200	-	△49,132
양곡증권정리기금	1,531,096	1,531,096	1,550,413	1,550,413	-	-	19,31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88,566	588,566	365,557	365,542	15	-	△223,024
축산발전기금	962,087	962,087	920,179	912,954	7,225	-	△49,13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70,372	370,372	408,497	408,497	-	-	38,125
합 계	12,872,620	12,897,420	112,487,033	11,275,728	1,211,304	-	△1,621,692
사업운용수입	5,042,077	5,042,077	5,275,515	4,064,210	1,211,304	-	△977,867
정부내부수입	6,784,727	6,809,527	6,120,560	6,120,560	-	-	△688,967
여유자금회수	1,045,816	1,045,816	1,090,957	1,090,957	-	-	45,141

* 총계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수납액은 변경 계획보다 1조 6,217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지관리기금의 농지보전부담금 감소 등이 주요 요인임.

나. 지 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총계 기준 지출계획액(여유자금운용 제외)은 11조 3,238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8억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11조 3,326억원인데, 이 중 10조 3,244억원을 지출하고 22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856억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지출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 초	변 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94,770	2,419,570	5,285	2,424,855	2,199,892	6,367	21,580
농지관리기금	4,006,330	4,006,330	500	4,006,830	2,868,163	-	600,54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019,399	3,019,399	36	3,019,435	2,970,267	-	292,079
양곡증권정리기금	1,531,096	1,531,096	-	1,531,096	1,550,413	-	17,98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88,566	588,566	-	588,566	365,542	15,000	925
축산발전기금	962,087	962,087	2,976	965,063	912,954	1,321	52,45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70,372	370,372	-	370,372	408,497	-	1
총 계	12,872,620	12,897,420	8,797	12,906,217	11,275,728	22,688	985,565
일 반 지 출	8,442,914	8,574,788	8,797	8,583,585	8,195,109	22,688	365,788
정부 내부지출	2,749,023	2,749,023	-	2,749,023	2,129,246	-	619,777
합 계	11,191,937	11,323,811	8,797	11,332,608	10,324,355	22,688	985,565
여유자금 운용	1,680,683	1,573,609	-	1,573,609	951,373	-	-

* 총계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이월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 중 일부 공사지연 등으로 227억원이 발생하였고,

□ 불용은 농지기금의 공자기금예탁금 6,000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공익기능증진직불 집행잔액 2,918억원 등 총 9,856억원 발생하였음.

4. 예비비 지출

□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비비 배정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7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15억원으로 총 702억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음.

지출내역을 보면 농식품소비기반조성(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하여 587억원, 비축지원(농산물 긴급가격안정) 115억원을 배정받아 전액 지출하였음.

【 2024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

(단위 : 백만원)

집 행 내 역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농특회계	농식품소비기반조성 (농축산물 할인지원)	58,700	58,700	-	-
농안기금	비축지원 (농산물 긴급가격안정)	11,500	11,500	-	-
합 계		**70,200**	**70,200**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추석·김장철 할인지원 사업 진행을 위하여 세 차례(1차: 365억원, 2차: 106억원, 3차: 116억원)에 걸쳐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하였음.

□ 비축지원 사업의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으로서 우선 일반회계에 예비비 115억원을 배정한 후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전입하여 지출하였으며,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가격안정지원 목적으로 지출하였음.

5.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79,205,243	78,877,842	327,401	0.4 %
부 채	10,036,757	9,879,552	157,205	1.6 %
순자산	69,168,487	68,998,290	170,197	0.2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2024년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산은 79조 2,052억원으로 전기 대비 3,274억원 증가(0.4%)하였는데, 장기투자증권, 장기융자금 등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산 증가(2,494억원) 등이 주요 요인임.

□ 2024년말 현재 부채는 10조 368억원으로 전기 대비 1,572억원 증가(1.6%)하였는데, 한국은행 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 증가(1조 2,692억원)가 주요 요인임.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4년 말 현재 69조 1,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2억원 증가(0.2%)하였음.

나. 재정운영

【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운영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금 액	비 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11,541,511	12,106,814	(565,303)	(4.7 %)
Ⅱ. 관리운영비	430,078	412,547	17,531	4.2 %
Ⅲ. 비배분비용	508,437	687,226	(178,789)	(26.0 %)
Ⅳ. 비배분수익	175,706	167,778	7,928	4.7 %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2,304,320	13,038,808	(734,488)	(5.6 %)
Ⅵ. 비교환수익 등	1,123,086	1,099,875	23,211	2.1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1,181,234	11,938,933	(757,699)	(6.3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2024년 중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 13조 5,757억원에서 프로그램 수익 2조 342억원을 차감한 11조 5,415억원으로 전기 대비 5,653억원 감소(△4.7%)하였음.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594억원과 그 밖의 경비 1,707억원으로 전기 대비 175억원(4.2%) 증가하였음.

□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1,095억원, 이자비용 3,050억원 등 총 5,084억원이며,

□ 비배분 수익은 이자수익 923억원, 기타수익 779억원 등 총 1,757억원임.

□ 비교환수익은 1조 1,2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2억원 증가함.

□ 재정운영순원가는 12조 3,043억원이고 여기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최종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7,577억원 감소(△6.3%)한 11조 1,812억원임.

다. 순자산변동

【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순자산변동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3년	증 감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68,998,290	69,998,002	(999,712)	(1.4 %)
Ⅱ.재정운영결과	11,181,234	11,938,933	(757,699)	(6.3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11,406,284	11,298,223	108,061	1.0 %
Ⅳ.조정항목	(54,854)	(359,001)	304,147	84.7 %
Ⅴ.기말순자산 (Ⅰ-Ⅱ+Ⅲ+Ⅳ)	69,168,487	68,998,290	170,197	0.2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기초순자산은 전기말 순자산 대비 9,997억원 감소한 68조 9,983억원으로 인식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는 11조 1,812억원임.

□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1조 4,063억원으로 전기 대비 1,081억원 증가하였고, 조정항목은 △549억원으로 전기 대비 3,041억원 증가하였음.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과 조정항목을 더한 기말순자산은 69조 1,685억원임.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 169억 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1억 8,700만원, 재산수입 8억 6,400만원 등 212억 1,6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기타 경상이전수입액 감소 등으로 40억 4,100만원이 감소한 171억 7,500만원임.

□ 징수결정액 171억 7,5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44억 5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18억 2,900만원, 재산수입으로 11억 7,200만원 등 총 109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고, 체납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62억 5,7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16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감소 등으로 예산액 대비 73.9% 감소한 44억 5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864**	**1,317**	**1,172**	**-**	**144**	**308**
토지대여료	508	422	284	-	138	△224
건물대여료	210	257	252	-	4	42
기타관유물대여료	10	7	7	-	-	△3
기타재산이자수입	136	631	629	-	1	493
경상이전수입	**16,908**	**10,456**	**4,405**	**2**	**6,049**	**△12,503**
벌금및과료	-	5	-	-	5	-
과태료	1,456	2,114	1,391	2	721	△65
징계부과금	-	318	-	-	318	-
과징금	619	4,210	618	-	3,592	△1
변상금	672	80	7	-	73	△665
위약금	206	10	8	-	1	△198
가산금	33	399	18	1	380	△15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2	3,320	2,362	-	958	△11,56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187**	**1,889**	**1,829**	**-**	**60**	**△358**
면허료및수수료	2,000	1,772	1,713	-	59	△287
입학금 및 수업료	38	3	3	-	-	△35
실습수입	14	4	4	-	-	△10
기타잡수입	135	110	109	-	-	△26
수입대체경비	**1,201**	**761**	**759**	**-**	**2**	**△442**
수업료	428	327	327	-	-	△101
기타잡수입	773	434	432	-	2	△341
관유물매각대	**56**	**2,753**	**2,752**	**-**	**1**	**2,696**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0	-	-	-	-	-50
토지매각대	1	2,748	2,747	-	1	2,746
재고자산매각대	5	5	5	-	-	-
합 계	**21,216**	**17,175**	**10,916**	**2**	**6,257**	**△10,3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5조 8,042억 1,7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7억 1,600만원과 예비비 702억 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5조 8,841억 3,300만원으로 증가함.

□ 농업인력육성 355억 6,800만원, 농업신산업육성 76억 6,0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653억원, 국제협력협상 1,885억 1,300만원, 농림축산검역검사 972억 4,100만원, 종자관리 167억 9,800만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41억 4,700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3,105억 8,700만원 등 총 5조 7,363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제협력협상 23억 5,200만원, 농림축산검역검사 13억 5,100만원 등 총 48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간거래(전출금) 1,300억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75억 6,500만원 등 1,429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육성	36,770	777	-	189 △189	935 △935	37,547	35,568	438	1,542
농업신산업육성	7,660	-	-	-	-	7,660	7,660	-	-
농업생산기반정비	165,300	-	-	-	-	165,300	165,300	-	-
국제협력협상	190,627	468	-	150 △150	13 △13	191,095	188,513	2,352	230
농림축산검역검사	94,317	7,808	-	430 △630	1,119 △1,119	101,925	97,241	1,351	3,333
종자관리	16,819	-	-	100 △100	244 △244	16,819	16,798	-	21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4,387	-	-	7 △7	2 △2	4,387	4,147	-	24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317,990	663	-	1,078 △878	1,877 △1,877	318,853	310,587	701	7,565
회계간거래(전출금)	4,809,445	-	58,700	-	-	4,868,145	4,738,145	-	130,0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60,902	-	11,500	-	-	172,402	172,402	-	-
합 계	**5,804,217**	**9,716**	**70,200**	**1,955 △1,955**	**4,189 △4,189**	**5,884,133**	**5,736,362**	**4,841**	**142,93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총괄: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 의무 준수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뿐 아니라 농협과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별 맞춤형 고용 유인 방안 마련 등 구조적 개선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농협 등 소관 기관들이 법정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 중임.

□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32조의2[7]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33조[8]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음.

【 장애인 의무 고용률 】

구 분		'19~'21	'22~'23	'24~
국가	공무원	3.4%	3.6%	3.8%
	민간근로자	3.4%	3.6%	3.8%
공공기관		3.4%	3.6%	3.8%
민간기관		3.1%	3.1%	3.1%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다음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9]는 중

8)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각 호 생략>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농협중앙회 포함[10])이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연간 구매액의 1% 이상(25년부터 1.1%로 상향)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1)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관 기관의 경우 '24년에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7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총 60억 8,30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음.

【 2024회계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 】

(단위 : 천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212,120	61,517	11,231	160,47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농협**	**계**
60,954	2,474	5,574,243	6,083,00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최근 5년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24년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전년과 동일하고, 납부액은 '23년 53억 6,295만원에서 '24년 60억 8,3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0)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을 중소기업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는데 농협중앙회는 중소기업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0	0	0	0	36,887
	민간근로자	141,585	166,288	111,476	100,688	175,233
한국마사회		5,176	0	36,996	38,569	61,517
한국농어촌공사		349,272	0	0	0	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9,250	10,848	0	0	0
축산물품질평가원		0	0	0	0	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12,734	0	0	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	0	2,229	23,509	11,23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9,582	118,152	193,096	211,104	160,47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	0	0	0	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0	42,482	11,105	7,801	60,954
한식진흥원		0	0	0	0	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	15,009	10,616	15,353	2,474
축산환경관리원		0	0	0	0	0
농협	농협중앙회	75,288	174,034	222,599	255,232	249,577
	농협경제지주	370,205	462,314	583,612	692,312	803,446
	농협금융지주	1,046	22,285	26,749	28,099	45,788
	농협은행	2,121,477	2,553,411	3,094,091	3,419,058	3,862,710
	농협생명	276,054	305,620	307,610	354,047	362,847
	농협손해보험	168,464	194,289	206,714	217,177	249,875
	소 계	3,012,534	3,711,953	4,441,375	4,965,925	5,574,243
총 계		3,677,399	4,077,466	4,806,893	5,362,949	6,083,00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 중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11], 농협 등은 연례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고용부담금이 급증한 것에 대해 ① 고령에 의한 사망 및 장애인 등록 미갱신 등으로 인한 기존 장애인 근로자 감소,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검사 보조원 체력전형 실시 영향 등으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하락 및 고용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있으며, 그동안 민간근로자 부문에서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던 농식품부는 '24년에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음[12].

특히 농협은 중앙회, 지주회사, 농협은행 등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20년 약 30억원 → '24년 약 56억원).

【 농협 장애인 고용비율 】

(단위: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농협중앙회	2.70	2.52	2.56	2.44	2.44
농협경제지주	1.85	1.67	1.61	1.54	1.45
농협금융지주	3.33	1.84	1.74	1.65	1.51
농협은행	2.11	1.90	1.74	1.67	1.52
농협생명	1.27	1.09	1.22	1.00	1.04
농협손해보험	1.52	1.34	1.32	1.39	1.3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 자산과 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일부 장애 유형은 직무 배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국가 농업정책의 실행 창구로서 사실상 공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

12)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의무고용비율이 기존 3.6%에서 3.8%로 상향된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의 정년퇴직, 의원면직 증가로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40명 대비 139명을 고용('24.12월 기준)하여 부담금이 발생한 것임.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마저도 장애인고용비율이 의무고용비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부담금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뿐 아니라 농협과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별 맞춤형 고용 유인 방안 마련 등 구조적 개선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준수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관 기관의 '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398억 7,572만원임.

【 2024회계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

(단위: 천원)

구 분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비율
농림축산식품부	180,096,641	1,729,220	0.96
한국마사회	102,391,757	2,531,520	2.47
한국농어촌공사	1,200,352,640	32,119,042	2.6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3,002,496	1,172,741	2.21
축산물품질평가원	30,986,023	1,051,445	3.3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159,295	42,887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58,241,413	233,687	0.4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667,842	189,641	2.1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956,345	70,684	1.79
국제식물검역인증원	940,942	25,307	2.69
한식진흥원	4,771,651	86,570	1.8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65,643	447,424	2.21
축산환경관리원	550,095	51,791	9.41
농협중앙회	63,753,535	123,761	0.19
계	**1,732,136,318**	**39,875,720**	**2.3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기관별 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24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중앙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단위 :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농림축산식품부	1.15	1.01	1.11	1.04	**0.75**	**0.96**
한국마사회	4.43	2.13	1.30	2.19	2.48	2.47
한국농어촌공사	2.80	2.50	2.38	2.12	1.87	2.6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8	1.72	2.44	2.82	1.51	2.21
축산물품질평가원	6.54	5.91	5.62	6.27	4.91	3.3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0	1.63	1.41	1.72	1.16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82	1.93	1.79	1.27	1.12	**0.4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53	8.87	7.09	5.30	2.41	2.1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10	**0.40**	**0.62**	1.21	1.13	1.79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03	**0.22**	3.57	1.49	1.49	2.69
한식진흥원	**0.24**	7.18	**0.16**	**0.49**	1.23	1.8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28	**0.90**	**0.53**	1.39	**0.40**	2.21
축산환경관리원	-	8.87	11.96	8.62	3.46	9.41
농협중앙회	**0.03**	**0.03**	**0.07**	**0.14**	**0.30**	**0.19**

※ 자료: 보건복지부 공개자료

특히 농협중앙회는 최근 5년 동안 동 비율을 준수한 적이 한 차례도 없으며, 구매비율도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일반 제품과 품질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꿈드래 쇼핑몰'(https://www.goods.go.kr)을 통해 손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물품 등의 구매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농협 등 소관 기관들이 법정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25년부터 법정 의무 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13]된 만큼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공정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시행(2025.1.1.)

2) 총괄: 성인지 예결산의 실효성 제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인지 대상 사업 중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방식 재검토를 포함하여 여성수혜자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성인지 대상 사업의 성평등 제고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7조[14]에 따라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결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등 14개 재정사업이 여성농업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 성인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14)「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2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①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62,645	-	-	62,645	62,645	-	-	62,777
②농기계임대	32,740	1,094	-	33,834	33,561	-	273	27,102
③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95,724	-	-	95,724	95,691	-	33	113,662
④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	25,232	-	-	25,232	25,137	-	95	24,303
⑤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11,081	-	-	11,081	11,046	-	35	12,151
⑥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47,166	-	-	47,166	47,166	-	-	30,485
⑦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 교육	6,584	-	-	6,584	6,584	-	-	6,082
⑧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8,000	-	-	8,000	8,000	-	-	8,000
⑨밭작물산업육성	10,497	1,213	-	11,710	10,872	567	271	11,472
⑩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49,320	-	-	149,320	148,756	-	564	148,316
⑪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4,300	-	-	4,300	4,300	-	-	6,500
⑫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2,770	-	-	2,770	2,770	-	-	1,555
⑬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105,000	-	-	105,000	85,179	19,821	-	105,000
⑭농식품모태펀드출자	55,000	-	-	55,000	55,000	-	-	55,000
계	616,059	2,307	-	618,366	596,707	20,388	1,271	612,405

나) 검토의견

□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하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남성보다 길게 나타나는 등[15] 농업 전반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함.

특히,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주로 기계화율이 낮은 노동집약적 영농활동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농업 예산이 여성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과 성차별적 요소 제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 대상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지표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인지 대상 사업 14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5) 농번기: (여성) 8시간 42분, (남성) 7시간 54분
농한기: (여성) 5시간 42분, (남성) 4시간 24분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대상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연번	구 분	성과지표	'24 목표치	'24 실적치	달성여부
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중 여성비율(%)	26.0	23.6	미달성
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지원비율(%)	55.8	54.3	미달성

※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영농실습 위주의 장기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도의 경우 선발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나이, 성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정 성별을 고려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임.

그러나 블라인드 심사 방식은 적극적 조치를 통한 사회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될 수 있고, 동 사업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성농업인에 대상 홍보 강화 등 개선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국민연금은 18세 이

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으로 특정 성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우므로, 성인지 대상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임.[16)]

□ 둘째, 성인지 예결산 대상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평등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일부 성과지표는 성인지적 목표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대상 사업 중 성과지표 개선 필요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지표	'24 목표치	'24 실적치
1	밭작물산업 육성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및 자율 수급조절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밭작물공동 경영체 품목 조직화 생산량(출하량) 증가율(%)	9.9	10
2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 활성화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 마련을 위해 유휴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여성참여 지구 수 비율(%)	43.8	80
3	농식품모태펀드출자	농식품산업 및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농식품펀드 여성대표자 투자실적(개)	6	14

※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16) 2025년부터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예를 들어, ‘밭작물산업육성’ 사업은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성과지표로 ‘밭작물공동경영체 품목 조직화 생산량(출하량) 증가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성평등 개선 효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농작물 생산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여성 수혜자 비율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은 농촌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및 사회서비스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참여 지구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에 여성 참여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면 ‘여성참여 지구’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 이용자의 성별 분석이 가능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여성대표자 기업의 절대 수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연도별 투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17] 여성대표자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등 상대지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사업에서는 여성기업인 수혜금액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17) 실제 2024년 여성 대표자 기업의 비율은 사업수혜자(피투자기업) 141개사 중 14개사(9.9%)에 불과함.

3) 농업협상대응: 연구용역의 연례적·반복적인 이월 주의 필요

○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연구용역 예산의 이월로 인해 연구결과의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이월되었던 경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이월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연구용역 사업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업협상대응 사업은 WTO·FTA 등 농업 분야 협상 및 검역 현안 등 대응을 위한 협상 지원,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및 효과적인 협상 논리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위한 사업임.

2024회계연도 예산 25억 5,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3,5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26억 9,400만원 중 23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18)]

【 2024회계연도 농업협상대응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업협상대응	2,559	135	-	-	2,694	2,343	152	199	4,389
- 협상단경비지원	700	-	-	-	700	558	-	142	797
- 국제협력협상 관련연구용역	458	135	-	-	593	440	152	1	700
- 국제통상지원	450	-	-	-	450	450	-	-	1,966
- SPS연구위원 운용	451	-	-	-	451	395	-	56	426
- FTA협상지원시스템	500	-	-	-	500	500	-	-	5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8)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업협상대응(5031-301)

나) 검토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등 농업협상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농업 통상 및 국제협력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국제협력협상 관련 연구용역(일반연구비, 260-01)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의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수행 경과를 살펴보면, '24년은 10개 과제 중 6개(60%), '23년은 8개 과제 중 7개(87.5%), '22년은 7개 과제 중 4개 과제(57.1%)가 이월되는 등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연례적·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음.

【 2024년 실시 국제협력협상 관련 연구용역 현황 】

과제명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이월 여부	수행기관 (수행자)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및 식량안보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방안 연구	50,000	45,455	45,455	-	24.2.-24.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외교 전략 수립 방향 연구	70,000	63,181	63,181	-	24.5-24.12.	-	지에스앤제이인스티튜트
아태지역 식량안보 관련 의제 분석·발굴 연구	70,000	64,540	38,178	26,362	24.6.-25.2.	이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농업통상 환경 조사	20,000	20,000	-	20,000	24.12.-25.5.	이월	FAO한국협회
FTA 원산지 규정 해설 및 활용방안 연구	20,000	20,000	20,000	-	24.4.-24.9.	-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 자문센터 협동조합
신규 EPA 협상 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70,000	63,636	44,545	19,091	24.8.-25.6.	이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농식품분야 영향분석	20,000	20,000	-	20,000	24.12.-25.4.	이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UAE CEPA 영향평가	20,000	20,000	20,000	-	24.8.-24.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품목별 농축산물 해외 시장성 및 검역위생조건 연구	30,000	27,272	-	27,272	24.7.-25.4.	이월	한국농업경제학회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5-29) 수립 연구	110,000	109,091	76,363	32,728	24.4.-25.3.	이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년 실시 국제협력협상 관련 연구용역 현황 】

과제명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이월 여부	수행기관 (수행자)
식량원조 대상국 및 규모 확대 방안 연구	40,000	39,500	27,650	11,850	23.11-24.6.	이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업 분야 국제협력과 기업 해외진출 연계 활성화 연구	50,000	49,998	34,999	14,999	12.12-6.28	이월	경상대학교
미국 농업법 개정 동향 및 영향 분석	50,000	49,000	34,300	14,700	23.12-24.12	이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업 분야 대응과제 연구	70,000	63,545	44,481	19,064	23.5-24.2	이월	(재)지에스앤제이 인스티튜트
한-에콰도르 SECA 협상결과 영향평가(농업분야)	30,000	27,270	19,089	8,181	23.12.-24.10	이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영향평가	20,000	18,182	-	18,182	23.10-24.1	이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UN 푸드시스템 전환 성과점검회의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참여방안 연구	20,000	20,000	20,000	-	23.4.-23.9.	-	FAO한국협회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77,000	70,000	49,000	21,000	23.9-24.3	이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2022년 실시 국제협력협상 관련 연구용역 현황 】

과제명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이월 여부	수행기관
메가 FTA 원산지기준 분석	20,000	20,000	20,000	-	22.5-22.8	-	국제원산지 정보원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2023~2027) 종합계획 수립방향 연구	40,000	39,500	39,500	-	22.6-22.12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분석	100,000	89,091	62,363	26,728	22.6-23.3	이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한-필리핀 FTA 영향평가	18,181	18,181	18,181	-	22.7-22.11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WTO 제12차 각료회의 이후(Post-MC12) 농업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60,000	54,545	38,182	16,363	22.8-23.4	이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새로운 통상 이슈 하의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	22,000	22,000	15,400	6,600	22.11-23.1	이월	전북대학교
농업분야 무역 규범 분석	22,000	22,000	-	22,000	22.12-23.3	이월	한국국제 경제법학회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연구주제만 달라질 뿐 매년 동일한 사업 추진 절차[19]를 거치므로 연구과제 선정 등 사전준비를 선제적으로 하여 용역 착수시기를 앞당길 경우 대부분의 과제는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와 같이 연례적·반복적인 정책연구용역의 이월은 계획성 있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연구용역 사업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19) 제도개선 계획 수립 → 용역 수행계획 마련 → 용역 대상과제 확정 → 용역 발주 및 완료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추진

4) 국제기구분담금: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 검토 필요

○ 세부사업 ‘국제기구분담금’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분담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과는 그 성격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21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은 농업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12개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한편,

세계 농수산식품 정보를 국내 제공하고 국제회의 지원 및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FAO 한국협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26억 8,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20]

【 2024회계연도 국제기구분담금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제기구분담금	2,688	-	-	-	2,688	2,688	-	-	3,123
- 국제기구분담금	2,026	-	-	-	2,026	2,026	-	-	2,461
- FAO한국협회지원	662	-	-	-	662	662	-	-	662

2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국제기구분담금(5031-530)

나) 검토의견

□ FAO 한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21]에 근거하여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FAO 이념의 국내 보급 및 관련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농업 정책 동향 및 정보 분석, 국제 교류 협력 사업(정책포럼, 세계 식량의 날 기념행사 등) 수행 등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연간 약 6억 원을 협회에 지원하고 있음.

【 FAO 한국협회 예산 지원 현황 】

세부사업명	구 분	연도	지원 금액	지원 사유
국제기구 분담금 (FAO 한국협회 지원)	320-01 (민간경상보조)	2024	662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교류, 인력·기술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
		2025	662	

※자료: 농식품부 제출

2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정부 공식 대표단)이 FAO 총회, 지역 총회, 농업/수산/임업 위원회 등 FAO가 주관하는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정부 대표단이 국가를 대표한 공식 교섭 및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협회는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자문, 정보 분석, 실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협회의 FAO 내 법적·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FAO 공식 및 비공식 회의체에서 회원국들의 논의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우리나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런데,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협회에 대한 지원을 하는 동 사업은 세부사업 '국제기구분담금'의 내역사업으로 '09년부터 예산이 편성[22]되고 있음.

그러나, 세부사업 '국제기구분담금'은 명칭 그대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분담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22)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AO 한국협회 지원 예산은 '08년까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09년부터는 국제기구분담금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임.

하는 동 사업과는 그 성격 및 내용이 상이함.

협회의 경우 FAO 국제회의에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이 참석 및 대응함에 있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와는 거리가 있음.

또한, 분담금은 의무적이고 경직성 경비인 반면, 보조금은 재량적이고 정책적 경비라는 점에서 사업 간 성격도 전혀 다름.

따라서, 두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묶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21조[23]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식품부는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3)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 연간 기금 조성 목표액이 크게 미달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부 유치 방안 필요 등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연간 기금 조성 목표액이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부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지출의 혜택이 지역적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임.

동 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24]에 근거하여, 민간기업 등의 출연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동 조항은 2017년 1월 17일 시행된 후 10년간 효력을 가짐.

---

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법률 제14528호, 2017. 1. 17.)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나) 검토의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그동안 기금조성액을 살펴보면, 2024년 346억 5,300만원, 2023년 304억 9,500만원 등 매년 300억원 내외만 조성되고 있어 연간 목표치인 1,00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임.

【 연도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

(단위: 백만원, 개 / '25.6.30. 기준)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	2	301	68	39	30,965
2018	30	17,930	9	5,215	27	14	23,159
2019	43	17,543	26	5,045	9	5	22,594
2020	65	20,435	76	17,053	16	107	37,595
2021	94	25,739	70	19,684	5	103	45,525
2022	101	15,945	111	19,245	7	226	35,417
2023	117	13,387	103	16,941	5	167	30,495
2024	116	13,627	90	20,945	9	82	34,653
2025.6	33	3,317	32	7,028	0	-	10,345
다년협약 잔여분	1	35	1	3,000	-	-	3,035
총 계	133	158,583	221	114,457	134	742	273,782

*참여기업 총수는 중복 제외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유사한 기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2010년부터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총 기금조성액 규모는 2025년 6월말까지 2,737억원이었으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조 9,594억원이 조성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보다 약 10배 이상 더 많이 조성된 상태임.

현재까지 참여기업과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더 많이 기부에 참여하여 출연금액의 57.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이 더 많이 기부에 참여하여 출연금액의 85.9%를 차지하고 있음.

【 2025년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비교 】

(단위: 억원, 개 / ’25.6.30. 기준)

구 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	민간기업 등	1,151	25,448
	공기업	1,586	4,146
	합 계	**2,737**	**29,594**
참여기업	민간기업 등	356	347
	공기업	133	114
	합 계	**489**	**461**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은 상생기금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대기업도 이익을 보는 구조이므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은 반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 낮고, 주로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의료·복지 등 사회공헌적 활동에 활용되기 때문에 출연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기부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인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기금 조성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비교 】

구 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개 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
법적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원 조성	◦민간 출연금 + 정부 보조금 ◦민간자율 기획, 혁신 파트너십 지원 등 : 민간 100 ◦공동투자 R&D, 대중소 자율형ESG 지원 등 : 민간 50, 정부 50 ◦해외동반진출 : 민간 30, 정부 70	◦**민간 출연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농어촌, 농어업인 등
용 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사업 등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

※자료: 농식품부 제출

□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누적지원금액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큰 편이므로 가급적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지역별 인구편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 비중이 최고 14.9%에서 최저 1.6%로 그 편차가 큰 편임.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역별 누적지원현황 】

(기준: 지원금액 '25.6.30, 인구 '24.12.1.)

구 분	지원		인구	
	지원금액 (억원)	비중(%)	농가 및 어가 인구(명)*	비중(%)
A도	272.6	11.7	158,290	7.0
B시·C도	31	1.3	277,810	12.2
D도	158.2	6.8	268,344	11.8
E도	157.9	6.8	361,960	16.0
F시	1.8	0.1	45,637	2.0
G시	7.6	0.3	24,634	1.1
H시·I시	5.6	0.2	39,775	1.8
J시	55	2.4	29,209	1.3
K시	36.5	1.6	27,423	1.2
L시	0	0	27,686	1.2
M도	60.6	2.6	322,844	14.2
N도	65.1	2.8	199,242	8.8
O도	83	3.6	75,756	3.3
P도	346.6	14.9	255,248	11.2
Q도	37.9	1.6	155,379	6.8
전국**	1,012.80	43.4	-	-
합계	**2,332.20**	**100**	**2,269,237**	**100**

* 농가 및 어가인구는 농가·어가·임가의 인구를 뜻하며, 임가인구 중 '시' 구분 자료가 없는 18,049명과 지역구분 자료가 없는 내수면어업 2,237명은 통계에서 제외함.

** 전국단위란 2개 이상 도(道)를 지원하는 사업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24년 농림어업조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항[25]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기금조성액의 절대적인 부족문제와 함께 기금혜택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기사형 광고 등의 투명성 제고 및 홍보비의 예산 집행지침 준수 필요 등

○ 기사형 광고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독자가 일반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 배너형 광고는 기관명·로고 중심의 단순 브랜딩에 그치고 있어, 정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목 사용, 관서운영경비 한도 초과 등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시정이 필요함.

가) 사업 개요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사업[26]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논의 및 대통령 자문 목적의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33억 8,800만원 중 3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운영	3,388	-	-	3,388	3,245	-	143	3,447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운영	3,388	-	-	3,388	3,245	-	143	3,447

26)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7033-341)

나) 검토의견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시장개방, 농촌소멸 등 농어업·농어촌의 위기 대응과 중장기 농정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9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임.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요 】

설립근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목적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위원의 임기	○ 2년
위원회 기능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협의 ○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협의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협의 ○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협의
위원회 존속기한	○ 2029년 4월 24일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농특위는 2024년 정책 홍보를 위해 기사형 광고 6건, 온라인 배너 광고 4건, 2부작 홍보방송 등을 포함해 총 5억 4,454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24회계연도 농특위 '광고' 관련 집행현황 】

자금 이체일	목코드	건명	사업 기간	지출금액
2024-04-03	210-14 (일반용역비)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2~3월	1,500만원
2024-04-05	210-14 (일반용역비)	온라인 배너 광고 (A사)	2~3월	2,200만원
2024-06-17	210-01 (일반수용비)	온라인 배너 광고 (B사)	5월	2,200만원
2024-07-09	210-01 (일반수용비)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5~6월	3,300만원
2024-12-11	210-14 (일반용역비)	라디오 광고(CM송)	11~12월	3,999만원
2024-12-17	210-14 (일반용역비)	기사형광고(A신문, 3건)	11~12월	2,000만원
2024-12-17	210-01 (일반수용비)	기사형광고(B신문, 3건)	11~12월	2,000만원
2024-12-17	210-14 (일반용역비)	온라인 배너 광고료 지급	11~12월	1,100만원
2024-12-18	210-14 (일반용역비)	농산어촌 소멸 대응 언론홍보 (2부작 방송)	10~12월	1억 7,000만원
2024-12-24	210-14 (일반용역비)	온라인 배너 광고 및 지면광고	12월	5,000만원
2024-12-24	210-14 (일반용역비)	뉴미디어 광고(콘텐츠 제작 및 운영)	2~12월	1억 2,655만원
2024-12-26	210-01 (일반수용비)	뉴미디어 광고(온라인 매체 광고)	2~12월	1,500만원
합계				**5억 4,454만원**

※자료: 농특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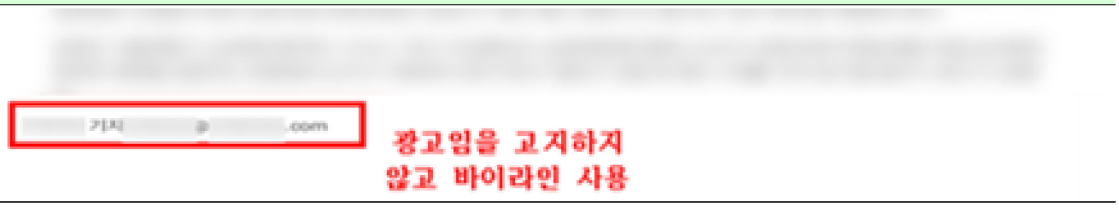
(1) 기사형 광고의 투명성 및 식별성 제고 필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27]에 따라 정부기관의 유료광고는 광고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광고 업무편람(2024년판)」은 기사형 광고의 경우 독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노출[28]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기사형 광고를 심의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29]는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기자명(바이라인) 등 독자가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30]하고 있음.

□ 그러나, 농특위의 기사형 광고를 살펴보면, ① 일부 온라인 기사에서 광고 표기 없이 기자명을 단독으로 표기하여 일반 기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광고 내용을 광고 표시 없이, 기자명만 표기하여 온라인에 게재



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인쇄·인터넷 등 기타매체) [광고], [AD], [제작지원:○○부], [애드버토리얼] 문구 등 독자(시청자)가 협찬 여부, 협찬 광고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기 및 노출

29) '한국관고자율심의기구'는 광고의 윤리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규제기구로, ① 기사형광고 심의, ② 광고 분쟁 조정, ③ 위반 광고물에 대한 제재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0) **「기사형광고심의 편집기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1조(광고의 명시)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의견광고"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오인 유도 표현 금지) 기사형광고에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광고 기사 내에서 기자명을 반복 표기하거나 기사 중간을 칸으로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불명확하였으며, ③ '공동기획'[31]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하여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됨.

상·하단의 칸을 구분하고 기자명을 각각 기입하여,
상단 기사는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될 소지 (상·하단 전체 광고임)



□ 이와 같은 기사형광고는 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 및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가 예산을 활용한 광고임에도 그 사실을 불명확하게 처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특위는 향후 기사형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독자가 일반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게재된 기사형광고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광고임을 보다 명확히할 필요가 있어 보임.

31) 2024년 기준, 광고 표시를 '공동기획'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검수기준에 미달한 것은 아님.

(2) 언론사 배너광고의 홍보 효과성 제고 필요

□ 농특위는 2024년 언론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배너광고를 위하여 총 4차례에 걸쳐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특위 '온라인 배너 광고' 현황 】

매체	기간	지출액	비고
A사	'24년 2~3월	2,200만원	온라인 배너 광고
B사	'24년 5월	2,200만원	온라인 배너 광고
B사	'24년 11~12월	1,100만원	온라인 배너 광고
C사 등 38개 언론사	'24년 12월	5,000만원	신문지면광고와 온라인 배너 광고 혼합
합 계		**1억 500만원**	

※자료: 농특위 제출

□ 그러나, 해당 광고들은 기관 명칭과 로고만 노출하는 단순 브랜딩 형태로 구성되어, 정책 메시지나 국민과의 소통 내용이 부재하였으며, 정책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농특위 온라인 배너 광고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출자료

□ 더욱이, 농특위는 2023년부터 ‘농어업·농어촌 삶의 질 위원회’와의 통합을 추진 중[32]이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9년까지 운영되는 한시기구임을 고려할 때, 기관명 중심의 광고보다는 농정 관련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임.

□ 따라서, 농특위는 향후 온라인 배너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관 홍보보다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광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2) 2023년부터 삶의질위원회와 통합을 대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인력 배치 등의 사전 준비를 수행함 (농특위 제출자료, 2025. 4.).

(3) 홍보비 등의 예산 집행지침 준수 필요

□ 농특위는 홍보비 등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산 비목 사용 및 관서운영경비 한도 초과 등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동 집행지침에 따르면, 광고료는 일반수용비(210-01)에서, 식음료비 및 선물비는 사업추진비(240-01)에서 집행해야 하며, 관서운영경비로는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 예산 비목별 사용 용도 】

일반수용비 (210-01)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일반용역비 (210-14)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사업추진비 (240-01)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240목)중 사업추진비로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4)

□ 그러나, 농특위는 ① 단순 광고성 집행인 기사형・배너 광고 4건(총 1억 500만원)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산 조정 없이 일반용역비(210-14)에서 지출하였고,

② 집행대상 등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식음료비 10건(552만원) 등을 사업추진비(240-01)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에서 사용하여 증빙을 소홀히 하거나,

③ 관서운영경비 한도(건당 500만원)를 초과한 지출 사례 등 총 1억 2,692만원 상당의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내역이 확인됨.

□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재정규율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회계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수 필요 사례 】

구분	건명	지출금액(원)	예산과목
○ 광고비는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 필요	온라인 배너 광고 및 지면광고	5,000만원	210-14 (일반용역비)
	온라인 배너 광고 (A사)	2,200만원	〃
	온라인 배너 광고료 지급	1,100만원	〃
	기사형광고(B신문, 3건)	2,000만원	〃
○ 식음료비는 업무추진비(240-01)로 집행 필요	본회의 다과비 140만원 등 10건	552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500만원 초과 경비는 관서운영경비로 집행 금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2차 본회의(9.25) 회의장 임차료	540만원	210-07 (임차료)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 연구 결과물 인쇄비	1,300만원	210-01 (일반수용비)
합 계		**1억 2,692만원**	

※자료: 농특위 제출자료 재구성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특별세 7조 6,199억원, 경상이전수입 등 1,200억 8,600만원 등 14조 4,905억 5,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농어촌특별세 감소 등으로 7,612억 4,500만원이 감소한 13조 7,293억 800만원임.

□ 징수결정액 13조 7,293억 800만원 중 농어촌특별세로 7조 248억 7,300만원, 전년도이월금으로 4,100억 8,9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수입으로 400억 1,800만원 등 총 13조 7,078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자체 예산부족 및 기간미도래 등으로 인해 214억 1,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예산액은 7조 6,19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납액은 7조 248억 7,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950억 2,700만원 감소하였음.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200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납액은 1,729억 9,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29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전년도이월금은 2023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으로서, 4,100억 8,900만원이 202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4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농어촌특별세	**7,619,900**	**7,024,873**	**7,024,873**	**-**	**-**	**△595,027**
재산수입	**6,176**	**17,848**	**17,193**	**-**	**655**	**11,017**
토지대여료	-	1	1	-	-	1
기타민간이자수입	1,205	1,266	1,266	-	-	61
기타재산이자수입	4,971	16,581	15,926	-	655	10,955
경상이전수입	**120,086**	**193,747**	**172,998**	**-**	**20,749**	**52,912**
과태료	4	-	-	-	-	△4
과징금	-	44	44	-	-	44
위약금	71	131	131	-	-	60
가산금	-	4	-	-	4	-
법정부담금	-	△164	△164	-	-	△164
기타경상이전수입	120,011	193,733	172,988	-	20,745	52,977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50**	**272**	**257**	**-**	**15**	**7**
면허료및수수료	199	198	198	-	-	△1
기타잡수입	51	74	59	-	15	8
관유물매각대	**23**	**9**	**9**	**-**	**-**	**△14**
기계기구매각대	12	3	3	-	-	△9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	2	2	-	-	△2
재고자산매각대	1	4	4	-	-	3
유동자산매각대	6	-	-	-	-	△6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86,725**	**40,018**	**40,018**	**-**	**-**	**△46,707**
전년도이월금	**-**	**410,089**	**410,089**	**-**	**-**	**410,089**
전년도세계잉여금	**362,586**	**116,792**	**116,792**	**-**	**-**	**△245,794**
일반회계전입금	**2,645,122**	**2,703,822**	**2,703,822**	**-**	**-**	**58,700**
기금전입금	**171,797**	**171,797**	**171,797**	**-**	**-**	**-**
계정간전입금	**3,477,888**	**3,050,039**	**3,050,039**	**-**	**-**	**△427,849**
합 계	**14,490,553**	**13,729,308**	**13,707,888**	**-**	**21,419**	**△782,66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12조 7,993억 7,9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614억 2,900만원, 예비비 587억원이 반영되어 예산현액은 13조 4,195억 9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농가경영안정으로 1조 5,679억 5,3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로 1조 4,897억 8,600만원, 농업신산업육성으로 2,987억 2,900만원, 식품외식산업육성으로 2,880억 7,600만원,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로 2,528억 3,900만원 등 총 11조 4,66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정간거래(전출금) 6,088억 8,800만원, 회계간거래(전출금) 3,700억 1,8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3,380억원, 농가경영안정 2,905억 9,000만원 등 총 1조 6,119억 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2,700억원, 농가경영안정 집행잔액 221억 2,400만원 등 총 3,411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4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가경영안정	1,761,366	119,301	-	678 △678	-	1,880,667	1,567,953	290,590	22,124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234,125	9	-	-	-	234,134	233,967	-	167
양곡관리	63,869	-	-	-	-	63,869	62,259	-	1,610
농업신산업육성	299,156	1,207	-	-	448 △448	300,363	298,729	1,052	582
식품외식산업육성	290,987	59	-	375 △375	934 △934	291,046	288,076	1,750	1,220
농산물수급안정 및유통효율화	201,470	14	58,700	-	21 △21	260,184	252,839	-	7,345
축산업진흥	18,182	-	-	-	-	18,182	16,577	21	1,584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259,592	-	-	625 △2,134	925 △925	258,083	244,848	806	12,429
농업생산기반정비	1,590,936	255,157	-	-	-	1,846,093	1,489,786	338,000	18,307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522,597	-	-	3,300 △3,300	1 △1	522,597	520,789	-	1,808
농산물품질관리	96,586	179	-	-	821 △821	96,765	95,180	-	1,585
농림축산검역검사	35,487	4,004	-	1,629 △120	777 △777	41,000	39,933	82	985
종자관리	38,410	136	-	24 △24	729 △729	38,546	36,741	485	1,32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73,235	325	-	-	0.3 △0.3	73,560	73,168	285	107
회계간거래(전출금)	702,780	-	-	-	-	702,780	332,762	370,018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3,132,713	-	-	-	-	3,132,713	2,862,713	-	270,000
계정간거래(전출금)	3,477,888	181,039	-	-	-	3,658,927	3,050,039	608,888	-
합 계	**12,799,379**	**561,429**	**58,700**	**6,631 △6,631**	**4,656 △4,656**	**13,419,509**	**11,466,360**	**1,611,977**	**341,17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총괄: 실집행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타 계정·기금 등에 대한 적정 규모의 전출 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입재원 없는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불필요하게 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타 계정 및 회계, 기금 등에 적정한 수준의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직불기금의 경우 공익직불 예산의 변동성이 최소화되는 시점에는 농특회계로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조세감면액, 증권거래액 및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33]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회계연도 농어촌특별세 세입 규모를 7조 6,19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7억 249억원을 수납하였음.

3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30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2024회계연도 농어촌특별세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농어촌특별세	7,619,900	-	7,619,900	7,024,873	7,024,873	-	7,415,300

나) 검토의견

(1) 세입재원 없는 이월 지양 필요

□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의 세액 및 감면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징수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라 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등에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후생·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농어촌특별세는 '20년부터 증권거래금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례적인 과다 수납(2020년 134%, 2021년 139.3%)이 이루어진 후 '22년에도 초과 수납(105%)이 이루어졌으나, 2023년에는 과소 수납(수납률 93.9%)이 발생하였음.

'24년에는 예산액 7조 6,199억원 중에서 7조 249억원만이 수납되면서 예결산상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음.

【농어촌특별세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 (A/B)
	본예산	추경(A)				
2020	4,552,010	4,671,111	4,671,111	6,259,604	6,259,604	134.0
2021	5,470,700	6,390,300	6,390,300	8,899,997	8,899,997	139.3
2022	6,680,200	6,680,200	6,680,200	7,013,196	7,013,196	105.0
2023	6,988,000	6,988,000	6,988,000	6,562,807	6,562,807	93.9
2024	7,619,900	7,619,900	7,619,900	7,024,873	7,024,873	92.2
2025.5월	7,415,300	7,415,300	7,415,300	2,891,586	2,891,586	39.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결산상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8조[34]는 이월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농특회계의 세출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하 '농특회계법'이라 함) 제8조[35]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이월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34)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5)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농어촌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례적으로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고,

세입 예측이 실제 수납과 크게 괴리된 2024회계연도의 이월 규모는 4,249억원으로 최근 3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뿐만 아니라 ’24년에는 처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계정에서도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5,370억원 발생하였음.

【 세입재원 없는 세출 이월 현황 】

(단위: 억원, %)

연도	농특회계 계정	세입 결산 (A)	세출 결산 (B)	차년도 이월액 (C)	세계 잉여금 (A-B-C)	구조개선계정 전출금이월액 (결산상 잉여금기준) (D)	세입재원 없는 이월액 (A-B-C+D)
2021	구조개선사업	56,282	55,926	631	△276		△276
	농어촌특별세	113,954	88,781	135	25,038	0	0
2022	구조개선사업	52,714	52,358	4,574	△4,219		△319
	농어촌특별세	98,175	85,711	4,309	8,154	3,900	0
2023	구조개선사업	63,480	61,378	3,987	△1,884		△74
	농어촌특별세	80,377	77,211	1,999	1,167	1,810	0
2024	구조개선사업	61,695	55,963	10,698	△4,967		△4,249
	농어촌특별세	75,919	75,131	6,159	△5,370	719	△5,37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예산 집행지침」이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재원이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과

다한 이월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러한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은 당해 연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의 세입이 이월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됨으로써 다음 연도의 사업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세입재원 없는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어촌특별세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액 등 세원의 변동성이 큰 세원을 포함하고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세입의 구조적인 불안정성 하에서 세입재원 없는 이월 및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불필요하게 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타 계정 및 회계, 기금 등에 적정한 수준의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입재원 없는 이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보조금의 과다 교부를 지양하여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농특회계의 '24년 보조금 편성 사업 중 농지이양은퇴직불,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천연물소재전주기 표준화허브구축,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산업화 거점 조성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전액 또는 과다 교부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사례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시행주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한국농어촌공사	30,000	30,000	-	28,000	59	29,941	-	0.2
농지이양은퇴직불	한국농어촌공사	12,600	11,130	-	12,600	2,094	-	10,506	16.6
천연물 소재전주기 표준화허브 구축	지자체	4,400	4,400	400	4800	259	4,541		5.3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지자체	3,600	3,600	156	3,756	641	3,115	-	13.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6]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위 사업들에 대하여 집행가능성 및 실집행 소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월별 자급 집행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의 교부금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는 정부가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중 재량지출 중심으로 약 251조원 규모의 중앙재정 신속집행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37]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5%(교부율 기준)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3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보조금 교부 시 점검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4.1. 16, 관계부처 합동

그러나 교부율을 기준으로 한 형식적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민간 활력 제고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며, 상당 규모의 재정자금이 대기자금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 시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시기에 합리적인 규모의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계정 및 회계·기금 간 재원 이동의 적정성 확보 필요

□ 다음으로, 세입재원 없는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 계정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이 해당 계정의 재정 여건과 타 계정 등의 자금 소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특별세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이 789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구조개선사업 계정 내 재원 부족분이 4,967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구조개선사업 계정 전출 계획액인 3조 6,589억원 중 미집행된 6,089억원 전액을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전출하였음.

【 농특회계 계정 간 재원 이동 현황 】

(단위: 억원)

구조개선계정 2025 재원 과부족분(A)	농특세계정의 구조개선계정 전출금 이월액(B)	과부족분 초과 전출액 (B-A)
4,967	6,089	1,122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또한, 농식품부는 2조 9,872억원을 공익직불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2조 7,172억원을 집행하였는데, 공익직불기금 운용 결과 여유자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429억 원 증가한 점(당초 1,102억원→수정 3,531억원)을 고려하면 적정 소요보다 과다한 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공익직불기금 전출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익직불기금 전출	2,987,213	-	-	2,987,213	2,717,213	-	270,000	2,987,213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국가재정법」 제13조[38]에서 회계·기금 간 전입·전출은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계정에서 세입재원 없는 이월을 발생시키면서까지 타 계정·기금에 과도한 전출이 이루어진 것은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기금 운영으로 판단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농특회계를 포함한 각 계정 및 회계·기금의 운용 시 재원별 여건과 실제 지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정 및 회계·기금 간 재원 이동이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38)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각 호 생략>

(4) 공익직불기금의 농특회계로의 이관 검토 필요

□ 한편, 농특회계와 공익직불기금 간 재원의 이동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수입을 농특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

즉, '24년 기준 공익직불기금 전체에서 전입금과 정부예금 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9.8%에 달하고, 최근 5년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자체수입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기금 형태로 존치할 정책적·재정적 명분이 부족한 상황임.

【 농업농촌공익직불기금 수입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년 계획
총 계	**2,418,568 (100)**	**2,406,242 (100)**	**2,781,691 (100)**	**3,019,399 (100)**	**3,104,461 (100)**
자체수입	**2,783 (0.1)**	**18,171 (0.8)**	**41,570 (1.5)**	**4,790 (0.2)**	**7,066 (0.2)**
54. 기타이자 수입및재산수입	818	1,268	7,143	800	3,076
56 벌금,몰수금 및과태료	-	-	-	2,000	2,000
59 기타 경상 이전수입	1,965	16,903	34,427	1,990	1,990
자체 외 수입	**2,415,785 (99.9)**	**2,388,071 (99.2)**	**2,740,121 (98.5)**	**3,014,609 (99.8)**	**3,097,395 (99.8)**
85 정부예금 회수	23,879	46,223	68,249	27,396	110,182
91 전입금	2,391,906	2,341,848	2,671,872	2,987,213	2,987,213

* 2021~2023년도는 수납액 기준, 2024~2025년은 계획액 기준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재정당국의 기금존치평가에서도 공익직불기금에 대하여 조건부존치를 결정하면서 시판용쌀 양곡수입이익금 등 자체수입액 증가 혹은 신규수입원 발굴이 요구되며, 계속해서 자체수입액이 부족할 경우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자체수입인 시판용쌀 양곡수입이익금 또는 정산이익의 증가를 도모하거나[39] 신규수입원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익직불기금의 존치는 재정 운용의 복잡성과 비효율만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공익직불기금을 폐지하고 공익직불사업을 농특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임.

다만, 정부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의 종류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유지하되, 공익직불 예산의 변동성이 최소화되는 시점에는 농특회계로의 이관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9)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판용쌀 양곡수입이익금은 2017년도 및 2019년도 TRQ 밥쌀용 쌀 판매완료에 따른 정산 이익 201억 2,800만원이 2023년도 공익직불기금 수입으로 납입된 것 외에는 최근 7년 동안 수입이 발생한 적이 없음. 정산 이익은 TRQ 쌀 판매 완료이후 검역비, 보관료, 보험료 등 관리비용을 제한 금액이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높은 관리비용으로 수익 발생이 저조하여 2024년 및 2025년에도 수익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2) 농촌고용인력지원: 기숙사 건립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철저 등 필요

○ 농식품부는 사업 시작 전년도에 대상지를 조기 선정함으로써 사업비가 지자체의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지역 선정 시 인근 지역과의 갈등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지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사전 준비 및 예산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농업분야의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의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에 219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218억 7,600만원이 집행되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40].

【2024회계연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촌고용인력지원	21,911	-	21,911	21,876	-	35	27,288

4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나) 검토의견

□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하여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서 기숙사 건립을 위한 10개 부지를 선정하여 지자체가 농업 근로자 주거시설(기숙사)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소당 24억원을 지원하는 거점형 2개소와 개소당 15억원을 지원하는 마을형 8개소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41]되었음.

동 사업은 2022년 도입 당시 2개년 사업으로 설계되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당초 사업 완료 시점인 2년차에도 실집행이 매우 부진[42]하여 2024년 신규 개소부터는 3개년으로 사업 기간을 늘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부비율(연부율)은 1년차 10%, 2년차와 3년차 각각 45%인데,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숙사 건립 절차와 사업 단계별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임.

---

41) ○거점형: 시군 단위(100명 내외 수용), 개소당 24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마을형: 마을 단위(50명 내외 수용) 개소당 1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42) 2022년 선정 10개소 중 7개소는 준공되었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나머지 3개소는 4년차인 2025년 8월 1개소, 9월 1개소, 10월 1개소 준공 예정임.

즉, 1년차에는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비용 정도만 편성하고, 2년차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사업자 선정, 공사 착공 등으로 실시설계비, 공사 시공에 따른 기성금[43] 집행 예산을 편성하며, 3년차에는 잔여 공사비 집행 예산을 편성함.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예산으로 편성된 8억 4,000만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년 이월분 57억 9,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66억 3,399만원 중 59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7,300만원이 이월하여 실집행률은 89.9%로 나타남.

다만, '24년에 10개[44] 신규 사업 개소 1차 사업비로 편성된 8억 4,000만원 중에서는 1억 6,700만원만이 집행되어 19.9%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4회계연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집행내역】

구 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	실집행률 (이월액 제외)
						예산현액	집행액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840	5,793	6,633	5,960	673	840	167	89.9	19.9

43) 기성금은 공사 도중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 도중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함.
44) 거점형 2개소(봉화, 김천) 및 마을형 8개소(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 이는 일부 대상지에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당초 1차 연도 내에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되었어야 했으나, 지역 민원에 따른 대상부지 변경 및 지자체의 추경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0개소 중 4개소는 '25년 4월 이후에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되었음.

【 공공건축 기획·심의 지연 현황 】

대상지	24년	25년	25년(예정)
1	- 공유재산심의('24.7.) - 지방재정투자심사, 추경반영 - 부지매입('25.3)	- 공공건축 기획·심의('25.7.)	- 설계('25.10.~'26.3.) - 착공('26.5~) - 준공('26.11.)
2	- 지방재정투융자심사('24.8.) - 공유재산심의('25.3.) - 공공건축 기획('25.4.~'25.5.)	- 공공건축 심의('25.6.~'25.7.)	- 설계('25.10.~26.3.) - 착공('26.5) - 준공('26.11.)
3	- 교육부 부지 권리포기승인(24.2.) - 지상권설정('25.1.) - 공유재산심의('24.7.) - 지방재정투융자심사('24.10.)	- 공공건축 심의('25.5.)	- 설계('25.7.~25.12.) - 착공('26.1.) - 준공('26.9.)
4	-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정(23.10.) - 건축기획 용역시행('24.5.) - 농식품부 사업변경 신청('24.9.) - 농식품부 사업변경 승인('24.11.) -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25.2.)	- 공공건축 심의('25.4.)	- 설계공모('25.5.~6.) - 설계,('25.7.~'25.11.) - 착공('25.12.~) - 준공('26.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동 사업은 '22년 및 '23년 연달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는 등 집행 부진에 대하여 국회에서 두 차례 지적[45]된 바 있으며, '24

45) ○ 2022년 시정요구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실집행 가능성을 예측하여 과다 이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지자체별 수요 재파악 등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 동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 방안을 모색할 것(주의)
○ 2023년 시정요구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님비현상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제도개선)

년부터 사업기간을 확대(2년→3년)하고 주민동의 요건을 강화[46]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작 전년도에 대상지를 조기 선정함으로써 사업비가 지자체의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지역 선정 시 학교·아파트 등 인근 지역과의 갈등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지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사전 준비 및 예산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음.

46) 사업신청 전 기숙사 사업 관련 내용을 14일 이상 공보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 선정평가 항목에 주민동의 절차 이행 여부 포함

3) 경영이양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수요의 현실적 예측 및 성과지표 개발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에서 사업 수요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양농지의 청년농업 공급 비중' 등과 같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하여 사업의 정책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규모화 또는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을 위해 조기에 농지(또는 경영)를 이양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예산으로는 30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80억원을 집행하고 25억원을 불용하였음[47].

【 2024회계연도 경영이양직불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경영이양직불	30,500	-	-	-	30,500	28,000	-	2,500

47)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경영이양직불(1070-302)

나) 검토의견

(1) 사업 수요의 현실적 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경영이양직불’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농에게 일정기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임대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직불금 지급기간 종료 이후 직불금 수령자가 영농에 복귀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21년부터는 기존 약정 외 신규약정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당시 경영이양직불의 연령 요건(65~74세)이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단가가 낮아 영농은퇴 결정에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함께 지적된 바 있었음.

이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충이 국정과제로 선정(’22.7월)되면서 고령농의 농지 이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음.

이에 ’24년에 내역사업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이 신규 도입되었는데, 이는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달리 지급 가능 연령을 84세까지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이양 방식을 기존의 매도 또는 임대에서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로 변경하며, 농지이양 대상도 종전 전업농에서 청년농 중심으로 전환한 것임.

【 경영이양직불 내역사업 비교 】

구분	개편 전 경영이양직불('97~'23)	개편 후 농지이양은퇴직불('24~)
사업명	‣ 경영이양직불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목적	‣ 고령농 소득안정, 영농규모화 촉진	‣ 고령농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 청년농 농지공급으로 세대전환
지급 단가	‣ 면적(ha)당 지급 - 매도: 월 27.5만원(연 330만원) - 임대: 월 21만원(연 250만원)	‣ 면적(ha)당 지급 - 매도: (분할) 월 50만원(연 600만원), (일시) 10년 4,200만원(차감률 30%) - 매도 조건부 임대: 월 40만원(연 480만원)
가입 연령	‣ 65세 이상, 74세 이하	‣ 65세 이상, 84세 이하
지급 기한	‣ 75세 까지(가입후 최장 10년) - 66세 이하(10년) ~ 74세(2년)	‣ 84세 까지(가입후 최장 10년) - 75세 이하(10년) ~ 84세(1년)
이양 대상	‣ 64세 이하 전업농, 50세 이하 농업인	‣ 청년농 우선 - 순위 : ①청년창업형 후계농, ②2030세대, ③후계농, ④귀농인, ⑤일반농, ⑥전업농
이양 방법	‣ 매도, 임대	‣ 매도(농지연금과 연계한 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런데 동 사업의 '24년 실집행내역을 보면, 기존 약정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단계에서 실집행률이 88.8%로 나타났음.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예산 산정 시 예측보다 많은 약정해지 건으로 불용액이 발생[48]하였다는 설명을 하고 있음.

48) 약정해지사유는 약정자 사망(59건), 임대차계약 해지(84건), 공익사업 농지 편입(33건) 등임. 농식품부는 '25년 예산 산정 시에는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차이 감소를 위하여 필요사업비율을 낮춰 산정('24: 90.4% → '25: 85%)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경영이양직불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13,800	12,770	-	13,800	12,261	-	1,539	88.8

한편, '24년 신규 도입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의 대부분(111억 3,000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교부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이 16.6%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음.

【 농지이양은퇴직불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11,130	11,130	-	12,600	2,094	-	10,506	16.6

이와 같이 상당 규모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사업의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데 주요 원인이 있음.

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에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3,000ha 규모의 농지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약정 신청은 1,168ha, 최종 약정 체결 면적은 1,062ha에 불과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이 35.4%에 그쳤음.

【 '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실적 】

구분		당초계획	신청규모		약정규모	
			실적	계획 대비	실적	계획 대비
면적(ha)	소계	3,000	1,168	38.9%	1,062	35.4%
	매도	2,000	1,072	53.6%	969	48.5%
	매도조건부 임대	1,000	96	9.6%	93	9.3%
예산(백만원)	소계	12,600	약정체결 완료한 건에 한해 직불금 지급		2,094	16.6%
	매도	9,000			1,942	21.6%
	매도조건부 임대	3,600			152	4.2%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농식품부는 이 같은 목표 설정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에 따른 청년농 대상 농지공급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23년에서 '27년까지 16만 9천명의 청년농에게 1인당 1ha의 농지를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1만 6,900ha가 필요하고, 이를 5개년으로 균등 분할해 연 목표를 3,000ha로 설정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약정 체결 실적('14년~'20년 연평균 1,203ha)을 고려할 때, 3,000ha라는 대상면적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이었던 것으로 보임.

□ 한편, 16.6%인 예산 실집행률은 약정 면적 달성률(35.4%)보다도 낮았는데, 이는 농식품부가 사업 구조[49]상 집행 가능한 범위를 과대

49) 동 사업은 연중 가입자를 모집하여 약정체결일 익월 월지급금을 집행하므로 사업개시일에 목표면적 모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예산의 전액 집행이 가능한 구조임.

추정하여 필요사업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한 데 기인함.

즉,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초 목표 면적의 75%가 4월 이전에 약정될 것이라 가정하고 필요사업비율을 산정하였으나,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에서 신규가입의 필요사업비율이 60%[50]를 넘지 못한 점, 사업의 근거 법령이 '24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마련된 점[51] 등을 고려하면 조기에 목표 면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필요사업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사업 수요를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필요사업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불용 발생으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52].

(2)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한편, 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한 농지 공급 현황을 보면, 임대의 경우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매도 방식에서는 일반농업인 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53].

---

50) '18년 필요사업비율: 57.8%, '19년 필요사업비율: 58.2%, '20년 필요사업비율: 55.9%

51) 동 사업의 근거규정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은 각각 '24년 3월 및 24년 4월 15일에 이루어졌음.

52) 농림축산식품부는 '25년 예산부터는 약정체결 익월부터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예산 요구 시 필요사업비율을 조정('24: 75% → '25: 51.5%)하였고, 사업목표도 1,300ha로 조정하여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 설명임.

53)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공사가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맞춤형농지지원사업업무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도하기 때문에 농지가 청년농업인에게 70% 정도 이양되나, 은퇴직불 가입

【 '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청년농등 농지 공급현황 】

구분	청년농등 지원현황(농업인·공사→청년농등)					
	전체		매도		임대	
	인원(명)	면적(ha)	인원(명)	면적(ha)	인원(명)	면적(ha)
합계	1,670	1047.5*	**185**	**124.6**	**1,485**	922.9
청년농업인	1,361	863.5	80	56.1	1,281	**807.4**
일반농업인 등	309	184.0	105	68.5	204	115.5

* 14.6ha는 미임대(한국농어촌공사 비축)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런데 동 사업은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농에게 농지를 공급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농지이양 대상을 종전의 전업농에서 청년농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도 방식으로 공급되는 농지에 대해서도 청년농에 대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경영이양직불 수혜자 만족도'로 측정되는 현재의 성과지표는 고령농 은퇴 유도와 청년농에 대한 농지공급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양농지의 청년농업 공급 비중' 등과 같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하여 동 사업의 정책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자가 개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는 청년농에게 우선 매도하라는 조건 없이 ①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 ②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되므로 청년농업인에게 이양된 비율이 낮다고(25%) 설명함.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연도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예산 편성 및 안정적 농지 공급 방안 마련 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에 대한 융자 지원 시 연도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청년창업농에게 농지를 안정적으로 공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54] 사업은 농업·농촌 인구 감소 및 농업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예산으로 편성된 957억 2,400만원 중 956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계획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95,724	-	95,724	95,691	-	33	113,662

5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1120-436)

나) 검토의견

(1) 연도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예산을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동 사업은 매년 청년창업농[55]을 신규 선발하고 선발된 청년창업농이 농지나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면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등 3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024년도에 833억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643억 2,9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집행율(77.2%)이 80%를 하회하였음.

【 2024회계연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A)	실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영농정착지원금	83,370	64,329	19,041	77.2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창업농이 영농기반을 마련한 후 지급하는 것이나, '24년도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 이들에 대한 융자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영농기반 마련이 지연되어 일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55)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 등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본래 동사업의 대상자로 선발되면 '농업자금이차보전'[56]사업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하 '후계농자금'이라 함) 신청을 통해 대출요건 충족 시 저리로 경영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였음.

그런데 '23년의 경우 11월에 후계농자금이 소진된 데 이어 '24년에는 8월에 8,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이 전액 소진되면서 영농계획을 세우고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청년농들이 적시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뒤늦게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내역 간 조정을 통해 융자규모를 추가 지원(1천억원)하여 총 8,976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음.

또한, '25년에는 후계농자금 융자규모를 '24년보다 감액된 6,0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1월에 4,500억원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2차 추경을 통해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한 상황임.

【 최근 7년 후계농자금 융자규모 및 이차보전액 현황 】

(단위: 억원)

연도	'18	'19	'20	'21	'22	'23	'24*	'25*
융자규모	3,600	3,450	4,050	4,050	4,050	8,000	8,000	13,500
집행**	2,472	2,409	3,238	3,725	3,846	9,162	8,976	6월말 4,988
불용	1,128	1,041	812	325	204	-	-	-
이차보전액	158	223	238	220	201	514	689	871
집행**	191	218	183	164	294	754	1,002	-
불용	-	5	55	56	-	-	-	-

* 자금 조기 소진 시기: ('23) 11월, ('24) 8월

** 융자실행액 및 이차보전 발생액

※ 자료: 농식품부 제출

56) 농특회계-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이와 같은 조기 자금소진은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의 선발인원 확대 및 후계농자금의 대출 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상응하는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함.

그간 동사업은 수요 대비 충분한 자금 지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획한 융자 규모보다 적은 수준의 융자 실행이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여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23년 4,000명 '24년 5,0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23년부터는 후계농자금의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2%에 1.5%로 인하하는 한편, 상환 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하는 등 자금 수요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자금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는데,[57] 그 결과 정책을 신뢰하고 영농 투자를 준비한 일부 청년농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선발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보

57)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선발인원을 '22년 2,000명에서 '23년 4,000명으로 확대하면서 융자자금 규모도 기존 4,050억원의 2배인 8,0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청년농 선발인원이 5,000명으로 늘어난 '24년에도 '23년과 동일하게 8,000억원 융자규모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음.

다 이미 선정된 청년창업농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연도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정책대상자의 신뢰를 함께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2) 청년농에 대한 안정적 농지 공급기반 마련 필요

□ 한편, 창업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융자자금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농지 공급 확대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패널조사(1900명) 결과에 따르면 영농활동 및 농촌정착 시 애로사항은 농업 경영이 64.7%로 가장 높았으며, 이 중 농지확보(54.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에 대한 농지 공급을 위해 '맞춤형농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고령은퇴농, 비농업인(상속) 소유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동 사업은 초기자금 마련의 부담이 없고 임대 기간이 장기적·안정적이며 임대료 수준 또한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청년농의 영농 정착에 유리한 수단으로 기능함.

그런데 청년창업농 선발인원 확대로 '24년의 경우 청년농의 임대 신

청면적이 1만 2,471ha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제 지원 면적은 33% 수준인 4,108ha에 불과하였음.

【최근 5년간 신청 및 지원면적】

(단위 : ha)

연도	계획면적	지원가능 농지면적*	신청면적(A)**	지원면적(B)	지원비율(B/A)
2020	2,500	2,338	5,056	2,338	46%
2021	2,800	2,781	5,768	2,781	48%
2022	1,887	3,505	7,583	3,505	46%
2023	1,875	3,580	7,786	3,580	46%
2024	2,500	4,108	12,471	4,108	33%

* 당해연도 매입 임대 농지 + 기존 미임대 농지 + 재계약 농지
** 경작자 임차 신청 면적(필지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계산)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의 임차 수요가 높은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매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재정당국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국 평균 농지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면적 대비 실제 매입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농 선발 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농지 공급 기반의 확보는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임대 전용 물량 확보를 위해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임차 수요가 높은 부지의 매입단가를 조정하는 등 청년농에게 농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수리시설개보수: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 시 부당한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는 사정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한 경쟁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용·배수로 등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지원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이 7,461억 6,9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274억 9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735억 7,800만원이었으며, 이 중 6,940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74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54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58]

【 2024회계연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리시설개보수	746,169	127,409	-	873,578	694,085	174,000	5,493	761,734

58)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리시설개보수(4038-70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예산액 전액이 민간자본보조(320-07목)로 편성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보조금으로서 교부되는데,

2024년 예산 중 400억원은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15조[59]에 따라 위탁받은 수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며, 이 중 286억원이 집행되었음.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60](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및 「건설기술 진흥법」[61] 등이 적용되는 한편, 동

59)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6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수리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62] 또한 적용됨.

□ 공사는 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에 있어서 ① 참여기술인, ② 유사용역 수행 실적, ③ 신용도,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⑤ 업무 중첩도 등의 요소가 반영되며,

그 평가기준은 공사가 국토교통부고시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 고시"라 한다)을 준용하되, 공사의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참고로, 세부평가기준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발주청은 이를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되 그 기준이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함.[63]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62)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6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

□ 세부평가기준 고시에서는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정밀안전진단의 분야를 ① 교량 및 터널, ② 수리시설, ③ 항만, ④ 건축분야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60%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범위를 인용하는 것으로 보임.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가. 토목분야	1)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옹벽, 절토사면, 육교
	2)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3) **항만** 분야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나. **건축**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유사용역수행실적 역시 그 분야를 참여기술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업체의 실적이 해당 분야에 속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함.

즉, 세부평가기준 고시에 따르면, 수리시설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서 참여기술인이나 용역업체는 동일 분야 내 경력 또는 실적을 100% 인정받는 한편,

참여기술인이 교량 및 터널, 항만, 건축 등 해당 분야 외의 경력 및 실적이 있다면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6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구조인 것임.

□ 그런데, 공사가 세부평가기준 고시를 고려하여 제정한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공사는 수리시설 분야를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등)과 ②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수리시설분야와 관련된 시설물[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하천), 다기능보, 배수(빗물)펌프장]로 정의하여,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하수처리시설, 사방댐” 등의 수리시설은 수리시설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수문 및 통문, 제방(하천), 다기능보(취입보)”의 경우 수리시설 분야

에는 포함시키되, 경력 및 실적을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0%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평가기준 고시와는 달리 수리시설 분야를 세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동일 분야 내 경력 및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100%가 아닌 30%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공사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중 관련 사항 】

구분	내용
참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수리시설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다음의 실적에 한한다.** (1) 저수지(댐) (2) 방조제(하구둑) (3) 양·배수장(빗물펌프장, 배수펌프장), 수문 및 통문(하천부속물), 제방(하천), 취입보(다기능보) **※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하수처리시설, 사방댐 제외** -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용역 참여실적 평가 시 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 또는 방조제, 양·배수장, 배수(빗물)펌프장의 실적 건수와 금액은 100% 인정한다. 그 외 분야인 **수문 및 통문(하천 부속물), 제방(하천), 취입보(다기능보)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인정비율은 30%로 한다.** 다만, 수문 및 통문, 제방, 취입보의 실적합계가 만점실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유사용역 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 또는 방조제, 양·배수장, 배수(빗물)펌프장의 진단실적 건수와 금액은 100%, 그 외 분야인 **수문 및 통문(하천 부속물), 취입보(다기능보)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건수와 금액 인정비율을 30%로 하며,** 실적금액이 1건당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수문 및 통문, 제방, 취입보의 실적합계가 만점실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공사가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는 2022년 861개소, 2023년 711개소, 2024년 913개소의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통하여 실시하였는데,

3년간 각각 35개, 42개, 48개 업체가 평균 24.6개소, 16.9개소, 19.0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공사가 100% 실적인정비율을 적용하는 실적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황 】

(단위: 개소, 개, 건, %)

연도	대상 시설 수	참여 업체 수	참여기술인 실적인정건수			유사용역 실적인정건수		
			소계	100% 인정	30% 인정	소계	100% 인정	30% 인정
2022년	861	35	2,396 (100.0)	2,020 (84.3)	376 (15.7)	1,059 (100.0)	778 (73.5)	281 (26.5)
2023년	711	42	3,806 (100.0)	3,175 (83.4)	631 (16.6)	1,021 (100.0)	753 (73.8)	268 (26.2)
2024년	913	48	4,487 (100.0)	3,595 (80.1)	892 (19.9)	1,007 (100.0)	862 (85.6)	145 (14.4)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에 대하여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과의 연관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실적인정비율을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타 기관에서도 용역특성에 따라 실적인정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기관 특성에 맞추어 ‘댐, 보, 하구둑’과 ‘기타수리시설’을 구분하여 운영하면서도, ‘기타수리시설’의 인정비율을 80%로 설정하고 있어, 30%만을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어 보임.

특히, 실적인정비율이 100%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의 발주청은 대부분 공사가 되는 점, 최근 3년간 용역을 수행한 업체와 참여기술인의 실적인정건수에서 100% 인정건수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미 기존에 진입하여 공사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던 업체는 그 실적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공사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신규 업체는 다른 수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있더라도 실적의 30% 또는 0% 만을 인정받게 되어 불리하게 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 보이고,

참여기술인 역시 공사 또는 공사의 용역을 수행하였던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상대적으로 실적 및 경력을 인정받기 용이할 것으로 보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과 세부평가기준 고시에서 발주청이 반드시 세부평가기준 고시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주청이 정한 기준이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공사의 기준이 경력 및 실적을 제한함에 따라 업체 간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동 고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민간의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세부평가기준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는 사정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한 경쟁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산업·식품용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타 사업의 보조금 교부 시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산업·식품용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사업의 실제 진행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식품용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햄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행 법령에서 추진 가능한 햄프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햄프산업의 저변 확대 및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2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64]

【 2024회계연도 산업·식품용 햄프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산업·식품용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1,250	-	-	1,250	1,250 [51]	-	-	-

64)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산업·식품용햄프산업클러스터조성(2250-386)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햄프(Hemp)란 환각 성분을 가지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0.3% 미만[65]인 대마로, 현재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재배하려는 농업인만을 대마재배자로 허가하는 등 규제되고 있음.[66]

현재 햄프와 관련하여서는 2020년 7월 6일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안동시 풍산읍 등이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았음.

□ 동 사업은 이처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안동시 풍산읍 일원(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A4-2구역)에 햄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과 섬유가공시설 각 1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0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이며, 2개년도('23~'24)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었음.

---

65) THC 비율이 0.3% 이상인 경우에는 마리화나로 분류됨

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대마재배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안동시의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1차년도에는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연말에는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2차년도에는 건축공사 및 준공, 시설·장비 도입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음.

【 동 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서 상 추진 일정(안) 】

<table>
<tr><th>구분</th><th>당초 사업계획서 상 추진 일정(안)</th></tr>
<tr><td>1차년도
('23)</td><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3년 3분기</th><th colspan="3">'23년 4분기</th></tr>
<tr><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h>12월</th></tr>
<tr><td>사업계획 승인</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차 사업비 확보</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추진단 모집</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추진단 확정</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유사사례 조사</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실시설계/인허가</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건축공사 발주</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2차년도
('24)</td><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24년 1분기</th><th colspan="3">'24년 2분기</th><th colspan="3">'24년 3분기</th><th colspan="3">'24년 4분기</th></tr>
<tr><th>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h>12월</th></tr>
<tr><td>건축공사 및 준공</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인전점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차 사업비 확보</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운영 프로그램
보완 및 확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설/장비 사례조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설/장비 계획
구체화 및 확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설/장비 도입
(자동화 시설 구축 등)</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신축건물 등록 등
행정처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설/장비 시연,
사업 홍보</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r>
</table>

※ 자료: 안동시, "산업·식품용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 그런데, 실제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건축공사 발주

에 이르지 못하는 등 일부 지연이 있었으나 계획과 같이 실시설계 착수 및 부지매입까지는 이루어진 반면,

2차년도에는 갑작스럽게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와의 통합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계획했던 착공 및 준공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설계단계에 사업이 머무르게 되었음.

【 동 사업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 】

시기		주요 사업추진 내용
2023년 (1년차)	- 8월	- 경북 안동시, 햄프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선정
	- 9월	- 세부사업계획 승인 - 1년차 사업비 교부 -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협약 결재
	-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 11월	-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 착수
	- 12월	- 조성부지 매입절차 완료
2024년 (2년차)	- 3월	- 2년차 사업비 교부 -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와 통합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착수
	- 8월	-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계획 변경 업무 협의
	- 11월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12월	- 건축, 시설 설계업체 입찰 완료
2025년 (3년차)	- 5월	- 세부설계에 따른 실제 공사비, 생산설비 비용 도입 검토
	- 8월	- 세부설계 결과 사업비 변동에 따른 계획 변경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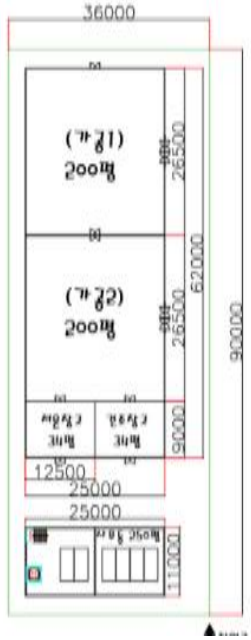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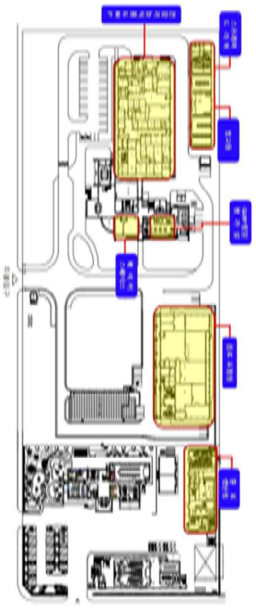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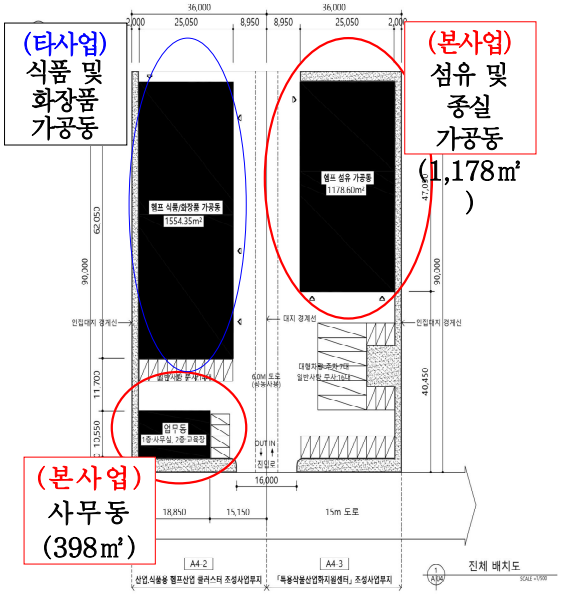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는 2차년도의 사업계획 변경은 인접한 2차일반산업단지 A4-3구역에서 “원예시설 현대화(3034-350)” 사업을 통하여 3년간('23~'25)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식품・화장품가공시설)

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안동시는 인접 구역에서 진행되는 두 사업을 연계하여, 본래 동 사업의 사업지였던 A4-2구역에는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식품·화장품가공시설을 조성하고, 그 대신 A4-3구역에는 동 사업에 따른 섬유가공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동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배치 변경 】

<table>
<tr><th colspan="2">'24. 11. 변경 승인 전</th><th colspan="2">'24. 11. 변경 승인 후</th></tr>
<tr><th>(A4-2구역)</th><th>(A4-3구역)</th><th>(A4-2구역)</th><th>(A4-3구역)</th></tr>
<tr>
<td> 
</td>
<td>  </td>
<td colspan="2"> 
</td>
</tr>
<tr>
<td>(햄프산업클러스터)
업무시설,
섬유가공시설</td>
<td>(산업화 지원센터)
식품·화장품가공시설</td>
<td>(햄프산업클러스터)
업무시설,
(산업화 지원센터)
식품·화장품가공시설</td>
<td>(햄프산업클러스터)
섬유가공시설</td>
</tr>
</table>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가공

□ 건설공사를 동반하는 동 사업은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착공 등의 사업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설령 변경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2023년에 교부받은 12억 5,000만원의 보조금이 2024년으로 전액 이월되어 2024년에 새로이 2차년도 사업비를 교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집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안동시는 2024년 11월에 변경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내에 2년간 교부받은 25억원 중 설계감리비로 5,111만원만을 집행하는 데 그쳤고, 24억 4,889만원을 재이월 또는 이월하였음.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이러한 사업 및 예산집행의 차질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2024년 3월에 2차년도 사업비 12억 5,000만원 전액을 안동시에 교부함으로써, 이러한 실집행단계의 이월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의 '23~'24년 보조금 교부차수별 교부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교부내역		
		차수	교부액	교부일자
2023년	1,250	1차	1,250	'23. 8. 25.
2024년	1,250	1차	1,250	'24. 3. 1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특히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67]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집행지침에 따르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이러한 이월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동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7)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p. 115.

(2) 예산의 실제 집행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동 사업은 상술한 바와 같이 2년간 교부된 25억원의 보조금 중 집행된 금액이 5,111만원에 그쳐, 실집행률이 2년 동안 각각 0%, 4.1%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업임.

□ 그런데 동 사업은 성과지표로 '클러스터 조성 공정률(%)'을 설정하였는데, 사업 기간인 2년간 계획 수립단계에 그쳐 실제로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착공되지는 않았으나,

동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도는 2년 동안 166.7%, 100.0%로서 성과목표를 초과 또는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음.

【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산업식품용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정률 (단위: %)	목표	30	100	사업기간에 따른 예상 공정률 산출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내부자료
	실적	50	100			
	달성도	166.7	100.0			

※ 자료: 농식품부,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5.

이는 성과지표가 ‘클러스터 조성 공정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실적의 측정산식이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일단 농림축산식품부가 피보조기관인 경상북도 안동시에게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기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으로 보임.

□ 「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책당국의 통제가능한 합리적인 책임영역 내에서 사업성과를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이 2025년 8월 현재 아직 계획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100%로 산출되는 것은,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다른 재정사업[68]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사업의 실제 진행상황 등 사업성과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8)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로, 이미 모든 국비(보조금)가 교부된 상황임

7)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사업 수요 예측의 정확성 및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대로 실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유실·유기동물의 수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등록제와 같이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반려인의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분양·기증률을 보다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동물복지 관련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유실·유기동물의 포획과 구조, 입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125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109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음[69].

【 2024년도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12,532	-	-	12,532	10,948	-	1,584	11,764

69)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3741-338)

나) 검토의견

(1)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 설계 및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70]을 통해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보호·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71]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72]를 대상으로 15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당 최대 3억 6,000만원을 국비 20%, 지방비 50%, 융자 2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는 것임[73].

동 내역사업은 국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예산과 융자 지원을 위한 기타민간융자금(450-04목) 예산을 각각 10억 8,000만원씩 총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에서 5억 7,60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비 15억 8,400만원을 모두 불용하였음.

70) 구체적으로 환기, 소음·악취방지, 냉·난방, 분뇨처리, 급수·급이, 차광막, 조명 시설, CCTV 설치, 간판 등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체, 사육실 등 견사 시설 보수(바닥공사, 휀스, 케이지 교체, 철망 바닥 평판 설치, 건물 페인트 칠 등) 등이 있음.

7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을 지원을 받은 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따른 신고 요건을 갖추려는 자를 의미함

72)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자를 의미함

73)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고, 융자·자부담 분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예산 5억 7,600만원의 경우에도 실집행액은 1억 5,600만원으로, 2억 1,800만원은 이월되었고 2억 200만원은 불용되어, 실집행률은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2,160	2,160	576	-	1,584	26.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80	1,080	576	-	504	53.3
기타민간융자금(450-04)	1,080	1,080	-	-	1,080	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A)	집행액	교부액	교부현액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1,080	576	576	576	156	218	202	14.4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와 같이 낮은 집행률 및 실집행률은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신설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각 비목별 실집행률은 매년 15% 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 연도별·비목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비목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2022	330-03	720	164	164	-	164	106	58	-	14.7
	450-04	1,080	113	113	-	113	113	-	-	10.5
2023	330-03	720	144	144	58	202	127	-	75	17.6
	450-04	1,080	104	104	-	104	104	-	-	9.6
2024	330-03	1,080	576	576	-	576	156	218	202	14.4
	450-04	1,080	-	-	-	-	-	-	-	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대상시설인 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입지·건축 관련 법령 미준수 시설[74]이고, 하반기 공사 지연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75]

74)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2024년 민간동물보호시설 컨설팅을 받은 78개소 중 총 45개 시설이 입지 관련 문제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가설건축물 위반 27개소, 농지에 위치한 36개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4개소, 산지에 위치한 5개소의 불법시설물이 확인(1개 시설이 여러 사항 위반으로 중복 있음)되었음

75)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를 고려하여 2024년부터는 기존에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을 국비 20%, 지방비 50%, 융자 20%, 자부담 10%로 변경하였고, 2025년도에는 융자 지원분은 농지·산지 등 위법 해소를 위한 '전용부담금'과 '위법 시설 철거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변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연도별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및 추진 결과 】

(단위: 백만원, %)

연도	시도	시·군·구	사업비 집행 및 추진				실집행부진 사유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률	추진결과	
'22	계 (8개소 선정)		277	218	78.7		
	부산(1)	해운대구	50	50	100	완료	
	충남(1)	부여군	120	120	100	완료	
	전북(2)	부안군	20	20	100	완료	
		익산시	48	-	-	이월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사업 공백기간 발생
	전남(3)	나주시	5	-	-	이월	사업 대상 및 계획 승인 지연('22. 12.)
		영광군	12	7	58.3	일부이월	기자재 공급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지연
		순천시	18	18	100	완료	
	경북(1)	경산시	4	4	100	완료	
'23	계 (3개소)		248	200	80.6		
	경기(1)	용인시	120	120	100	완료	
	전북(1)	김제시	48	-	-	사업포기	인근 주민 민원으로 사업불가
	전남(1)	영암군	80	80	100	완료	
'24	계 (10개소)		576	156	27.1		
	대구(1)	군위군	72	72	100	완료	
	전북(2)	부안군	72	72	100	완료	
		전주시	72	-	-	사업포기	사업 포기
	전남(3)	영광군	18	-	-	이월	하반기 공사 지연
		순천시	18	-	-	이월	하반기 공사 지연
		나주시	36	4	11.1	완료	사업비 잔액불용
	충남(2)	논산시	72	-	-	이월	자부담금 확보 및 공사 지연
		금산군	72	8	11.1	이월	하반기 공사 지연
	충북(1)	보은군	72	-	-	사업포기	재정문제로 사업 포기
	제주(1)	제주시	72	-	-	이월	하반기 건축 인허가 과정으로 공사 지연
합 계 (21개소)			**1,101**	574	52.1		
평 균 (1년 기준 7개소)			**52**	27	52.1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러나 동 사업은 예산 편성시 15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집행 결과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는 총 21개소로 매년 평균 7개소에 불과하고 사업대상자별 평균 교부액은 5,200만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업 수요 예측 및 사업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 구조상 '융자'를 지방비 혹은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민간융자금(450-04목)을 매번 전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24년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금액 중 27.1%만이 실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대로 실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① 동물복지 인식개선 사업은 반려인·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태조사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23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②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보호센터에 유실·유기동물의 포획·구조 비용, 길고양이·실외사육견의 개체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비용, 입양 활성화를 위한 보호동물 입양비,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80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도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내역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동물복지 인식개선	2,366	-	-	2,366	2,366	-	-	2,742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8,006	-	-	8,006	8,006	-	-	7,87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입양 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법」 제15조[76]에 따른 반려동물등록제를 안착시키는 것을 동물복지 인식개선 사업의 목표 중 하나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 마리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현황(누적) 】

(단위 : 천마리)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2,111	2,322	2,827	3,223	3,492

※ 주: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동물마릿수의 합(누적)을 의미함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또한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와 구조보호비를 지원하고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유실·유기동물 분양 및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데,

76)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최근 4년간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의 분양·기증률은 31.6%~39.5%로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유실·유기동물 분양·기증 마릿수 현황 】

(단위 : 마리,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유실·유기동물 분양·기증 마릿수(A)	40,105	44,847	35,752	41,425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마릿수(B)	118,273	113,440	113,072	106,824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의 분양·기증률(A/B)	33.9	39.5	31.6	38.8

※ 주: 유실·유기동물 분양·기증 마릿수는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 중 분양 또는 기증된 유기동물 수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유실·유기동물의 수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등록제와 같이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반려인의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분양·기증률을 보다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가축방역대응지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부진 방지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과 같은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행이 필요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설계·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반복적인 집행 부진을 방지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비,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예방약품·방역장비·소독자원 등에 소요되는 가축방역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964억 3,300만원에 전용 등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66억 1,300만원 중 965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77].

【 2024년도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가축방역대응지원	96,433	-	180	96,613	96,547	-	66	97,634
-방역장비 등 지원	8,555	-	△231	8,324	8,324	-	-	6,679

77)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축방역대응지원(3940-335)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검사장비, 소독·방역차량 교체, 가축전염병 검사실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 중 내내역사업인 ‘가축질병 검사실(BL3)[78] 신축’ 사업은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비용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용역비, 공사비, 부대비 등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79]으로 총 6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음.[80]

---

78) BL3(생물안전 3등급, Biological Safety Level) :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안전 장비 등이 갖춰진 시설

79) 지원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국비는 30억원이 최대 지원금액인바,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초과 금액은 지방비로 충당함.

80) 2022년까지는 단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23년부터는 2년차 사업으로 개편하였고, 2025년부터는 3년차 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4년도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가축질병 검사실(BL3 수준) 신축 비용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 시스템 구축

- 생물안전실험실은 설치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ASF, 구제역 및 AI와 같은 병원체 취급 시는 3등급 이상 시설에서 실시

* BL3(생물안전 3등급, Biological Safety Level) :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안전 장비 등이 갖춰진 시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용역비, 공사비, 부대비 등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단가: 6,000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사업기간: 3년(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70%)

* '22년까지는 단년차 사업, '24년까지는 2년차 사업으로 운영(1년차 40%, 2년차 60%)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200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질병 검사실(BL3) 15개소 신축을 지원하여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총 76명의 직원이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검사실에서 근무 중임.

2026년도에는 경남에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 편성을 추진 중임.

【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 】

□ 2009년~2024년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사업 성과

○ 10개 지방자치단체에 15개소의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 시설운영 목적: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밀진단

○ 운영현황(총 15개소: 운영 11개소, 운영 예정 4개소)

구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	3*	2*	2	1	2*	1	1	1	1*
운영 시작	'20.12	'13.4	'11.7.	'12.3	'13.6	'11.12	'11.4	'10.11.	'10.12	-
인원	6	9	9	7	8	10	9	9	9	-

* 정밀진단시설 인증 진행 중(경기 1, 강원 1, 전북 1), 건축 진행 중(제주 1)

□ 2025년도 이후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사업 계획

○ 2026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이전 계획에 따라 재난형 가축전염병 정밀진단 기능 유지를 위해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지원 예정

-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연례적인 이월 방지를 위해 2년차 사업에서 3년차 사업으로 변경(기재부 협의 완료)

○ 질병 진단 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예산 및 부지확보 여부 등 제반요건을 검토하여 실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 추진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예산으로 2024년도에 18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 현액 57억 9,800만원 중 실집행한 금액은 36억 500만원(실집행률 62.2%)으로 나타났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년도에 교부한 30억원을 2024년까지 재이월(28억 1,600만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2023년에 교부한 12억원과 2024년에 교부한 18억원이 2025년도까지 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2024년도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제 주	1,800	1,800	1,800	1,182	2,982	789	2,193	-	26.5
전 북	-	-	-	2,816	2,816	2,816	-	-	100.0
합 계	1,800	1,800	1,800	3,998	5,798	3,605	2,193	-	62.2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지자체별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사업 집행부진 사유 】

1. 전북특별자치도(2022년, 단년차 사업, 국비 30억원, 집행완료)

○ 사업 현황: 준공('24. 12.), 정밀진단기관 지정 절차 진행중(~'25. 10.)

○ 이월액: ('22년 교부) 3,000백만원 → ('23년 이월) 3,000 → ('24년 재이월) 2,816

○ 진행 현황:

① 2022년도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사업 대상자 선정('21. 12월)

②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22. 4~6월)

③ 지방비 1회 추경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22. 8월)

④ 사업계획서 보완, 공공건축 심의, 일상 감사('22. 9월~'23. 2월)

⑤ 기본안전보건대장 용역 시행 및 완료('23. 3월~4월)

⑥ 설계 용역 실시('23. 5월~11월)

⑦ 건축 입찰 공고('23. 12월)

⑧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24. 2월)

⑨ 정밀검사시설 준공('24. 12월)

2. 제주특별자치도(2023~24년, 2년차 사업, 국비 30억원, 집행중)

○ 사업 현황: 공정률 약 30%('25. 11. 준공 예정)

○ 이월액: ('23년 교부) 1,200백만원 → ('24년 이월) 1,182, ('24년 교부) 1,800백만원 → ('25년 재이월) 394, ('25년 이월) 1,800

○ 진행 현황:

① 2023년도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사업 대상자 선정('23. 3월)

②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승인('23. 3월~4월)

③ 지방비 1회 추경('23. 6월)

④ 기초 설계 완료('23. 9월)

⑤ 공공 건축 계획 사전검토 완료('23. 11월)

⑥ 공공 건축 심의회('23. 12월)

⑦ 설계 용역 실시 및 사전 인허가 절차('24. 3월~8월)

⑧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24. 8월~10월)

⑨ 건축 입찰 공고('24. 11월)

⑩ 정밀검사시설 공사 착공('25. 3월 ~ 현재)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건축사업 특성 상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국비를 이월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조[81]에 따라 국비의 재이월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8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그러나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은 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② 지방비 매칭, ③ 공공건축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 및 공사 단계를 완료한 후 준공되는 사업으로,

각 단계별 이행기간을 고려할 때 단년도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당초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25년도에야 3년차 사업으로 변경하였음.[82)]

동 사업비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조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83)]에 대한 예외라는 점과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이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과 같은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행이 필요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설계·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반복적인 집행 부진을 방지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82) 참고로,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은 2025년부터는 3년차 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8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9)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 기반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은 반려동물 연관산업[84]을 육성하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조사부터 제품 해외홍보 및 현지 법률 자문, 해외인증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18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음[85].

【 2024년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1,840	-	-	1,840	1,840	-	-	2,720

84) 반려동물 연관산업(Pet Care Industry or Market)은 사료, 진료,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함.

85)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3471-347)

나) 검토의견

□ 펫푸드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86] 관련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 R&D 및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문적인 육성 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 현황(2022년 기준) 】

(단위 : 백만$)

분 류	국내시장 규모(A)	글로벌 시장규모(B)	비율(A/B)
펫푸드	1,395.43	123,332.90	1.13
펫헬스케어	1,995.60	187,190.10	1.07
펫서비스	2,701.98	62,551.82	4.32
펫테크	80.17	4,982.88	1.61
총계	6,173.18	378,057.70	1.63

※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태조사」, 2023

86)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류는 다음과 같음.

분 류	개 념
펫푸드	반려동물 사료, 간식, 특수목적식 등 관련 산업 * 사료관리법 상 정의 :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
펫테크 (펫용품 포함)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용품 등 관련 산업 * 바이오 기술(헬스케어)이 펫테크 산업에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펫헬스케어	반려동물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 관련 산업 * 펫헬스케어에 의료, 원격진료, 제약 등 산업 포함
펫서비스	반려동물 양육에 관련된 서비스 및 장묘 산업 위탁관리, 미용, 플랫폼, 반려동물 호텔 등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도 신규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를 추진하였음.

【 2024년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내역사업 설명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 내역	본예산	집행액	주요 내용
시장조사 및 전파	정보조사	100	100	국내 기업이 수출을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등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 정보조사 및 제공
	K-Pet 수출박람회	400	400	수출 유망국가 또는 국내에서 수출 상담 및 계약에 특화된 전시회(가칭, K-Pet Industry Fair)를 개최하여 해외 진출 활성화
	상품연구·개발	600	600	수출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 고도화 및 수출을 위한 바이어 요구사항 반영(커스터마이징 등)을 위한 지원
수출시장 개척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210	210	개별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 및 수출하기 위한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홈페이지, 카탈로그, 해외인증 등 현지화	140	140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특허/지재권/상표권, 법무/회계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개별 기업에 지원
	전문인력 양성	90	90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기존 기업 수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수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온라인플랫폼 공동 입점 등	50	50	기업 간 시너지 창출, 동반 성장을 위한 네트워킹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을 위한 온라인플랫폼(Chewy.com 등) 공동 입점 등 지원
One-Welfare Valley 조성	One-Welfare Valley 조성	250	250	One-welfare Valley* 사업대상자(지자체) 선정 이후 조성·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반려동물의 기호 등을 반영하여 제품·서비스의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실증인프라 시설
합 계		1,840	1,84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전문기관 설문조사를 통하여 당해연도 지원 기업들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만족도’로, 2024년도의 사업 만족도 실적은 84%로 목표치인 70%를 14%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성과지표 및 결과 】

성과지표	구분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만족도 (단위:%)	목표	70	92	타 사업 만족도 목표 및 사업 첫 해임을 감안하여 70점을 목표치로 설정	당해연도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지원 기업들의 만족도 평균	전문기관 설문조사
	실적	84	-			
	달성도	120.0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러나 동 사업의 목표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동 사업이 실제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또한 당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정부지원액 대비 수출실적’ 등을 지표에 추가하고 이를 후속 지원 여부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환류하도록 지적[87]한 것에 대한

8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펫푸드 수출물량’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성과를 측정하기에 충

적절한 지표로 보이지 않음.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신생산업이어서 반려동물 사료를 제외한 타 분야에 대한 통계가 없는바, 현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별 수출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임.

【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 수출 현황 】

(단위 : 톤, 만$)

연도	전체		반려견		반려묘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1	39,338	9,994	13,219	3,726	26,119	6,268
'22	61,234	14,907	24,560	6,327	36,674	8,580
'23	57,915	14,975	22,245	6,134	35,670	8,841
'24	63,958	16,087	26,805	6,803	37,153	9,284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펫푸드, 펫헬스케어(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펫보험 등), 펫서비스(돌봄, 교육·훈련, 장묘 등), 펫테크(자동화·스마트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로 다양하게 분류[88]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분하지 않으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정부지원액 대비 수출실적' 등을 지표에 추가하고 이를 후속 지원 여부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환류할 것을 지적하였음.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만족도'로 변경함.

88) 펫헬스케어(48.8%, 1,811억 달러), 펫푸드(32.8%, 1,233억 달러), 펫서비스(16.8%, 625억 달러), 펫테크(1.3%, 50억 달러) 순으로 글로벌 시장이 구성되어 있음('22 기준)

10) 연구개발(R&D) 사업 공통: 연구개발(R&D)사업 관련 미환수 금액의 조속한 환수 필요 등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미환수 금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관리·감독에 미흡했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환수 금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연구 성과 위·변조, 불성실한 과제 수행 등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정책적 지원이 후퇴하고 있는바, 향후 관련 연구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정책 간담회 및 기술 실증회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R&D 예산은 총 17개 세부사업으로, ICT 융합·원천기술, 융복합 인력 양성 등 스마트농업 분야,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동물질병 진단·방역, 디지털육종 등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식품 제조기술, 기능성·맞춤형 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 등 투자를 위해 총 1,676억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676억 3,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식품부 소관 연구개발(R&D)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R&D 사업	167,632	-	-	-	167,632	167,632	-	-	184,882
- 노지분야 스마트농업 기술 단기 고도화(R&D)	13,933	-	-	-	13,933	13,933	-	-	-
-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R&D)	11,505	-	-	-	11,505	11,505	-	-	-
-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R&D)	3,039	-	-	-	3,039	3,039	-	-	-
-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산업화 기술개발(R&D)	3,786	-	-	-	3,786	3,786	-	-	-
-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 기술개발(R&D)	5,670	-	-	-	5,670	5,670	-	-	3,762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R&D)	37,611	-	-	-	37,611	37,611	-	-	40,880
- 기술사업화지원(R&D)	20,516	-	-	-	20,516	20,516	-	-	25,573
-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 (R&D)	7,462	-	-	-	7,462	7,462	-	-	4,501
- 친환경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R&D)	8,809	-	-	-	8,809	8,809	-	-	6,750
- 스마트팜다부처 패키지혁신 기술개발(R&D)	15,779	-	-	-	15,779	15,779	-	-	16,636
- 국제협력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R&D)	5,288	-	-	-	5,288	5,288	-	-	6,938
- 밭농업기계화 촉진 기술개발 (R&D)	5,325	-	-	-	5,325	5,325	-	-	5,325
- (신규)농식품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R&D)	4,500	-	-	-	4,500	4,500	-	-	6,000
- (신규)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 기술개발(R&D)	5,470	-	-	-	5,470	5,470	-	-	8,098
- (신규)농생명마이크로 바이옴 혁신기술기반구축(R&D)	1,500	-	-	-	1,500	1,500	-	-	3,050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11,411	-	-	-	11,411	11,411	-	-	11,531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R&D)	6,028	-	-	-	6,028	6,028	-	-	6,187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국가 R&D 사업에 대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기획, 관리, 평가 및 미환수액의 징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R&D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인하여 당초 사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검토의견

(1) 제재사유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환수액의 조속한 환수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89] 제32조에서는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②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③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90]하

8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과학기술기본법」과 부처별 개별 규정을 근거로 추진되어 오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하에 부처별 규정을 통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음.

9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

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8조에서는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①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② 그 기간 내에도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91]하고

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부에서 위탁받은 국가 R&D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기 환수처분액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액의 징수 또한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연구개발과제(R&D)에 대한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환수처분 등”이라 한다) 총액 5억 9,300만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25년 7월말 기준으로 9,900만원에 불과하여, 처분 총액의 약 83.3%에 달하는 4억 9,400만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아있는 등 연구비 환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48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혁신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그 밖에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 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를 따른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R&D) 환수처분 등 미환수율 】

(단위: 백만원, 2025. 7. 31. 기준)

처분연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금액(A)	환수액	미환수액(B)	미환수율(B/A)
2022	360	58	302	83.9%
2023	210	18	192	91.4%
2024	23	23	0	0%
합계	**593**	**99**	**494**	**83.3%**

※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이처럼 83.3%에 달하는 높은 미환수율은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있거나 과제 수행의 과정 및 결과가 불량한 경우 등 부적절한 연구에 투입된 예산을 회수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R&D 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여 연구개발 과제 수행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연구과제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취지임.

최근 3년간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환수처분은 15건인 반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2건임.

【 최근 3년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건수 현황(A) 】

(단위: 건)

처분 연도	과제 수	구분	제재 사유
2022	15	환수(14), **제재부가금(1)**	협약 위반*(14), 연구결과 불량(1)
2023	1	환수(1)	부정행위(1)
2024	1	**제재부가금(1)**	부정행위(1)
2025	-	-	-
합계	17	환수(15), **제재부가금(2)**	협약위반(14), 연구결과 불량(1), 부정행위(2),

※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 협약 위반 : 회수금 미납(11), 연구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3)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상기 표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과제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22년에 제재처분을 받은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 1. 1.)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규율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이었고,

「과학기술기본법」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는 다르게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한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제재부가금 부과 건수가 적었다는 입장임.[92]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유 종전법 및 현행법 비교 】

구분	(종전) 「과학기술기본법」상 사유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사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과정·결과 불량, 현약불이행 및 변경·중단, 위조·변조·표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성과소유 위반, 보안대책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신청·수행, 조사방행행위,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생명윤리 위반, 연구실 안전 위반, 연구수행 포기,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

※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 그러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상기 표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여러 부적절한 사유들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있어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

92)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삭제)**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R&D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연구개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재 발생한 4억 9,400만원의 미환수액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조속히 환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둘째, 향후 현재와 같은 미환수 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립한 환수금 미납방지 예방대책[93]을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연구 성과 위·변조, 불성실한 과제 수행 등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연구개발자의 책임성 확보를 통해 연구과제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93)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관리 방안('24.12월)을 수립하여 ①연구개발기관의 재무 안전성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부실기업 제외 근거 마련, ②연구개발비 사용관리 교육 참여 의무화, ③정산 전 연구개발비 사전점검, ④환수금 분할 납부, 반납기한 연장 등 납부 방법 유연화로 환수율 제고 등 사업단계별 예방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2)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관련 미흡한 R&D 정책 지원 개선 필요

□ 벼농사는 경운·정지부터 이앙·방제·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계화가 정착되어 99%의 높은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67% 수준에 불과함.

【 최근 5년간('20~'24) 밭농업기계화율 현황 】

연도	작업공정별 기계화율(%)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평균
'20	99.6	**12.2**	73.0	93.2	**31.6**	**61.9**
'22	99.8	**12.6**	76.9	94.8	**32.4**	**63.3**
'24	100	**18.2**	77.7	96.2	**42.9**	**67.0**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기계화율은 2년 주기로 짝수해에 조사하고 있음
* 작물별 재배 면적을 고려한 가중 평균값임

특히,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파종·정식(18.2%) 및 수확(42.9%) 단계의 기계화율은 매우 저조하며, 배추·고추의 파종·정식 및 수확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어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음.

【 2024년도 작물별·작업공정별 밭농업기계화율 현황 】

작물	작업공정별 기계화율(%)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평균
무	100	8.3	93.1	99.0	5.7	61.2
배추	100	**0.0**	84.4	96.5	**0.0**	56.2
마늘	99.9	17.6	57.0	96.2	59.7	66.1
양파	100	22.7	91.2	99.1	31.4	68.9
고추	99.9	**0.3**	55.2	89.1	**0.0**	48.9
고구마	100	2.6	89.2	98.0	79.6	73.9
감자	99.9	6.8	91.4	98.2	84.7	76.2
콩	99.9	42.3	76.4	96.3	62.6	75.5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통계명 :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143004호)
* 법적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의2(실태조사)
* 조사주기 및 방법 : 격년(짝수 해), 현지면접조사

따라서, 이러한 낮은 밭농업 기계화율은 농촌의 고령화[94]에 따른 인력난과 생산비 상승 등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95]하는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기계가 남성 신체에 맞춰 설계되어 여성 농업인에게 과도한 근골격계 부담을 유발하는 등 여성 농업인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94)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2년 49.8% → '23년 52.6% → '24년 55.8%

95)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가인구 중 여성 인구 비율 51.1%

실제로, 여성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유병률이 남성보다 1.5배가량 높은 실정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농업인의 업무상질병 유병률 현황 】

구분	유병률						2024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농업인 수	업무상질병자
총계	5.2%	5.1%	4.8%	5.0%	5.3%	5.8%	1,777,900명	103,463명
남성	4.1%	4.4%	4.0%	4.3%	4.5%	4.6%	893,111명	40,916명
여성	**6.5%**	**5.8%**	**5.6%**	**5.8%**	**6.3%**	**7.1%**	**884,789명**	**62,548명**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국가승인통계 143003호)

이처럼 ‘밭농업 기계화’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과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R&D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관련 R&D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밭농업 기계화’ 관련 연구과제는 ’22년 12건에서 ’25년 1건으로 급감하였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관련 과제는 ’25년에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임.

【 최근 3년간 밭농업 기계화 연구과제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요약	예산액 (백만원)
2022 (12개)	과수 수확 후 처리 및 운반 로봇 개발('22~'24)	농작업 현장에서 수확된 과수의 꼭지제거, 이송, 중량 선별, 적재가 가능한 수확 후 처리 기술 및 자율주행 기반의 수확박스 운반이 가능한 로봇 개발	2,315
	노지용 고랑 김매기 작업 로봇 개발('22~'24)	노지(논, 밭)에서 경운과 복토 작업을 통해 잡초를 제거하는 고랑 김매기 작업 로봇 개발 및 상용화	3,204
	레이저기술을 활용한 밭작물 사이의 잡초 제거 로봇 개발 ('22~'24)	밭고랑을 자율주행하며 두둑 작물사이의 잡초를 인식하고,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택적 제초가 가능한 로봇 개발	2,584
	밭농업용 두둑성형 로봇 개발 ('22~'24)	노지 농업 환경에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밭작물의 두둑성형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개발	2,315
	노지 과수 수확 로봇 개발 ('22~'24)	자연광 조건 만감류/감귤의 수확정보인식(수확적기 과실탐지, 6D 포즈추정)을 위한 딥러닝 기술 개발	3,025
	전기동력기반 스피드 스프레이어(SS기) 개발 및 상용화 ('22~'24)	기존 내연기관 SS기 성능 특성을 고려한 전동화 대상 부품 및 모듈 검토 및 모델링에 기반한 설계 최적화	1,982
	전기구동 다목적 7kW이하 소형 승용관리기 개발 및 상용화 ('22~'24)	소형 농가의 다목적 농작업에 적합한 승용 관리기 플랫폼을 설계·제작하고, 작업기의 사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	1,166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한 30kW급 전기구동 사료작물 수확기 개발 및 상용화('22~'25)	사료작물 수확기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설계 최적화 및 전기구동 수확기 플랫폼 부하 계측 시스템 개발 및 필드 테스트	3,550
	마늘 파종기 고도화 기술 개발 ('22~'23)	두둑성형, 비닐피복, 마늘파종 등 마늘파종 기계화 표준 작업 방법 개발을 통한 마늘파종기 상용화 모델 개발	816
	양파 줄기 절단기 고도화 기술 개발('22~'23)	송풍식 줄기절단기 사용 시 덜 마른 양파 줄기는 절단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을 통한 고도화 제품개발	574
	양파 수집기 고도화 기술 개발 ('22~'23)	양파의 손상 최소화가 가능한 7kW급 자주식 소형 양파 수집기 개발 및 산업화	816
	작업자 추종 및 고랑 자율조향하면서 이송/경운 작업을 수행하는 4kw 이하급 소형 운반차 개발 ('22~'24)	밭고랑 내 전후 양방향 주행이 가능하고 100kg 이상 이송이 가능한 전동-유압 플랫폼 개발	1,125
2023 (12건)	반자율 주행 고추 정식기 성능 고도화 ('23~'25)	반자율 주행 기술과 1회전 2구 식부 기술을 적용한 고추 정식기를 개발	990
	자동 주행이 가능한 추종형 감자 수집 및 이송기 성능 고도화('23~'25)	두둑의 위치, 높이, 크기 등을 감지하여 자동 주행이 가능한 감자 수집기 및 수집기와 연동된 추종형 자동 주행 감자 톤백 이송기 개발 및 성능 고도화	1,059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요약	예산액 (백만원)
	다목적 작업이 가능한 트랙터 부착형 고구마 정식기와 고구마 순 부착 작업기 개발('23~'25)	기존의 고구마 정식기에 비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 성능을 높이고 결주율 및 오차를 줄여 고효율·저생산비의 작업기 개발과 성능 고도화	990
	생분해성 육묘포트 전용 배추 정식기 성능 고도화('23~'25)	생분해성 육묘포트 절단시스템이 탑재된 배추 정식기 개발 및 성능 고도화 및 현장적용성 평가	990
	마늘 수집형·승용형 수확기 성능 고도화('23~'25)	경사지, 지면요철, 마늘 손상방지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제어 기술이 탑재된 자주식 승용 수확기 개발 및 성능 고도화	1,132
	굴취/수집이 동시에 가능한 자주식 양파수확기 성능 고도화('23~'25)	4륜구동 및 조향 휠타입으로 농지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회전반경이 가능한 구동시스템으로 개발을 통한 굴취/수집이 동시에 가능한 양파수확기 개발	1,132
	고능률 중대형 콩 수확기 성능 고도화('23~'25)	지능형 제어 기술이 탑재된 중대형 콩수확기 개발 및 고능률 탈곡 선별시스템 성능시험을 통해 콩 특성에 적합한 적정 수확 기계화	1,132
	감자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개발 및 현장실증('23~'27)	강원도 고랭지 여름감자 및 경상북도 봄감자의 기계화 표준 재배모델 개발 및 현장실증	2,790
	고구마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개발 및 현장실증('23~'27)	주산지별 재배환경, 농기계 도입 및 보급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재배환경에 맞는 최적 재배모델 및 농기계 운용모델 가이드라인 수립	2,790
	양파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개발 및 현장 실증('23~'27)	양파 주산지 재배양식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및 표준재배모델반영 양파 정식기와 수확기 개선 및 현장 실증	2,790
	마늘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현장 실증('23~'27)	주산지별 마늘 재배방법 및 재배환경 DB 구축, 한지와 난지형에 맞는 개별 표준화 재배 모델 개발	2,790
	배추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현장실증('23~'27)	배추 주산지별, 작형별 재배양식 및 농기계 도입·적용 이슈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표준 재배모델 개발	2,790
2024 (5건)	경로 학습 기반 무인 하이브리드 SS기 개발 및 사업화('24~'26)	경로 학습기반 기반 무인자동주행 SS기 및 방제 효율 최적화를 위한 요소 기술개발 및 RTK-GPS 기반 무인자동주행 SS기 농가 실증 테스트	869
	사과 전정 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모바일 전정 로봇 및 디지털트윈 전정 솔루션 개발('24~'26)	자율주행 궤도형 로봇과 4륜 독립구동 모바일 자율주행, 전정 위치를 로봇의 좌표로 변환 기술개발을 통한 모바일 전정 로봇 시스템 개발	869
	자주식 인발형 마늘 복합수확기 개발 및 사업화('24~'26)	마늘 굴취와 동시에 줄기를 인발/이송/절단한 후 톤백에 수집하는 자주식 수확기 개발	869
	클라우드 관제 및 임베디드 기반의 로터베이터 부착형 멀티 종자용 12V 전동식 Air Drill 정밀파종기 개발('24~'26)	비료 살포 및 멀티 종자 파종 및 배토, 복토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작업기 매칭 기술개발 및 현장 실증	1,875
	노지 스마트 농업 대응형 자주식 수집형 감자수확기 기술사업화('24~'26)	수확기 이송이 용이하고 수집부에 수확량 모니터링 기능을 장착하여 무게와 개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감자수확기 개발	820
2025 (1건)	노지 작물 방제 스마트패키지 기술 산업화('25~'28)	노지 작물 환경 및 생육 기반 정밀 방제 기술 개발을 통한 스마트 방제 패키지 기술 산업화	2,250

※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 최근 3년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과제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 도	과제명	과제요약	예산액 (백만원)
2022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한 30kW급 전기구동 사료작물 수확기 개발 및 상용화('22~'25)	사료작물 수확기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설계 최적화 및 전기구동 수확기 플랫폼 부하 계측 시스템 개발 및 필드 테스트	3,550
2023 (3건)	반자율 주행 고추 정식기 성능 고도화('23~'25)	반자율 주행 기술과 1회전 2구 식부 기술을 적용한 고추 정식기를 개발	990
	생분해성 육묘포트 전용 배추 정식기 성능 고도화('23~'25)	생분해성 육묘포트 절단시스템이 탑재된 배추 정식기 개발 및 성능 고도화 및 현장적용성 평가	990
	굴취/수집이 동시에 가능한 자주식 양파수확기 성능 고도화 ('23~'25)	4륜구동 및 조향 휠타입으로 농지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회전반경이 가능한 구동시스템으로 개발을 통한 굴취/수집이 동시에 가능한 양파수확기 개발	1,132
2024	자주식 인발형 마늘 복합수확기 개발 및 사업화('24~'26)	마늘 굴취와 동시에 줄기를 인발/이송/절단한 후 톤백에 수집하는 자주식 수확기 개발	869
2025	-	-	-

※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둘째,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확산 및 보급 등과 관련한 일선 농가 현장과의 소통의 확대가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밭농업 기계화,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개최한 정책 포럼, 설명회, 실증회 등은 매년 개최하는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 제외 시 연 1회 수준으로, 개발된 기술을 알리고 개선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밭농업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관련 포럼, 설명회, 실증회 등 개최 내역 】

연 도	행사명
2020 ~2025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매년)
2021	**양파 기계 정식 연시·전시회**(10.28)
2022	**제30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디지털 전환과 농산업의 미래**(9.1.) (스마트 농기계로 구현하는 농산업의 미래)
2024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1.18.)
2024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점검 회의**(7.11.)

※ 자료 : 농식품부 제출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밭농업 기계화를 제고하기 위한 로봇, AI 등 첨단기술 접목한 지능형 농업기계 개발 확대 등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산을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관련 연구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관련 R&D 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보급률 중심의 '양적 확대'를 넘어, 농가 현장에서의 실용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질적 제고'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기존의 연구실 중심의 하향식(Top-down) 개발에서 벗어나, 농가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농업인, 산업체,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

셋째,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현장 실증과 농가 교육,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보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및 기술 실증회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을 제도화하는 등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임.

11) 임대형 스마트팜(지역특화): 보조금 관련 지침 위반 주의 및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보조금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고 대규모로 이월되는 등 동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동 사업 관련 미흡한 관리·감독에 따라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경과와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집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향후에도 실집행률 부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 규모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임대형 스마트팜(지역특화) 사업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업하여 재배역량 향상, 수익 창출 및 자본 축적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37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96]

【 2024회계연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임대형 스마트팜	37,000	-	-	-	37,000	37,000	-	-	40,700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28,000	-	-	-	28,000	28,000	-	-	34,700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	3,000	-	-	-	3,000	3,000	-	-	6,000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6,000	-	-	-	6,000	6,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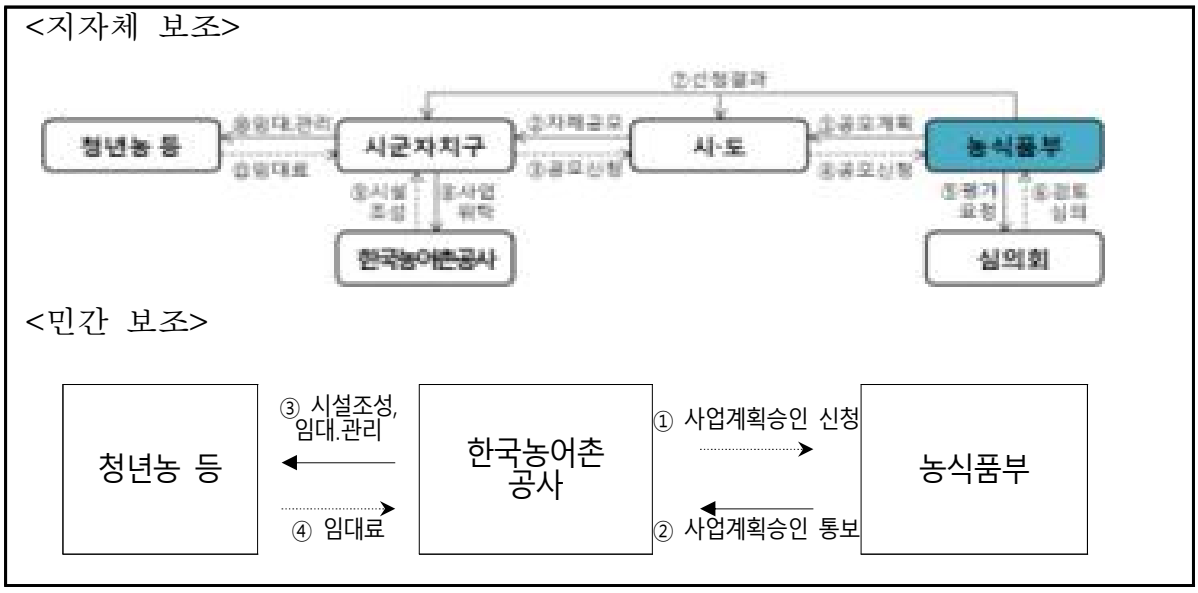
※ 자료: 농식품부 제출

9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대형 스마트팜(2220-383)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청년·귀농인 대상 임대온실 조성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지자체 소유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의 농업·농촌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집행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음.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집행 절차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 보조금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보조금 교부 필요

□ 동 사업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제천, 전남 신안, 경북 영천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실집행이 부진하여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도 일괄적으로 연말(12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세목	피보조 기관명	국고 보조율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D/C)
				소계	1차 (3.15)	2차 (6.20)	3차 (8.28)	4차 (11.13)	5차 (12.10)						
임대형 스마트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220-383)	330-03	충북 제천	70	-	-	-	-	-	-	2,481	2,481	2,481	-	-	100
	330-03	강원 양구	70	-	-	-	-	-	-	11,883	11,883	4,883	**7,000**	-	41.0
	330-03	전남 신안	70	-	-	-	-	-	-	12,202	12,202	12,202	-	-	100
	330-03	경북 영천	70	-	-	-	-	-	-	13,265	13,265	12,369	**896**	-	93.2
	330-03	전북 장수	70	-	-	-	-	-	-	12,717	12,717	9,600	**3,117**	-	75.5
	330-03	강원 삼척	70	5,600	3,920	-	1,680	-	-	6,649	12,249	1,663	**10,586**	-	13.6
	330-03	전북 김제	70	5,600	3,920	-	-	900	**780**	6,716	12,316	174	**12,142**	-	**1.4**
	330-03	경남 밀양	70	5,600	3,920 (3.20)	-	-	900	**780**	6,998	12,598	528	**12,070**	-	**4.2**
	330-03	충남 서산	70	2,800	-	1,960	-	-	**840**	-	2,800	-	**2,800**	-	**0**
	330-03	전남 영암	70	2,800	-	1,960	-	-	**840**	-	2,800	673	**2,127**	-	**24.0**
	330-03	경북 예천	70	2,800	-	1,960	-	-	**840**	-	2,800	125	**2,675**	-	**4.5**
	330-03	충북 영동	70	2,800	-	-	1,820	-	**980**	-	2,800	828	**1,972**	-	**29.6**
	합 계			28,000	11,760	5,880	3,500	1,800	**5,060**	72,911	100,911	45,526	**55,385**	-	**45.1**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97].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금의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기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98]

---

9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9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 아울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에서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엄격한 사전검토를 규정하고 있음.[99)]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안일하게 일괄 교부하는 관행을 반복함에 따라, 553억 8,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보조금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고 대규모로 이월되는 등 동 사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99)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 97)
(6) 보조금 교부 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2) 이월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 점검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69억 8,1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27.9%의 낮은 실집행률에 그치는 등 만성적인 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어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 2022~202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2	33,000	33,000	33,000	33,000	19,119	52,119	9,471	**42,648**		**18.2**
2023	49,000	49,000	49,000	49,000	42,648	91,648	18,737	**72,911**		**20.4**
2024	28,000	28,000	28,000	28,000	72,911	100,911	45,526	**55,385**		**45.1**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2024년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의 경우 4건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나, 이 중 경북 예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2025년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4%에 그치고 있고, 충남 서산의 경우 집행 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다음 연도로의 재이월이 우려되는 실정임.

【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예산의 이월 및 집행 현황('25.7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

시·도	시·군	사업명	이월액(A)	집행액(B)	잔액(A-B)	집행률(%)
충북	영동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972	688	1,284	34.9
충남	**서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00**	**0**	**2,800**	**0**
경북	**예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675**	**106**	**2,569**	**4.0**
전남	영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127	429	1,698	20.2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한편, 2023년 예산이 2025년까지 재이월된 사업 또한 3건에 이르는데, 그 중 전북 김제 사업의 경우 2025년 7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1.1%에 그쳐 사업 집행이 매우 부진한 실정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는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100],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국고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바, 2023년에 교부된 예산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10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 2023년 임대형 스마트팜(지역특화) 예산의 재이월 및 집행 현황('25. 7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

시.도	시군	사업명	이월액(A)	집행액(B)	잔액 (A-B)	집행률(%)
강원	삼척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4,986	2,314	2,672	46.4
전북	**김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6,542**	**73**	**6,469**	**1.1**
경남	밀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6,470	1,317	5,153	20.4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처럼 예산의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한정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예산 집행 및 사업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의 실집행율 부진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기별 현장 점검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의 이월 및 재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둘째, 향후에도 실집행률 부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사업 규모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도시농업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개선 필요

○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운영에 있어 관련 계통 취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제도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제고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및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10억 2,200만원 중 10억 2,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01].

【 2024회계연도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도시농업활성화	1,022	-	-	-	1,022	1,022	-	-	91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01)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도시농업활성화(2250-384)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3차(2023~2027)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3차(2023~2027)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상 목표 】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확산	
목표	◈ 사회적 가치	참여자 수 : ('22) 1,956천명 → ('27) 3,000 도시농업 공동체 : ('22) 575개 → ('27) 1,000
	◈ 환경적 가치	도시농업 맞춤형 모델 : ('22) 4종 → ('27) 14 기후변화대응 식물선발 : ('22) 40종 → ('27) 80
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주요 과제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	▪ 탄소중립 실천공간 확대 ▪ 텃밭의 환경관리 ▪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강화
	스마트한 도시농업	▪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도시농업 ▪ 도시농업 관련 산업 지원 ▪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 도심에서 돌봄 실천 ▪ 수요자 맞춤형 교육운영 ▪ 교육운영의 질적 관리
	상생과 협력 확대	▪ 기업의 ESG경영과 도시농업 ▪ 농업·농촌과의 연계 강화 ▪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
추진 체계	정부·민간·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나) 검토의견

□ 2017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라 한다)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기술 보급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인프라 확충, 일자리 마련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은 독립된 시험을 통해 부여되지 않고, 아래 두 가지의 개별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음.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 요건 】

① **기존 국가기술자격 보유**: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분야 중 하나의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보유(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② **전문 교육과정 이수**: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의무적으로 80시간의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자료: 관계법령 재구성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 현황 】

(단위: 명)

취득 누계	'17	'18	'19	'20	'21	'22	'23	`24	`25. 7.
13,630	331	1,508	2,185	1,756	1,980	1,613	1,850	1,737	67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런데, 이러한 도시농업관리사는 ’17년 제도 도입 이후 ’25년 7월 현재까지 13,63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4년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 조사기간(‘24.1.1～’24.12.31)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는 1,407명으로 나타나 자격 취득자의 10%에 불과한 실정임.

【 도시농업관리사 취업현황(2024년 기준) **】**

□ 주요 활동분야: 학교텃밭 강사,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강사, 지자체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

(단위: 명)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407*	232	106	39	88	6	4	4	24	713	30	79	8	69	5

* 조사기간('24.1.1 ~ '24.12.31)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출처: 2024년 지자체 행정조사(`24.12)>

심지어 이 수치가 ‘24년 “1년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모두 집계한 통계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 실제로 관련 계통에 종사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당초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도입 시의 취지와 무색하게 동 자격이 관련 계통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미흡하게 운영되는 것은 제도 설계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이유로 보임.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한 사업 설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도시농업관리사의 공급 확대에만 치중함에 따라, 실제 시장 수요는 낮은 반면, 도시농업관리사의 공급은 계속되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도시농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 과정에 교육생 40명당 1명의 도시농업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102]하고 있으나,

민간 영역의 도시농업 활동이나 소규모 공동체 텃밭 등 현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역은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들은 이른 바 '장롱면허'를 보유한 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0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시설
2.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시설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즉,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공급 측면(양성기관 지정, 자격자 배출)에 치중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였으나, 고용인센티브 등 민간의 자발적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행되는 정책은 전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당시 취지와는 다르게 관련 계통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둘째, 획일적인 자격 취득 과정에 따른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있음.

도시농업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① 농화학, ② 시설원예, ③ 원예, ④ 유기농업, ⑤ 종자, ⑥ 화훼장식, ⑦ 식물보호, ⑧ 조경, ⑨ 자연생태복원 분야 중 하나 이상의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도시농업의 이해, 관련 법규, 재배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단위: 시간)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80)	
		이론	실습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친환경농업의 개념, 귀농·귀촌, 농산물직거래 등 도농상생시책 등	40	40
도시농업 기반조성	텃밭 설계, 관배수(灌排水) 시설, 폐기물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 등		
도시농업 기술	텃밭농사기술, 벽면 녹화(綠化) 기술, 원예를 통한 정서순화, 곤충사육 및 양봉 기술 등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병해충 관리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요령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농사요령 보급 등		
도시농업 관련 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농업 관련 법의 이해		
도시농업 리더십	도시민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프로그램 평가	도시농업 사례 발표 및 평가 등		

※ 자료: 관련 법령 발췌

그러나, 유사사업인 산림청의 '숲 해설가'[103] 자격 취득 요건[104]이 170시간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도시농업관리사의 80시간 교육은 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에 다소 짧은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자칫 '수박 겉핥기'식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자격 취득 과정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03) 자연과 식물을 매개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설, 교육, 지도'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유사

104) 산림청의 숲 해설가 자격은 170시간(공통과정 36시간 이상 + 분야별과정 134시간 이상(실습 30시간 포함)) 이수하여야 취득

13)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보조금 관련 지침 위반 주의 및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보조금이 불용되는 등 동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동 사업 관련 미흡한 관리·감독에 따라 실집행률 부진을 초래한 책임을 유념하고, 그 경과와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 현장 점검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실집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228억 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05]

【 2024회계연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8,815	-	-	28,815	28,815	-	-	2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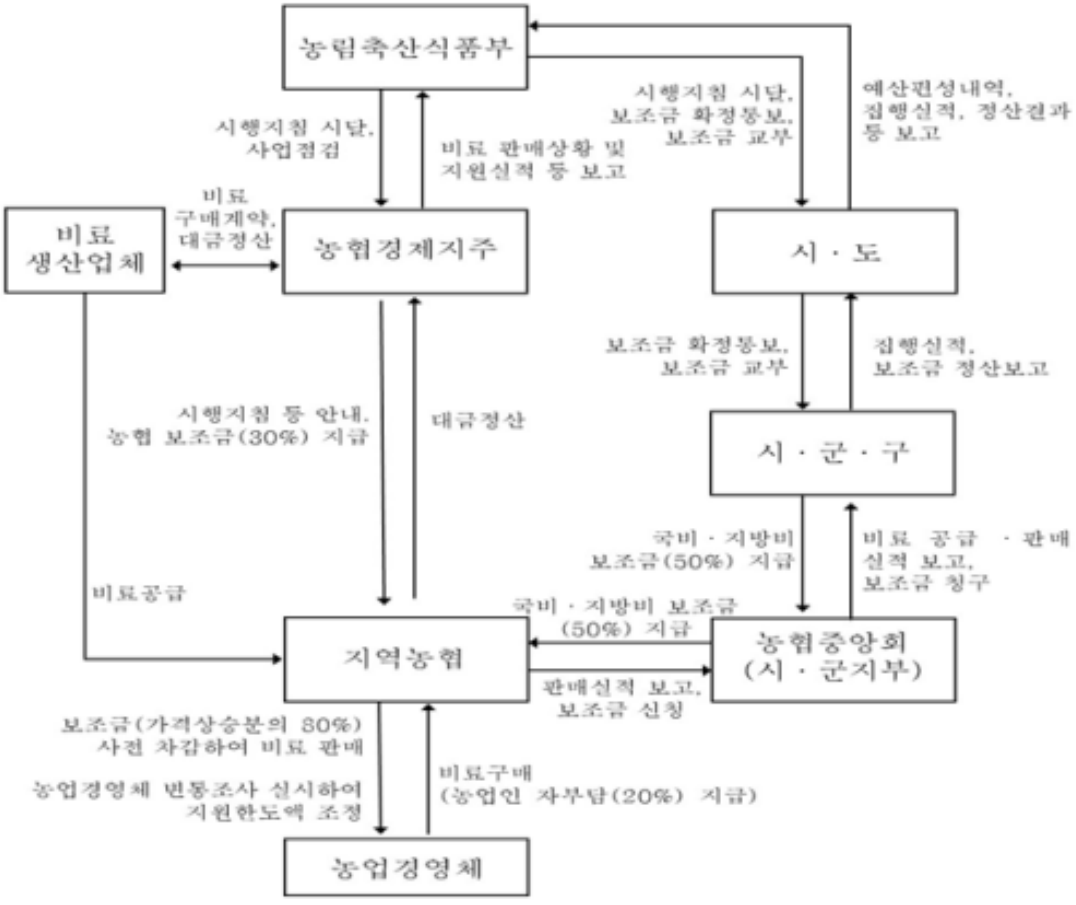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05)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2260-377)

나) 검토의견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인상차액의 80%)를 농업경영체 등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임.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실시 체계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런데, 동 사업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실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대전·경기·강원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연말(11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2024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

세부 사업명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세목	피보조 기관명	국고 보조율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D/C)
				소계	1차 (2.27.)	2차 (3.21.)	3차 (8.29.)	4차 (11.15.)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60-377)	330-01	서울특별시	30	23	11	8	4	-	-	23	15	-	8	65.2
	330-01	부산광역시	30	102	49	46	7	-	-	102	85	-	17	83.3
	330-01	대구광역시	30	270	113	109	48	-	-	270	208	-	62	77.0
	330-01	인천광역시	30	251	117	96	38	-	-	251	211	-	40	84.1
	330-01	광주광역시	30	238	85	80	73	-	-	238	185	-	53	77.7
	330-01	대전광역시	30	78	34	30	-	14	-	78	54	-	24	69.2
	330-01	울산광역시	30	134	64	60	10	-	-	134	103	-	31	76.9
	330-01	세종특별자치시	30	117	48	48	21	-	-	117	92	-	25	78.6
	330-01	경기도	30	1,919	-	1,759	-	160	-	1,919	1,529	-	390	79.7
	330-01	강원특별자치도	30	2,393	1,168	837	-	388	-	2,393	1,746	-	647	73.0
	330-01	충청북도	30	1,545	618	651	125	151	-	1,545	1,125	-	420	72.8
	330-01	충청남도	30	3,500	1,505	1,371	-	624	-	3,500	2,725	-	775	77.9
	330-01	전북특별자치도	30	4,062	1,531	1,624	453	454	-	4,062	3,233	-	829	79.6
	330-01	전라남도	30	6,231	2,236	2,258	800	937	-	6,231	4,888	-	1,343	78.4
	330-01	경상북도	30	3,474	1,581	1,273	-	620	-	3,474	2,785	-	689	80.2
	330-01	경상남도	30	2,394		1,928	236	230	-	2,394	1,831	-	563	76.5
	330-01	제주특별자치도	30	2,084	839	873	185	187	-	2,084	1,548	-	536	74.3
	소 계			28,815	10,000	13,052	2,000	3,763	-	28,815	22,365	-	6,450	77.6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06].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금의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기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07]

---

1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10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 또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련지침에서 엄격한 사전검토를 규정하고 있음.[108)]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안일하게 일괄 교부하는 관행을 반복함에 따라, 64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 한편,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닌, 아래 표와 같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0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 97)
(6) 보조금 교부 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25년의 경우에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동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55억원 편성되었으나, '25년 7월 기준 25%의 저조한 집행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180,099	180,099	180,099	-	180,099	123,758	-	56,341	**68.7**
2023	100,000	100,000	98,800	98,800	-	98,800	73,921	-	24,879	**73.9**
2024	28,815	28,815	28,815	28,815		28,815	22,365		6,450	**77.6**
2025. 7.	-	25,500	6,400	6,400	-	6,400	6,400	-	-	**25.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동 사업이 농가의 무기질비료 구입비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연례적으로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동 사업이 실제의 사회적 수요에 비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동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보조금이 불용되는 등 동 사업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

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실집행률 부진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 현장 점검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 종자산업활성화지원: 종자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2020~2025. 7.) 접수된 조정신청이 단 3건에 불과하고, 그 3건 또한 1건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분쟁종자조정제도 운영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홍보 방식의 다각화, 고령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조정 신청 대행 역할 부여 및 조정 성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입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종자산업활성화지원 사업은 국내채종기반 구축, 민간육종가 지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운영, 종자유통조사 등으로 종자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110억 4,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3,600만원, 이·전용액 2억 6,200만원(△2억 6,2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11억 8,100만원 중 9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109].

【 2024회계연도 종자산업활성화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종자산업활성화지원	11,045	136	262 △262	-	11,181	9,775	261	1,145	10,976
- 종자산업	8,563	79	178 △135	-	8,685	7,485	161	1037.7	7,899
- 민간육종가 지원	879	-	36 △126	-	789	717	-	72	879
- 종자유통조사	1,363	-	48 △1	-	1,410	1,386	-	25	1,958
- 종자산업통계조사	240	57	-	-	297	187	100	10.3	24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09)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종자산업활성화지원(6432-304)

나) 검토의견

□ 국립종자원의 분쟁종자조정제도는 종자 및 묘를 둘러싼 농업인과 종자업체 간의 분쟁을 소송 이전에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되었음.

발아 불량, 생육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적정 보상 수준 제시를 통해 농업인과 종자업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최근 5년간 (2020~2025. 7.) 접수된 3건의 조정 신청은 모두 조정 거부 또는 불성립으로 단 1건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음.

【 분쟁종자조정제도 최근 5년 운영실적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7.
조정 신청건수		2	-	-	1	-	-
조정거부		2	-	-	-	-	-
최종 조정 여부	성립	-	-	-	-	-	-
	미성립*	-	-	-	1	-	-

* 미성립 사유: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에 대해 피신청인 미동의

※ 자료: 국립종자원 제출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종자 관련 민원 건수가 1,304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현장의 종자 관련 분쟁 수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임.

【 종자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2020~2025.7)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합 계**
종자원	183	210	176	209	196	175	**1,149**
농식품부	49	13	7	6	16	12	**103**
농촌진흥청	8	9	5	14	8	8	**52**
합 계	240	232	188	229	220	195	**1,304**

※ 자료: 국립종자원 제출

□ 이처럼 분쟁종자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동 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상당 수의 농업인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으로 활용을 꺼리는 점이 제도의 활용도를 저하기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보임[110].

110) 한국농어민신문(2025.02.14.) 최근 5년 '합의실적 전무'…분쟁종자조정제 무용론

특히, 고령 농업인의 경우, 분쟁 해결 의지가 있어도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 장벽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신청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둘째, 조정 절차의 실효성 부재로 인하여 동 제도의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면 절차는 즉시 종결되므로 농업인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인 종자업체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아무런 효과 없이 관련 절차가 종결되는 실정임.

즉,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에 따라, 자본과 정보력이 우위에 있는 종자업체가 불리한 조정안을 수용할 유인이 전혀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 따라서, 국립종자원은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실효성 확보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첫째, 기존의 수동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방식을 다각화하여 농업인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령 농업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분쟁조정 신청 대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셋째, 조정 불응 시 종자업체에 일정한 불이익을 주거나, 조정 성립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조정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식품기업 창업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검토 및 사업관리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사업과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을 검토하고, 사업 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중복 신청·수혜 여부를 사전 단계에서 식별·차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111]은 식품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R&D와 수출 중심의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274억 3,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27,430	-	-	27,430	27,430	-	-	24,147
-기업지원시설 구축	780	-	-	780	780	-	-	1,300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371	-	-	371	371	-	-	349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1,790	-	-	1,790	1,790	-	-	1,790
-기업 기술지원	1,952	-	-	1,952	1,952	-	-	1,952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306	-	-	306	306	-	-	288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4,705	-	-	4,705	4,705	-	-	3,310
-기본경비	17,526	-	-	17,526	17,526	-	-	15,158

111)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2836-355)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사업은 식품분야 초기창업자의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전문적인 엑셀러레이팅(교육, 진단, 마케팅, 투자유치 등) 등을 통한 혁신창업자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주관으로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식품기업의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으로서 2024년 예산액 6억 6,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사업 개요 】

<table>
<tr><td>주관</td><td>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td></tr>
<tr><td>2024년
예산</td><td>6억 6,000만원
*자부담액 미포함</td></tr>
<tr><td>목 적</td><td>식품분야 초기창업자의 사업화 자금 및 전문 엑셀러레이팅(교육, 진단, 마케팅, 투자유치 등) 등을 통한 혁신창업자 발굴 및 성장 지원</td></tr>
<tr><td>지원 대상</td><td>① 식품분야, ② 청년, ③ 초기 창업자
* (청년) 만19세 ~ 만39세 이하 / (초기창업자) 7년 이내 창업자</td></tr>
<tr><td>지원 내용</td><td>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td></tr>
<tr><td>상내 내용</td><td>
<table>
<tr><th>구분</th><th>예비창업자 과정</th><th>초기창업자 과정</th></tr>
<tr><td>지원
금액</td><td>예비창업자</td><td>창업 후 7년 이내</td></tr>
<tr><td>지원
내용</td><td>900만원
(국비 90% 자부담 10%)</td><td>1,800만원
(국비 80%, 자부담 20%)</td></tr>
<tr><td>지원금</td><td colspan="2">· 재료비(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
· 시제품제작비(장비이용료, 위주용역비 등)
· 검시분석비(영양성분, 첨가물, 위해성분, 미생물, 유통기한 설정 등)
· 패키징 제작비(제품 포장을 위한 패키징 제작 및 개선 비용)
· 전문가 활용비(창업·사업화를 위한 기술 전문가 자문 비용) 등</td></tr>
</table>
</td></tr>
</table>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제출

□ 동 사업은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으로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여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동 사업과 같이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농식품부 내 농업혁신정책관 소관에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 사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두 사업은 식품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과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과 대상, 지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자부담률 및 지원금액 등 일부 요건에만 차이가 있음.

【 식품기업 창업지원(농식품부) 유사 사업 비교 】

주관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
사업명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지원 대상	・청년(만19세~만39세) ・예비/초기 창업자 ・7년 이내 창업자	・예비/초기 창업자 ・7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창업자금 지원, 컨설팅 등** ○창업기업: 1,800만원 ○예비창업자: 900만원	**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창업자금 지원, 컨설팅 등** ○창업기업: 3,000만원 ○예비창업자: 1,000만원 *우수기업 추가 지원 가능
예산액	**660백만원**	**13,125백만원**
2024년 **지원 규모**	**식품기업 55개사** 지원 (예비창업 20개, 초기창업 35개)	**식품기업 97개사** 등 총 370개사 지원
자부담률	국비 80~90%, 자부담 10~20%	국비 70%, 자부담 30%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출

□ 이처럼 유사한 창업지원 사업이 이원적으로 운영될 경우 ① 자부담률 및 지원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② 각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비용의 중복소요, ③ 정책 효과의 책임소재 불분명, ④ 중복수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2024년에 추진한 '초기창업자 과정' 수혜기업 35개 중 10개 기업이, 같은 연도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으로부터 총 5억 4,000만원의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며,

특히, 이 중 7개 기업은 동일한 사업 아이템(시제품)을 기반으로 양 기관에서 각각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복 지원의 소지가 높아 보임.

【 2024년도 사업 중복지원 의심 현황(초기창업자) 】

구분	업체명	창업사업 지원액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동일한 사업 아이템으로 중복 지원	A사	1,800만원	6,000만원
	B사	1,800만원	3,000만원
	C사	1,800만원	3,000만원
	D사	1,800만원	3,000만원
	E사	1,800만원	3,000만원
	F사	1,800만원	3,000만원
	G사	1,800만원	3,000만원
	소 계	3억 6,600만원	
중복 지원	H사	1,800만원	3,000만원
	I사	1,800만원	3,000만원
	J사	1,800만원	6,000만원
	소 계	1억 7,400만원	
합 계		5억 4,000만원	

* 자부담 포함액수

※자료: 2024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사업 최종결과보고서(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사업 신청 시 ‘중복수혜금지확약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를 명시하고 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한 ‘본 사업과 농식품부 창업지원사업의 동시 수행은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중복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선정 취소·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중 복 수 혜 금 지 확 약 서

당사는 2024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귀 기관의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직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자료: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동일 과제(아이템)로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 과제로 사업 수행 시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의 별도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은 불가능**함(**중복 수행 불가**)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주의)** 본 사업 협약체결 후 동일 아이템(과제)으로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본 사업 협약은 해지되며 사업비는 **전액환수 처리됨**. 또한 향후 3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료: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4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모집 공고(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이처럼 양 기관 모두 중복 수행을 금지하는 사전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혜의 발생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은 동 사업의 관리가 규정의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다른 창업기업의 기회 박탈,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 저하, 사업의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중복 수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최근 5년)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지원금 환수 등의 엄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② 사업 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중복 신청·수혜 여부를 사전 단계에서 식별·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 유사한 창업지원사업이 동일 부처 내에서 이원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16) 푸드서비스선진화: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 목적 외 사용 소지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별도 절차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당초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공공배달앱의 정책효과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선별효과가 적은 측면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이용을 유인할 다각적인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푸드서비스선진화[112]는 외식분야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외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1,300만원 중 20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푸드서비스 선진화	2,613	-	-	2,613	2,085	-	528	1,925
- 외식산업 활성화	763	-	-	763	763	-	-	-
- 외식업경쟁력 강화 패키지	1,850	-	-	1,850	1,322	-	528	1,925

112)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푸드서비스선진화(2837-37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식업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 중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공배달앱(app)의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 앱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시장구조에 기인한 높은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배달앱으로서 수수료 2% 이하, 지역화폐 연계, 광고료 없음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공공배달앱을 운영중인 지자체
사용용도	○ 소비자 및 외식업체 대상 공공배달앱 이용 독려 홍보 캠페인 추진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조건 (사업의무)	○ 필수 결과물 및 공공배달앱 이용 현황 제출(11월) - 필수 결과물: 메인영상 1, 쇼츠영상 1, 카드뉴스 1 - 이용 현황: 회원수/가맹점 수/주문 건수/주문액 증가 등 현황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군·구 당 국비 50백만원(시·도 일괄 추진시 100백만원) * 시도 일괄 추진의 경우 배달앱 수, 홍보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비 1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적정 규모 신청(시도 일괄 추진시 관할 시군구 개별 지원은 불가)
2024년 예산안	○ 예산 미편성, 집행 3억 7,700만원

※자료: 농식품부 제출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소지

□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동 사업이 포함된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내역사업은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외식업체(1,850개소)의 경영 컨설팅,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4개소),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165개소)을 위하여 편성되었음.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113]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세부내역과 다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사업은 사업공고 시 성과지표[114]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사업 종료 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지표를 제출하지

11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14) 회원수, 가맹점 수, 주문 건수, 주문액 증가 등 현황

않아 사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비 사용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선별지원 효과 저조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원 효과 제한과 관련하여,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61.4%가 배달앱을 이용 중인 반면,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19.8%만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프랜차이즈 외식업 평균 매출액은 약 3억 2,067만원으로, 비프랜차이즈(2억 2,401만원) 대비 43.1% 가량 높은 상황이고,[115]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대기업 직영점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배달앱 홍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참고] 이용 현황 제출 양식(안)

□ 지자체/공공배달앱

기간	회원수(명, 누적)	가맹점수(개, 누적)	주문 건수(건, 월평균)	주문액(원, 월평균)
6월말				
11월말				

115)「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공공배달앱 홍보사업의 수혜가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대기업 계열 매장에 집중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투입의 효과성저하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공배달앱 관련 정책은 단순한 앱 홍보에 국한되기 보다는,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구조에 대응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였으나, 낮은 이용 실적과 사업 폐지[116]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공공배달앱의 낮은 소비자 인지도 및 민간앱 대비 낮은 편의성·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기인함.

현재 공공배달앱은 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116)"너도나도 '공공배달앱'…운영 포기 속출"(KBS뉴스, 2025. 1. 8.)
"공공 배달 앱 잇따른 폐지, 혈세 낭비 논란 커진다"(공감신문, 2024. 7. 26.)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공공배달앱"(국민일보, 2024. 9. 30.)

할인쿠폰, 적립금, 연계시스템[117] 등이 제공되는 민간앱을 이용할 유인이 높은바, 이로 인해 “① 소비자 이용 저조 → ② 소상공인의 등록 포기 → ③ 공공배달앱 실패 → ④ 정책성과 미달성”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및 외식업 침체 극복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이용을 보다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7) 특정 어플 등에 대한 유료결제 시스템 이용 시 배달비 무료 등 인센티브 제공

17) 식품산업정책관 SOC 사업: 사업 지연 방지 및 보조금 교부시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SOC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보완 및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교부시 관련 지침에 따른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024회계연도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건축공사비를 10개 내역사업에서 편성 및 집행하였으며, 예산 306억 6,000만원 중 289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5,0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 2024회계연도 식품산업정책관 SOC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성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1,745	-	-	1,745	1,745	-	-	-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7,300	-	-	7,300	5,550	1,750	-	2,750
·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375	-	375	375	375	-	-	4,186
·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7,360	-	-	7,360	7,360	-	-	4,640
·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550	-	-	550	550	-	-	4,600
· 기업지원시설 구축	780	-	-	780	780	-	-	1,300
·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2,250	-	-	2,250	2,250	-	-	-
·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5,750	-	-	5,750	5,750	-	-	7,875
·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허브 구축	4,400	-	-	4,400	4,400	-	-	5,900
·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150	-	-	150	150	-	-	2,000
합 계	30,660	-	375	30,660	28,910	1,750	-	33,251

나) 검토의견

(1) SOC 사업의 과다한 지연 방지 필요

□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SOC 사업(10개)의 2024회계연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예산 289억 1,000만원 중 40억 5,3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4%로 크게 저조하였음.

【 2024회계연도 식품산업정책관 SOC 사업 실집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사업)	보조사업자			이월·불용사유
	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기능성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2832-380, 식품산업인프라 강화)	1,745	189	10.8%	·설계변경 및 부지용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2832-380, 식품산업인프라 강화)	5,550	654	8.9%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연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2832-401,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375	179	47.7%	·지방자치단체별 기본계획 수립) 및 조달청 계약체결 지연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2832-310, 전통발효식품 육성)	7,360	686	9.3%	·시공업체 확보 어려움 등으로 실시설계 지연되어 예산 이월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2837-33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550	25	4.6%	·기재부 수시배정 예산 편성 시점('24.8.20.)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지연
-기업지원시설 구축 (2836-355,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780	51	6.5%	·부지 용도변경 지연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 지연
-GMP기반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 구축 (2271-303,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2,250	2,250	100%	-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2271-303,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5,750	0	0%	·설계 공모 1회 유찰 등으로 업체 선정 지연,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조성공사 지연
-천연물소재전주기표준화허브구축 (2271-303,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4,400	0	0%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필수행정절차 진행 및 실시설계 착수 지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2832-452,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150	19	12.7%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지연
합 계	**28,910**	**4,053**	**14.0%**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SOC 사업예산의 집행부진이 ①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의 유찰, ② 기본계획 수립의 지연, ③ 사업부지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이러한 사업지연의 대부분은 사업관리 부실로 인한 지연으로서,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SOC 사업의 과다한 지연 및 예산이월은 정책의 의도한 효과를 적시에 발생시키지 못하고, 재정자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는 비효율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내역사업의 추진경과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이에 따라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집행가능성 검토가 미흡한 보조금 교부의 문제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엄격히 사전 검토하고, 중간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SOC 예산 289억 1,000만원 중 40억 5,300만원(14%)만 집행되고, 86%에 해당하는 248억 5,700만원은 보조사업자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특히, ①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사례 5건, ②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연말(4분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대부분 이월한 사례 15건, ③ 보조금을 1회에 전액 지급하고 이월한 사례 등이 확인됨.

【 2024회계연도 식품산업정책관 SOC 보조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교부일	교부액	비고	실집행률
기능성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24.6.25.	1,450	예산 전액교부	10.8%
		'24.11.22.	295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24.6.17.	263	예산 전액교부	47.7%
		'24.8.29.	37		
		'24.11.28.	75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24.10.23.	400	예산 전액교부	9.3%
		'24.12.12.	6,960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24.9.20.	40	예산 전액교부	4.6%
		'24.10.15.	510		
기업지원시설 구축		'24.1.18.	100	예산 전액교부	6.5%
		'24.2.14.	20		
		'24.11.18.	660		
GMP기반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 구축		'24.2.2.	1,850	예산 전액교부	100%
		'24.5.29.	40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24.2.26.	500	일부 교부	8.9%
		'24.6.18.	5,050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조성	강원 춘천	'24.5.1.	3,000	예산 전액교부	0%
		'24.12.17.	1,750		
	경북 예천	'24.12.17.	500	예산 전액교부	0%
	전북 남원	'24.10.28.	200	예산 전액교부	0%
		'24.12.17.	300		
천연물소재 전주기표준화허브구축	강원 강릉	'24.5.1.	1,700	예산 전액교부	0%
		'24.11.20.	2,300		
	충북 제천	'24.10.30.	200	예산 전액교부	0%
		'24.11.20.	200		
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시설		'24.10.31.	100	예산 전액교부	12.7%
		'24.11.21.	50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집행 가능성 검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회계 담당자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내부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교부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430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원금회수 및 국고보조금 반납 등에 따라 57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6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655**	**169**	**169**	**-**	**-**	**△486**
기타민간이자수입	53	48	48	-	-	△485
기타재산이자수입	122	121	121	-	-	△1
경상이전수입	**20,911**	**2,351**	**2,302**	**-**	**49**	**△18,609**
과징금	-	55	6	-	49	6
기타경상이전수입	20,911	2,296	2,296	-	-	△18,615
융자및전대 차관원금회수	**21,481**	**3,196**	**3,196**	**-**	**-**	**△18,285**
합 계	**43,047**	**5,716**	**5,667**	**-**	**49**	**△37,38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본예산 및 세출예산현액은 173억 6,300만원임.

□ 농업신산업육성으로 16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9,0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업신산업육성	17,363	-	-	-	-	17,363	16,873	-	490
합 계	**17,363**	**-**	**-**	**-**	**-**	**17,363**	**16,873**	**-**	**49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	51	50	-	-	50
토지대여료	-	1	1	-	-	1
건물대여료	-	50	50	-	-	50
합 계	-	51	50*	-	-	50

*백만 단위로 반올림하여 오차발생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액 및 지출액은 없음.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8억 2,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 및 국고보조금 예치이자수입 등으로 163억 6,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0억 5,3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43억 800만원은 미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391**	**2,155**	**1,757**	**-**	**398**	**1,366**
기타재산수입	391	2,155	1,757	-	398	1,366
경상이전수입	**11,431**	**14,206**	**10,296**	**-**	**3,910**	**△1,135**
기타경상이전수입	11,431	14,206	10,296	-	3,910	△1,135
합 계	**11,822**	**16,361**	**12,053**	**-**	**4,308**	**23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은 7,95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014억 9,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67억 4,900만원임.

□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로 6,452억 7,700만원, 농업신산업육성으로 742억 6,200만원, 축산업진흥 57억 2,300만원 등 총 7,27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에서 1,678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에서 15억 100만원, 축산업진흥 3억원 등 총 18억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업신산업육성	74,262	-	-	-	-	74,262	74,262	-	-
농업인력육성 및창업지원	1,883	-	-	-	-	1,883	1,883	-	-
축산업진흥	6,023	-	-	-	-	6,023	5,723	-	3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713,088	101,493	-	-	-	814,581	645,277	167,803	1,501
합 계	**795,256**	**101,493**	**-**	**-**	**-**	**896,749**	**727,145**	**167,803**	**1,80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연례적 실집행부진 및 이월 문제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현장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포기에 따른 제재 강화, 사업기간 및 연부율 조정 등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은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역량강화 및 입양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56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53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불용하였음[118].

【 2024년도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자율)	5,623	-	-	5,623	5,323	-	300	5,643

118) 회계(기금)-세부사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3740-31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희망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영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 또는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증축 및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역 동물보호센터[119]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비 40%, 지방비 60%의 비율로, 일반 동물보호센터[120]는 총사업비 2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비 30%, 지방비 70%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을 2~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121].

동 사업은 ① 사업신청 단계, ② 사업선정 단계, ③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 ④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를 거쳐 사업이 진행됨.

---

119)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 등 광역 단위에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

120)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

121) (2개년사업) 1년차 총사업비의 10~20%, 2년차 이후 80~90% 예산편성
(3개년 사업) 1년차 총사업비의 10~20%, 2년차 20~30%, 3년차 50~70% 예산편성
※ 단,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경우 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지방비 확보 등 개별 여건에 따라 단년도 사업, 예산 추가 편성 또는 연차별 예산편성 비율 조정을 할 수 있음.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추진 체계 】

단 계	내 용
① 사업신청	[사업시행지침] 사업 추진방향 통보 (농식품부, 전년도 1월) →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수립·제출 (지자체, 전년도 1~2월) → 온·오프라인 사업계획검토·신청 (시·도, 전년도 2~3월)
② 사업선정	[온·오프라인] 신규사업성 평가 (시·도, 2~3월) → [온·오프라인] 신규사업성 평가 (농식품부, 3~4월) → [온·오프라인] 신규지구 예산 반영 (농식품부(5월)·기재부(8월)·국회(12월))
③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확정후] 기본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 → [온·오프라인] 시행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 → [온·오프라인] 사업시행 (시·도, 시·군·구)
④ 정산 및 사후관리	[e-나라도움] 사업추진현황 및 자금집행현황 제출 (사업시행자(연중)) →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연중))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관리 (사업시행자)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도까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4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9	2,280	2,280	2,280	-	2,280	47	2,230	3	2.1
2020	4,644	4,644	4,644	2,230	6,874	1,199	3,612	2,063	17.4
2021	3,526	3,526	3,526	3,612	7,138	2,257	4,598	283	31.6
2022	4,693	4,693	4,693	4,598	9,291	2,144	5,793	1,354	23.1
2023	5,841	5,186	5,186	5,793	10,979	4,011	6,624	344	36.5
2024	5,623	5,323	5,323	6,624	11,947	4,682	6,715	550	39.2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는 ① 사업초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이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 이상으로 예산을 교부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월액이 매년 누적[122]되었고,

②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부된 예산 256억 5,200만원 중 16.6%인 42억 6,000만

122)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해당 연도의 예산액을 초과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즉, 이는 해당 연도의 예산액을 연내에 거의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그 전년도 예산액의 일부까지 함께 이월하는 재이월이 관행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원[123]이 불용되었기 때문임.

실제로 2019년 이후 2024년까지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하여 55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12개소(21.8%)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124]

【 연도별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지원 현황 】

(단위: 개소)

최초 예산 편성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합계	지원 선정	5	9	6	11	13	11	55
	완료	3	7	5	5	7	1	28
	사업포기	2	2	1	4	2	1	12
	진행중	-	-	-	2	4	9	15
신설	지원 선정	5	9	5	11	11	11	52
	완료	3	7	4	5	5	1	25
	사업포기	2	2	1	4	2	1	12
	진행중	-	-	-	2	4	9	15
증축·개보수	지원 선정	-	-	1	-	2	-	3
	완료	-	-	1	-	2	-	3
	사업포기	-	-	-	-	-	-	-
	진행중	-	-	-	-	-	-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에는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123) 다만, '교부 후 지자체 불용(실집행부진)' 42억 6,000만원'에 '미교부 불용(집행부진)' 9억 5,500만원을 합치면 총 불용액은 52억 1,500만원으로 나타남.

124) 부산, 경산, 군산, 정읍, 태안, 부천, 완주, 장흥, 문경, 철원, 보령, 곡성

은 지역이 5곳 존재하고, 교부가 이루어진 16개 지역 중 실집행률이 50%를 초과한 지역은 단 두 곳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4년도 지자체별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지역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계	5,623	5,323	5,323	6,624	11,947	4,682	6,715	550	39.2
거제	216	216	216	4	220	146	74	-	66.4
고성	300	300	300	390	690	365	325	-	52.9
공주	300	300	300	300	600	57	543	-	9.5
담양	480	480	480	120	600	12	588	-	2.0
함양	360	360	360	59	419	25	394	-	6.0
홍성	300	300	300	297	597	23	574	-	3.9
서울	1,177	1,177	1,177	-	1,177	114	1,063	-	9.7
곡성	240	240	240	-	240	-	-	240	0.0
영양	180	180	180	-	180	29	151	-	16.1
음성	120	120	120	-	120	-	120	-	0.0
임실	120	120	120	-	120	-	120	-	0.0
장수	450	450	450	-	450	54	396	-	12.0
진도	60	60	60	-	60	22	38	-	36.7
진주	120	120	120	-	120	-	120	-	0.0
파주	300	300	300	-	300	-	300	-	0.0
횡성	600	600	600	-	600	25	575	-	4.2
그 외*	300	-	-	5,454	5,454	3,810	1,334	310	69.9

※ 주 : '그 외' 지역의 경우 202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교부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만을 교부현액으로 하여 실집행한 지역을 의미하며, 고양, 구미, 남해, 당진, 동해, 보령, 수원, 여수, 영월, 인제, 창원, 청주 등 총 12개 지역임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정 지연,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포기[125] 등 매년 유사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 연도별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실집행부진 사유 】

연도	실집행부진 사유
2019	-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2,230백만원) - 공사계약금 변경(감소)에 따른 잔액 반납(경주 3백만원)
2020	- 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이월(3,612백만원) -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포기(부산,군산,정읍/1,800백만원)** - 공사 중 추가절차 이행(진입도로 조성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미사용 잔액 반납(강릉,서산,평택/263백만원)
2021	- 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이월(4,598백만원) - 사업종료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미사용 잔액 반납(**경산***,서산,원주,통영,용인/283백만원)
2022	- 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이월(총 5,793백만원) -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포기(경산*,태안,문경,완주/1,350백만원)** - 사업종료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미사용 잔액 반납(원주,해남/4백만원)
2023	- 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이월(6,624백만원) -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포기(부천,장흥/330백만원)** -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해남,김천/14백만원)
2024	- 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이월(6,715백만원) -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포기(보령,곡성/540백만원)** -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당진 10백만원)

※ 주 : 경산은 2021년도에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 부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미사용 잔액 2억 4,000만원을 반납하였고, 2022년도에 결국 사업을 포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불용이 발생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25)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한 지역주민의 반대 존재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현장 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포기에 따른 제재[126] 강화, 사업기간 및 연부율 조정[127] 등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6)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포기 시 2년 동안 동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27) 동 사업은 사업기간을 2년~3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특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28개소 중 7개소는 사업기간이 4년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었음.

2)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친환경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드론농약 살포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공 소비시장을 창출하는 등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사업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위해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42억 3,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28].

【 2024회계연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4,237	-	-	-	4,237	4,237	-	-	4,48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28) 회계(기금)-세부사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2274-301)

나) 검토의견

□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함.[129)]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은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이러한 기존 관행농어업의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친환경농어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꾸준히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1～’25) 계획’[130)]”을 이행하고 있음.

---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13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개요('21~'25) 】

비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확산	
목표	◈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kg/ha) : ('20) 266/10.5 → ('25) 233/9.5 ◈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인식 제고(%) : ('20) 27.5 → ('25) 50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확대(%) : ('20) 5.2 → ('25) 10	
주요 추진 과제	탄소 감축 농업 기반 구축	· 비료 · 농약 사용 감축 · 시 · 군 단위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개편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 젊은 인력 유입 촉진 ·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추진 ·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확대 · 친환경농업 위해요인 관리 강화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용 시장 확대 · 급식시장 및 민간 소비시장 확대 · 친환경 외식·가공산업 활성화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러나, 제5차 계획의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25년 10%까지 높일 계획이었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24년 기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농약 사용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 목표(9.5kg)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제5차 계획의 이행실적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며 부진한 실정임.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목표 및 실적 】

구 분	목 표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kg/ha)	화학비료: '25년) 233	266	286	255	242	-
	농약: '25년) 9.5	**10.5**	**11.8**	**12.4**	**12.7**	-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인식 제고(%)	'25년) 50%	27.5	30.2	32.8	35.9	40.8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확대(%)	**'25년) 10%**	**5.2**	**4.9**	**4.6**	**4.6**	**4.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러한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 실제 농업 현장의 괴리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한 청사진과 달리, 농업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첫째,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지원 제도임.

정부는 친환경 농가에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와 농민들은 현재의 직불금 단가로는 관행농업 대비 추가되는 노동력과 소득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특히, 인증 유형에 따라 3~5년만 한시적으로 100%의 직불금이 지급되는 현행 방식[131]은 장기적인 영농 계획 수립의 유인이 적어 직불금의 100% 지급이 종료되면 다시 관행농업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외부 위협에 대한 친환경 농가의 무방비 노출임.

친환경농가가 성실하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더라도 외부 요인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최근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보편화되면서, 인근 관행농지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유입되어 친환경 인증 농지에서 검출되는 '비의도적 오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131) 「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
(지급기한) 무농약인증 3년, 유기인증 5년 100% 지급, 이후 60% 지급

그러나, 현행 제도상 피해 농가가 직접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고, 구제 절차는 복잡하여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성실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의 생산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셋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기반 약화와 판로 불안 문제임.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는 동시에 어렵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소비 기반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 중단임.

이 사업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동시에 확보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나, 정부가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많은 친환경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잃어 이후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음.

이는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대하기는커녕, 기존의 성공적인 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정책 사례로 보임.

결론적으로, 현재 친환경농업의 위축은 단순히 농민들의 참여 부진 문제라기보다는 ① 실효성 없는 지원 제도, ② 외부 위협에 대한 농식품부의 미흡한 대처, ③ 농식품부 등 정부 스스로 초래한 판로 불안이라는 삼중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제5차 계획의 저조한 이행실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립 예정인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은 기존과는 다른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도록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공공 소비 시장을 창출하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없음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본예산 및 세출예산 현액은 178억 1,700만원임.

□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으로 152억 9,700만원 지출하였고, 25억 2,000만원 불용처리하였음.

【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농업인력육성 및창업지원	17,817	-	-	-	-	17,817	15,297	-	2,520
합 계	**17,817**	**-**	**-**	**-**	**0**	**17,817**	**15,297**	**-**	**2,52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 양곡관리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당초 미곡판매수입 5,335억 500만원, 부산물판매수입 43억 8,9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66억 900만원, 기타잡수입 97억 5,4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 274억 3,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조 1,643억 2,300만원 등 총 2조 7,460억 1,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미곡판매수입, 부산물판매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1,253억 2,900만원이 증가한 2조 8,713억 4,8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중 미곡판매수입 6,987억 5,800만원, 부산물판매수입 61억 4,0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 191억 1,1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31억 1,200만원, 기타잡수입 42억 700만원, 토지매각대 4억 6,1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 1,042억 7,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조 343억 2,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0만원 등 총 2조 8,703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지연 등으로 9억 5,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손익계정	**2,746,019**	**2,871,347**	**2,870,388**	**-**	**959**	**124,369**
미곡판매수입	533,505	699,147	698,758	-	389	165,253
부산물판매수입	4,389	6,146	6,140	-	6	1,751
기타재산이자수입	-	19,124	19,111	-	13	19,111
기타경상이전수입	6,609	3,663	3,112	-	551	△3,497
기타잡수입	9,754	4,207	4,207	-		△5,547
토지매각대	-	461	461	-		순증
전년도세계잉여금	27,439	104,276	104,276	-		76,837
일반회계전입금	2,164,323	2,034,323	2,034,323	-		△130,000
자본계정	**-**	**1**	**1**	**-**	**-**	**1**
전년도이월금	-	1	1	-	-	1
합 계	**2,746,019**	**2,871,348**	**2,870,389**	**-**	**959**	**124,37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4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의 특징은 예산액에 비해 미곡판매수입, 부산물판매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전년도세계잉여금 등은 증가하였고, 기타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잡수입은 감소했다는 점임.

□ 미곡판매수입은 5,335억 5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31.0% 증가한 6,987억 5,800만원으로, 이는 판매물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수입예산 편성액은 없었으나, 191억 1,100만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양특회계 사업비의 이자수익을 세입 조치하였기 때문임.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세입예산액은 66억 900만원이었으나, 31억 1,200만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정부양곡매입비 및 정부양곡관리비 반납액 등 과년도 사업비를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였기 때문임.

□ 기타잡수입은 세입예산액이 9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부양곡 가공청산금 등 42억 7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일반회계전입금의 경우 2조 1,643억 2,3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6.0% 감소한 2조 343억 2,300만원만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본예산은 2조 7,460억 1,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조 7,460억 7,300만원임.

□ 정부양곡매입비 1조 7,124억 2,100만원, 수입양곡대 5,129억 9,700만원, 정부양곡관리비 5,048억 9,500만원, 쌀소비기반 구축 147억 6,000만원 등 총 2조 7,450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음.

【 2024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손익계정	2,746,019	-	-	207,251 △207,251	-	2,746,073	2,745,073	1,000	-
정부양곡 매입비	1,712,421	-	-	100,000 △100,000	-	1,712,421	1,712,421	-	-
수입양곡대	616,262	-	-	△103,265	-	512,997	512,997	-	-
정부양곡 관리비	409,078	55	-	113,456 △16,693	5,886 △5,886	505,895	504,895	1,000	-
쌀소비기반구축	8,258	-	-	6,502	-	14,760	14,760	-	-
자본계정	-	-	-	-	-	-	-	-	-
합 계	2,746,019	55	-	219,958 △219,958	5,886 △5,886	2,746,073	2,745,073	1,0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정부양곡매입비: 쌀값변동대응 예산의 적절한 규모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최소한의 반영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중 쌀값변동대응 예산의 적절한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반영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은 공공비축미를 매입·비축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지출한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1조 7,124억 2,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32)]

【 2024회계연도 정부양곡매입비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부양곡매입비	1,712,421	-	-	1,712,421	1,712,421	-	-	1,732,193
-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 매입비	1,226,598	-	△100,000	1,126,598	1,126,598	-	-	1,186,982

132) 회계(기금)-세부사업: 양곡관리특별회계-정부양곡매입비(2131-36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비축 및 APTERR 미곡 매입비’ 사업은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하는 한편, 매입물량 중 일부를 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133] 물량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본예산 1조 2,265억 9,800만원 중 1,000억원이 전용된 예산현액 1조 1,265억 9,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쌀값 변동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로 편성 시점의 최근 5년간 평균 수확기 미곡가격을 기준으로 편성단가를 산정하여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공공비축미곡 편성단가 산정 기준 】

구분	편성단가 산정 기준
2019년 예산	2018년 1월 ~ 6월 산지 미곡가격의 산술평균
2020년 예산	최근 5년간 수확기 산지 미곡가격의 산술평균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최근 5년간 수확기 산지 미곡가격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 심의과정에서 단가가 일부 조정됨
2024년 예산	최근 5년간 수확기 산지 미곡가격의 산술평균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33) ASEAN+3(ASEAN 국가 및 한국・중국・일본) 비상 쌀 비축제

2024년의 경우, 계획된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45만톤에 대하여, 편성단가가 최근 5년간 평균 수확기 산지가격인 80kg당 20만 284원(1톤당 250만 3,55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1조 1,265억 9,800만원의 소요액이 발생함.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매입 시 단가가 편성단가보다 높을 경우 예산 부족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적 목적의 예산인 “쌀값변동대응 예산” 1,000억원을 더한 1조 2,265억 9,800만원을 동 내역사업의 2024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이와 같은 쌀값변동대응 예산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1,000억원, 2025년에는 500억원의 규모로 동 내역사업에 반영되어 왔음.

□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최근 3년간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에 760억 3,900만원, 2023년에 459억 7,000만원, 2024년에 1,000억원을 각각 전용하였는데, 이는 모두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쌀값변동대응 예산을 재원으로 한 것임.

2024년의 경우는 수확기 시장가격(매입단가)이 편성단가인 80kg당 20만 284원보다 낮은 18만 4,700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쌀값변동대응 예산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1,000억원 전액이 다른 사업용도로 전용된 것임.

【 최근 3년간 동 내역사업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총 전용액	전용 세부내역		
		세부금액	세부사업	전용사유
2022년	△76,039	△7,311	정부양곡 관리비	TRQ 수입쌀 관세액 예산 부족
		△25,232		조작비, 기타운영비 예산 부족
		△43,496	동 사업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정산 예산 부족 및 원금 조기상환
2023년	△45,970	△45,970	동 사업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정산 예산 부족
2024년	△100,000	△100,000	동 사업	시장격리곡 원금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 절감 추진

※ 자료: 농식품부, “2022년, 2023년, 2024년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3, 2024, 2025.

□ 이처럼 쌀값변동대응 예산은 예기치 못한 매입단가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을 통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예비적 목적의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물론, 미곡의 예상치 못한 가격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적 예산이 가외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처럼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한 우발 수요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그 실질적 용도가 유동적인 1,000억원(2024년) 또는 500억원(2025년) 규모의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민주통제의 필요성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최근 3년간 당해 예산의 전용액 규모인 760억 3,900만원, 459억 7,000만원 및 1,000억원은 각각 해당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액[134]의 3.7%, 2.1%, 4.3% 수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기치 못한 미곡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용도의 예산인 쌀값변동대응 예산의 적절한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편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134) 2021년 2조 573억 3,300만원, 2022년(추경) 2조 1,878억 2,000만원, 2023년 2조 3,248억 4,800만원

2) 정부양곡관리비: 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사업계획 마련을 통한 이월 방지 노력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정보화사업에서 ISP·ISMP 수립 등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에서 나타난 집행 지연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은 공공비축미곡, APTERR 매입곡, TRQ 쌀 등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가공 및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4,090억 7,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 및 세목조정·전용액 967억 6,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5,058억 9,500만원 중 5,048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을 이월하였음.[135)]

【 2024회계연도 정부양곡관리비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부양곡관리비	409,078	55	96,763	505,895	504,895	1,000	-	456,100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1,000	-	-	1,000	-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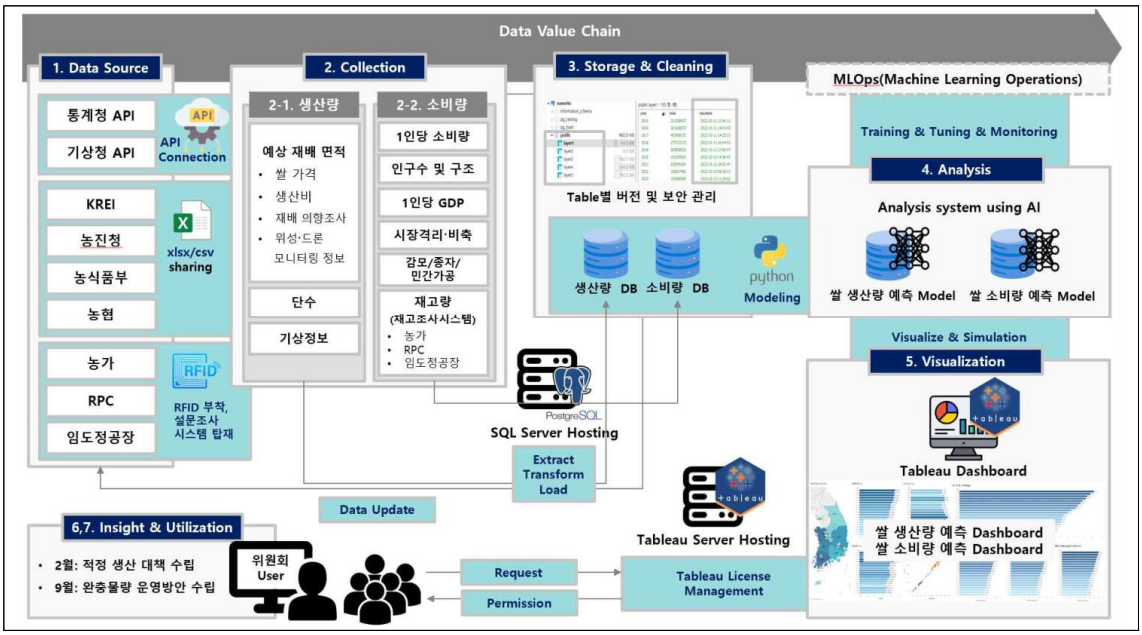
135) 회계(기금)-세부사업: 양곡관리특별회계-정부양곡관리비(2131-366)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선제적 쌀 수급정책 추진을 위한 전체 쌀 생산 관측 및 수급예측시스템 개발비용을 집행하는 정보화사업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하여 진행한 연구용역(2023. 8. ~ 2024. 2.)에 기반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 쌀 수급예측시스템 설계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기획재정부와의 사업추진방식 협의(2024년 5월~10월)가 상당기간 지체됨에 따라 실제 집행에 이르지 못하고 예산액 10억원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음.

【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내역사업 세부 진행상황 】

일시(기간)		진행사항	수행기관
2023년 8월 ~2024년 2월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 KREI
2024년	5월~10월	사업추진방식 협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11월	보안성 검토	국가정보원
	11월~12월	제안요청서(안) 작성	농식품부
	12월	발주 의뢰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농식품부, 조달청
2025년	1월~2월	구매업무 협의	농식품부, 조달청
	3월	입찰공고 및 입찰공고 취소	농식품부, 조달청
	4월	계약체결 위임, 발주 및 사전규격 공고	농식품부, 조달청
	5월	입찰공고 및 제안서 기술평가	농식품부
	6월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계약기간: '25. 6. 19. ~ 12. 15.)	농식품부, 연구수행기관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가공

이처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예산집행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방식을 갑작스럽게 KREI에 위탁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임.

그 결과, 당초 의도하였던 사업추진방식 변경은 성사되지 못한 채 협의과정에서 시일만 지체하게 되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종료된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안성 검토 및 발주 의뢰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시일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하게 되었다는 것임.

□ 이러한 사업집행과정의 혼선과 이로 인한 예산집행의 차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히 일반적으로 정보화사업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또는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ISMP)(이하 “ISP·ISMP”라 한다)을 수립하지 않고 당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정보화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수립절차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ISP·ISMP를 수립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의 계획단계를 내실화하고, 정보화 분야의 투자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동 내역사업을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에 가깝고,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내부 활용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아, ISP·ISMP 수립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간 사전협의를 거쳐 ISP·ISMP 수립을 제외하고, 2024년 예산안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억원을 편성하였던 것임.

□ 만약 동 내역사업에 대하여 ISP·ISMP를 수립하였다면, 사업비를 편성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에 대한 검토와 KREI 등 유관기관과의 역할·수행업무 등 협조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고,

또한, 사업비 요구에 앞서 ISP·ISMP의 최종산출물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사업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운영 주체에 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역시 사업비 편성 이전에 이루어져 이러한 예산집행의 차질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정보화사업에서 ISP·ISMP 수립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동 내역사업에서 나타난 집행 지연 및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4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사업운용 수익으로 총 2조 4,195억 7,016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관유물매각대 감소 등으로 인해 2,163억 881만원이 감소한 2조 2,032억 6,100만원이었음.

□ 징수결정액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741억 5,711만원, 관유물매각대 수입으로 5,827억 2,116만원,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수입으로 1조 4,789억 36만원 등 총 2조 1,998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업체의 납부불능 등으로 인해 경상이전수입에서 미수납액 33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1,249**	**6,953**	**6,953**	-	-	**△4,296**
토지대여료	45	19	19	-	-	△26
기타민간이자수입	1,335	2,462	2,462	-	-	1,127
기타재산이자수입	9,869	4,472	4,472	-	-	△5,397
경상이전수입	**125,725**	**77,526**	**74,157**	-	**3,369**	**△51,568**
몰수금및추징금	32	19	19	-	-	△13
위약금	2,575	4,344	4,344	-	-	1,769
가산금	-	9	-	-	9	-
법정부담금	57,519	56,643	56,643	-	-	△876
기타경상이전수입	65,599	16,511	13,151	-	3,360	△52,44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104**	**104**	**-**	**-**	**순증**
기타잡수입	-	104	104	-	-	순증
관유물매각대	**773,459**	**582,721**	**582,721**	**-**	**-**	**△190,738**
재고자산매각대	773,459	582,721	582,721	-	-	△190,738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63,969**	**1,478,900**	**1,478,900**	**-**	**-**	**114,93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363,969	1,478,900	1,478,900	-	-	114,9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20,368**	**32,257**	**32,257**	**-**	**-**	**△88,11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20,368	32,257	32,257	-	-	△88,111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4,800**	**24,800**	**24,800**	**-**	**-**	**-**
일반회계전입금	11,500	11,500	11,500	-	-	-
기금예수금	13,300	13,300	13,300	-	-	-
합 계	**2,419,570**	**2,203,261**	**2,199,892**	**-**	**3,369**	**△219,67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4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결산의 특징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의 수납액 실적이 예산액 대비 감소,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수납액이 증가하였다는 점임.

□ 재산수입의 경우 계획 수립 당시에는 11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61.8%인 69억 5,292만원만 수납되었는데, 이는 여유자금 운용 규모 감소에 따른 것임.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1,257억 2,5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59.0%인 741억 5,71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비 실 집행률 증가로 정산 반납액 감소에 따른 것임.

□ 관유물매각대의 경우 7,734억 5,9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75.3%인 5,827억 2,11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콩 등 주요품목 수요 감소에 따른 것임.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의 경우 1조 3,639억 6,9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108.4%인 1조 4,789억 3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조기상환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2) 지출결산

□ 2024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계획은 2조 3,947억 7,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2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지출계획현액은 2조 4,248억 5,500만원임.

□ 계획현액 2조 4,248억 5,516만원 중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사업 1조 4,294억 6,421만원, 식품외식산업육성 사업 5,960억 5,600만원, 종자관리 681억 6,633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575억 4,997만원, 예수이자상환 159억 3,016만원, 여유자금운용으로 327억 2,532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조 1,998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음.

□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사업 165억 6,775만원, 종자관리 5억 7,767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4,553만원, 식품외식산업육성 43억 8,900백만원 등 총 215억 7,99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지급 사유 미발생 등임

□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사업 2억 5,204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3억 9,550만원, 식품외식산업육성 57억 1,900백만원 등 총 63억 6,654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임.

【 2024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	전용	이용 (이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1,412,193	-	24,800	-	9,291	1,446,284	1,429,464	252	16,568
종자관리	68,744	-	-	-	-	68,744	68,166	-	578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57,991	-	-	-	-	57,991	57,550	396	46
식품외식산업육성	602,879	5,285	-	-	△2,000	606,164	596,056	5,719	4,389
예수이자 상환	15,930	-	-	-	-	15,930	15,930	-	-
여유자금 운용	237,033	-	-	-	△7,291	229,742	32,725	-	-
합 계	**2,394,770**	**5,285**	**24,800**	**-**	**9,291 △9,291**	**2,424,855**	**2,199,892**	**6,367**	**21,58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비축지원: 콩 수매·비축 계획액의 수급관리정책에 맞는 현실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수매대금 지급지연 및 추가적인 금융비용 지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콩 수매·비축 계획액을 수급관리정책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비축지원 사업은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비축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 8,119억 3,300만원 중 8,108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136]

【 2024회계연도 비축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비축지원	724,875	811,933	-	811,933	810,816	252	865	812,532	914,632

136)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비축지원(3031-323)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13조[137]에 따른 비축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위탁하여, 「농안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한다)으로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을 수매비축(국산)하거나, 수입비축(수입산)하는 사업임.

세목별로는 aT의 비축사업관리비를 위한 민간경상보조(320-01목), 비축기지 건축 및 개수·보수 등을 위한 공사비(420-03목) 등도 편성되어 있으나, 계획액 대부분이 비축용 농산물을 수매 또는 수입하기 위한 저장품매입비(430-02목)에 해당함.

---

1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4회계연도 비축지원 사업 집행 및 실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724,875	811,933	810,816	810,816	-	810,816	794,101	-	16,71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594	3,594	3,594	3,594	-	3,594	3,591	-	3
민간경상보조 (320-01)	25,791	25,791	25,791	25,791	-	25,791	25,755	-	36
공사비 (420-03)	6,869	6,869	5,752	5,752	-	5,752	5,752	-	-
자산취득비 (430-01)	91	91	91	91	-	91	91	-	-
저장품매입비 (430-02)	688,530	775,588	775,588	775,588	-	775,588	758,911	-	16,677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통한 국산 콩(두류) 수매·비축을 해당연도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수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 한 회계연도에 두 개 연산의 콩을 수매하고 있음. 2024년에는 2023년산 콩(1~3월)과 2024년산 콩(12월)을 수매한 바 있음.

콩의 경우 「농안법」에 따른 비축사업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양곡관리법」에 따른 공공비축 대상 양곡[138]이기도 한데,

138) **「양곡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곡류 등)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개 연도의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통하여 ① 2023년산 콩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만톤을 매입하고, ② 2024년산 콩 또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만톤을 매입하는 방안을 고시하였음.[139)]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콩 수매·비축 예산으로 수탁사업자인 aT에게 1,409억 7,30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5,100만원을 제외한 1,409억 2,200만원이 실집행되었으나,

실제 2024년 수매내역을 살펴보면 시행계획의 콩 수매 계획물량인 6만톤의 62.3%에 해당하는 3만 7,409톤(2023년산 1만 8,665톤, 2024년산 1만 8,744톤)만을 수매하는 데 그쳤음.

【 2024회계연도 콩 수매·비축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688,530	775,588	775,588	775,588	-	775,588	758,911	-	16,677
농산물수매	230,110	248,303	248,303	248,303	-	248,303	247,865	-	438
콩	128,343	140,973	140,973	140,973	-	140,973	140,922	-	51
농산물수입	451,420	416,653	416,653	416,653	-	416,653	400,483	-	16,171
긴급가격안정	7,000	110,632	110,632	110,632	-	110,632	110,563	-	68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39)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4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고시)

그러나, 이처럼 시행계획보다 적은 물량을 수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매가 이루어진 2023년산 콩의 일부 물량(31.9%)에 대하여는 예산부족으로 2024년 연내에 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 지연이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콩 수매비축 세부 지급내역 】

(단위 : 백만원, 톤, %)

구분	전체		연내 지급		연내 미지급	
	수매금액	수매량	수매금액	수매량	수매금액	수매량
계	176,790 (100.0)	37,409 (100.0)	65,411 (37.0)	13,860 (37.0)	111,379 (63.0)	23,549 (63.0)
'23년산	88,047 (100.0)	18,665 (100.0)	59,898 (68.0)	12,702 (68.1)	28,149 (32.0)	5,963 (31.9)
'24년산	88,743 (100.0)	18,744 (100.0)	5,513 (6.2)	1,158 (6.2)	83,230 (93.8)	17,586 (93.8)

※ 주: 수매량은 2024년 1월~12월 입고 기준, 수매금액은 물품대 기준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매·비축량 또한 증가하였으나,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하기 이전의 콩 수매실적을 기초자료로 심의한 결과, 2만 5,000톤을 기준으로 계획액을 결정하게 되어 자금부족이 나타났다고 설명함.

□ 그러나, 이러한 예산부족은 정부의 논콩 생산 장려정책 등 수급 관리정책과 예산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시 정책상황의 제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2023년 상반기 시점에서 종전의 논활용직불제를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하여 논콩 등의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련된 정책변화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적절히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2023년 9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콩 2만 5천톤의 수매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동년 10월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고시하면서 수매·비축물량을 6만톤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한 예산조정을 시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콩 수매 물량 중 농협 수매물량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우선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차입을 통하여 수매대금을

지급한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2025년 5월까지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연내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농협경제지주의 자체 자금차입분에 대한 금융비용 22억 7,400만원을 수매대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수매대금 지급지연 및 추가적인 금융비용 지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콩 수매·비축 계획액을 수급관리정책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자조금지원: 자조금단체의 자체재원 이월금 과다 누적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각 자조금단체의 자체재원 이월금 규모가 과다하게 누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조금지원 사업은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액 131억 1,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음[140].

【 2024회계연도 자조금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자조금지원	13,110	13,110	-	13,110	13,110	-	-	13,110

140)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조금지원(3031-325)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수산자조금법」 제5조[141]에 근거하고 있음.

□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생산·유통 자율조절 및 자율적 수급안정 등을 수행하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에게 자조금 납부의무가 부여되는 의무자조금단체와 그렇지 않은 임의자조금단체로 구분되며, 2025년 8월 현재 농산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20개의 의무자조금단체와 10개의 임의자조금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임.

---

14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산물 의무자조금단체 현황(2025. 8. 기준) 】

(단위: 명, 백만원)

농산물	자조금단체	회원 수	거출액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14,883	583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48,668	2,149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31	640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988	280
배	(사)한국배연합회	23,586	870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430	1,036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54,617	1,667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1,224	1,484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822	190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6,856	402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1,980	785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34,684	1,829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40,903	825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6,811	598
떫은감	(사)한국떫은감협회	45,389	322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43,169	708
차	(사)한국차자조회	1,860	100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회	484	392
블루베리	(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9,874	160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27,680	60

※ 주: 블루베리와 밤은 2024년까지 임의자조금단체였으나, 2025년에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함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산물 임의자조금단체 현황(2025. 8. 기준) 】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치년도	재정지원여부
가지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2005년	재정미지원
오이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2008년	
풋고추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2012년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2009년	
무배추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2010년	
고추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2010년	
딸기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2006년	
밀	(사)국산밀산업협회	2010년	
버섯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2024년	재정지원
논콩	(사)한국논콩자조회	2024년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중에서 의무자조금단체와 설립된 지 3년 이내의 임의자조금단체를 동 사업을 통한 지원 대상으로 하며, 50%의 보조율을 기초로 매년 이루어지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운영실적 평가등급별 2024년 보조금 매칭 비율 】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개소수	1~2	3~4	4~5	5~6	3~4
차등 적용 비율	100%	85%	70%	60%	50%
* 단, 평가등급 및 자조금 조성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국고 지원 한도는 20억 이하로 제한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런데, 보조 대상 자조금단체의 2024년 조성액·집행액·이월액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자조금단체에서는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이월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조 대상 자조금단체별 2024년 조성액·집행액·이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품목	조성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 조성 등	국고 보조금	소계		
의무	인삼	47	636	630	1,313	1,256	57
	친환경	331	2,265	1,537	4,133	3,918	215
	백합	1	640	563	1,204	1,203	-
	키위	21	227	180	428	401	27
	배	186	941	746	1,873	1,736	137
	파프리카	11	1,293	1,021	2,325	2,324	1
	사과	600	1,478	1,533	3,611	3,062	406
	감귤	838	1,672	1,261	3,778	2,623	1,154
	콩나물	-	172	104	276	276	-
	참외	-	402	342	744	744	-
	절화	-	785	692	1,477	1,477	-
	포도	1,033	819	505	2,357	1,610	747
	마늘	-	995	995	1,990	1,990	-
	양파	1	1,186	570	1,757	1,710	47
	떫은감	5	307	210	522	505	17
	복숭아	43	722	435	1,200	1,080	120
	자생란	1	390	287	678	678	-
	차	14	62	80	156	115	20
임의	블루베리	-	160	160	320	320	-
	밤	-	60	60	120	120	-
	버섯	-	15	15	30	30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특히, 2024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감귤, 포도, 사과 순으로, 각각 11억 5,400만원, 7억 4,700만원 및 4억 600만원 규모에 해당함.

감귤 자조금의 경우, 2023년 이월금액은 8억 3,8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 이월금액은 이보다 3억 1,600만원 증가한 11억 5,400만원으로 나타나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에 동 사업을 통하여 교부한 보조금이 12억 6,100만원임을 고려하면, 보조금의 91.5%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이 2025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보임.

한편, 포도 자조금의 경우에는 2024년 이월금액이 7억 4,700만원으로서 2023년보다 2억 8,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월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 보조금인 5억 500만원의 147.8% 수준에 상응하는 규모의 금액이 2025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에서 자조금단체를 보조하는 이유는, 자조금단체가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등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재원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자조금단체의 근거 법률인 「농수산자조금법」에서는 거출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통하여 자조금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자조금단체의 규모 등에 따라서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거출금 수입만으로는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을 통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육성하려는 것임.

그런데, 일부 자조금단체의 경우 자체재원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이 해당 단체의 사업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가 아닌 당해 단체의 재무자원의 축적을 보조하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 보조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자조금단체의 자체재원 이월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자체재원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농수산자조금법」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산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는 점[142]을 고려하면, 이월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

14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단체에게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만 관리할 뿐, 이와 같은 자체재원 이월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아 법률상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각 자조금단체의 자체재원 이월금 규모가 과다하게 누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정책지원이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되는 구조 개선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가공원료매입(융자)' 사업의 정책지원이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해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143]의 내역사업인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은 식품제조업체 등에 국산 농산물 매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임.

2024년 계획액은 1,446억 3,300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52억 8,5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1,499억 1,800만원 중 1,398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식품외식 종합자금(융자)	144,633	5,285	-	149,918	139,810	5,719	4,389	163,368
-식품가공 원료매입	96,833	-	-	96,833	96,833	-	-	105,568
-농식품시설 현대화	9,000	4,089	-	13,089	2,981	5,719	4,389	4,000
-외식업체육성	15,000			15,000	15,000	-	-	30,00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	23,800	1,196	-	24,996	24,996	-	-	23,800

143)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851-345)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식품가공원료매입(융자)” 사업은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보 및 식품제조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식품기업에 국산농산물 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자금 사업으로서 2024년 예산액은 968억 3,300만원으로서 전액 집행되었음.

□ 이 사업은 시행 주체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하 “aT”라 한다)가 농식품 분야 식품제조업체(약 6.9만 개소) 및 전통주류제조면허 소지업체(1,812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연 2.5~3% 금리로 융자 지원(1년, 전통주류는 2년[144])하며, 지원업체는 융자금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지원근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145]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격	① 농식품 분야 식품제조업체, ② 전통주류 제조면허 소지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자금용도	○ 국산 원료 농산물 및 식재료 구입
융자금리	○ (고점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농협은행고시 농업정책자금 대출 변동금리(주기 6개월) *국산 농산물 구매액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 상위 15%(-1%), 16~30%(-0.5%)
융자기간	○ 1년 (전통주류는 술 발효기간이라는 특성 고려 2년)
사업의무	○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이내(재정지원 80%, 자부담 20%)

※자료: 농식품부 제출

144) 전통주류는 제조과정에 발효기간이 필요하여, 원료매입 이후 매출 발생까지 추가 시간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4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지원이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되는 문제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연도별 융자금의 수혜업체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기존 수혜업체 비율이 81.4%였으며, 2024년에는 기존 수혜 업체에 대한 지원이 93.4%까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존 수혜업체에 대하여 정책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신규·기존 지원업체 현황 】

사업 연도	배정업체 합계	신규 업체		기존 지원업체	
		배정업체 수	비율	배정업체 수	비율
2021	312	58	18.6%	254	81.4%
2022	342	65	19.0%	277	81.0%
2023	365	72	19.7%	293	80.3%
2024	319	21	6.6%	298	93.4%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출

□ 이는 사업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융자사업의 존재를 아는 소수의 사업체가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대다수 기업은 사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식품가공업체 수는 2023년 기준 약 7만 1천개소[146]로 추산되나 동 사업의 매년 신청 업체 수는 약 400개소 내외로 변화가 거의 없고, 경쟁률도 1.2 대 1로 저조한 편임.

146) 식료품제조업체(수산업·사료업 제외) : 69,498개(2022년 기준, 통계청),
전통주 제조면허 1,812개(202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경쟁현황 】

연도	신청 업체 수	배정업체 수	경쟁률
2021	400	312	1.28
2022	401	342	1.23
2023	432	365	1.18
2024	393	319	1.23
2025	401	339	1.18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처럼 융자지원의 기회가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됨으로써 신규 기업의 국산 농산물 구매 유도 효과가 미약해지고, 정책 자금의 분배 형평성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aT는 사업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업종별·지역별 대상 업체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여 신규 참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 이행 관리체계 강화 필요

□ 동 사업은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융자금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 aT는 대출 다음연도 초에 의무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의무 위반시 대출금 회수, 위약금(3% 가산금리) 징수 및 2년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20개(6.7%)의 업체가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의무 이행 현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임.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 위반 현황 】

연도	업체 수	구매의무 위반 업체	미달률
2019	211	16	7.6%
2020	267	17	6.4%
2021	312	21	6.7%
2022	342	27	7.9%
2023	365	17	4.7%
평균	**299**	**20**	**6.7%**

* 2024년 사업의 구매의무 준수여부는 대출기간이 완료된 이후인 2025년 말 정산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는 현행 aT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후적인 점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147], 구체적인 구매 일정이나 계획이 사전에 수립·관리되지 못하고, 위반 여부를 발견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야 최종적으로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임.

□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동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국산 농산물 구매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업체별 월별 또는 분기별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 계획 대비 실제 실적을 점검하는 단계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147)「2025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세부시행계획」(aT, 2025.1.)

9. 농지관리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농지관리기금은 당초 재산수입 1,539억 5,600만원, 경상이전수입 1조 597억 5,400만원, 관유물 매각대 234억 9,9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603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178억 4,100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조 8,909억 2,000만원으로 총 4조 63억 3,000만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법정부담금 부과 증가에 따른 경상이전수입 증가, 재산수입 증가, 관유물 매각대 증가 등으로 583억 2,800만원이 증가한 4조 646억 5,8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중 재산수입 1,161억 3,600만원, 경상이전수입 7,482억 1,300만원, 관유물매각대 214억 3,9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수입으로 3,010억 3,000만원, 전년도이월금 2,316억 9,200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조 4,496억 5,300만원으로 총 2조 8,681억 6,300만원이 수납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 및 재고자산매각대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납금 등으로 인해 1조 1,964억 9,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2024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53,956**	**223,758**	**116,136**	**0**	**107,622**	**△37,820**
관유물대여료	12,256	15,334	15,334	-	-	3,078
기타이자수입	141,700	208,424	100,802	-	107,622	△40,898
경상이전수입	**1,059,754**	**1,799,988**	**748,213**	**0**	**1,051,775**	**△311,541**
가산금	2,024	2,018	2,018	-	-	△6
법정부담금	1,057,730	1,796,445	745,271	-	1,051,174	△312,459
기타경상이전수입	-	1,525	924	-	601	924
관유물매각대	**23,499**	**58,537**	**21,439**	**-**	**37,098**	**△2,060**
재고자산매각대	23,499	58,537	21,439	-	37,098	△2,06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60,360**	**301,030**	**301,030**	**-**	**-**	**△159,33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60,360	301,030	301,030	-	-	△159,330
전년도이월금	**417,841**	**231,692**	**231,692**	**-**	**-**	**△186,149**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890,920**	**1,449,653**	**1,449,653**	**-**	**-**	**△441,267**
기금예탁원금수입	1,822,634	1,422,634	1,422,634	-	-	△400,000
기금예탁이자수입	68,286	27,019	27,019	-	-	△41,267
합 계	**4,006,330**	**4,064,658**	**2,868,163**	**0**	**1,196,495**	**△1,138,167**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2024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수입 결산의 특징은 예산액에 비해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관유물매각대, 융자원금회수, 전년도이월금 및 정부내부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점임.

□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재산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539억 5,600만원이었으나, 실제수입은 예산액보다 24.6% 감소한 1,161억 3,600만원으로, 정책금리 선호에 따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등 융자사업의 융자금 조기회수가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원금과 함께 회수되는 이자가 감소한 데 기인함.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조 597억 5,4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예산액보다 29.4% 감소한 7,482억 1,3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농지전용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이 감소한 데에 기인함.

관유물매각대의 경우 예산액은 234억 9,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예산액보다 8.8%가 감소한 214억 3,900만원으로, 이는 납부자의 매각 대금 연체로 인해 수납이 감소한 데에 기인함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의 경우 민간융자원금 회수로서 4,603억 6,0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예산액보다 34.6% 감소한 3,010억 3,000만원임. 이는 정책금리 선호로 경영회생사업 조기환매 감소 등 사업 유지건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융자금 회수 감소에 기인함.

또한,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조 8,909억 2,000

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입은 23.3% 감소한 1조 4,496억 5,300만원이었음.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축소에 따른 원금 수입 및 이자 감소에 기인함.

2) 지출결산

□ 2024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은 4조 63억 3,0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총 지출계획은 변경 없었으나 사업별 지출 계획이 변경됨.

□ 계획현액 4조 63억 3,000만원 중 농가경영안정 2,337억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1조 2,739억 1,6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753억 5,200만원,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2,776억 5,200만원, 국제협력협상 97억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690억 400만원,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717억 9,700만원, 기금간거래(예탁금) 4,000억원, 여유자금운용 2,570억 4,200만원으로 총 2조 8,68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3,200만원, 새만금지구개발 5억원, 새만금글로벌푸드허브조성 700만원, 기금운영비 100만원, 공자기금 예탁 6,000억원 등 총 6,005억 4,000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계획	계획 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농가경영안정	233,700	-	-	-	-	233,700	233,700	-	-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1,280,319	-	-	△6,371	-	1,273,948	1,273,916	-	32
농업생산기반정비	175,359	500	-	-	-	175,859	175,352	-	507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257,400	-	-	20,252	-	277,652	277,652	-	-
국제협력협상	9,700	-	-	-	-	9,700	9,700	-	-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67,242	-	-	1,763	-	69,005	69,004	-	1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71,797	-	-	-	-	171,797	171,797	-	-
기금간거래(예탁금)	1,000,000	-	-		-	1,000,000	400,000	-	600,000
여유자금운용	810,813	-	-	△15,644	-	795,169	257,042	-	-
합 계	**4,006,330**	**500**	**-**	**22,015 △22,015**	**-**	**4,006,830**	**2,868,163**	**-**	**600,54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총괄: 농지관리기금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검토 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결산 실적과 향후 융자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입을 추계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 구조의 불안정성이 현실화되기 전에 사업운영 방식 개선 등 지출 조정 방안이나 수입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며, 농지관리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과 법령상 용도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출 전 목적의 정합성을 엄격히 검토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지관리기금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1조[148]에 따라 영농규모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설치·운용한 기금임.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실적을 보면, 수입부문은 계획액 4조 63억원보다 1조 1,382억원 감소한 2조 8,682억원을 수납하고, 지출부문(여유자금운용 제외)은 계획현액 3조 1,955억원 중 2조 6,111억원을 지출하였음.

148)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024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결산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대비
		실적	계획(A)	실적(B)	증감(B-A)
조달	○자체수입	1,329,178	1,697,569	1,186,818	△510,751
	▪ 토지대여료	9,131	11,125	13,178	2,053
	▪ 기타관유물대여료	1,327	1,131	2,156	1,025
	▪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15	39	23	△16
	▪ 기타민간이자수입	41,163	46,208	42,722	△3,486
	▪ 기타재산이자수입	65,222	95,453	58,057	△37,396
	▪ 가산금	1,844	2,024	2,018	△6
	▪ 법정부담금	804,047	1,057,730	745,271	△312,459
	▪ 기타경상이전수입	1,552	-	924	924
	▪ 재고자산매각대	67,403	23,499	21,439	△2,060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37,474	460,360	301,030	△159,330
	○ 정부내부수입	1,434,286	1,890,920	1,449,653	△441,267
	○ 여유자금회수	389,825	417,841	231,692	△186,149
합 계		3,153,289	4,006,330	2,868,163	△1,138,167
지출	○ 사업비	1,829,800	2,023,720	2,039,324	15,604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71,797	171,797	171,797	-
	○ 기금간거래(예탁금)	920,000	1,000,000	400,000	△600,000
	○ 여유자금운용	231,692	810,813	257,042	△553,771

나) 검토의견

(1) 농지관리기금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024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의 결산상 특이사항은 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크게 감소(△1조 1,382억원)함에 따라 지출 부문에서 실제 공자기금 예탁 및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계획 대비 큰 폭으로 감소(△1조 1,538억원)한 것임.

이는 자체 주요 수입원인 법정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과 융자원금 회수가 계획 대비 과소수납(각각 △3,125억원, △1,593억원)되었기 때문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이 계획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건설경기 침체 및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농지전용 허가자의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체납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융자원금회수 과소수납의 경우 농가가 부채 등을 상환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매각한 농지를 다시 매입(환매)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사업'의 조기 환매율 및 '농지연금(융자)사업'의 중도해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현재의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정책금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경영회생지원사업 조기 환매율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조기환매율(%)	9.7	5.2	2.9	1.0	0.6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최근 5년 농지연금 중도해지율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도해지율(%)	7.3	8.4	5.9	3.2	2.8

* 사망 및 지급만료에 의한 해지 건수 제외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와 같이 '24년에는 자체수입이 감소하였음은 물론 정부 내부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규모 역시 감소하여 공자기금 예탁 및 여유자금 운용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최근 5년 농지관리기금 수입 실적을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는 수입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였으나, '23년 수입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한 이후 '24년에는 계획과 실적 간 큰 차이(△1조 1,382억원)가 발생하게 된 것임.

【 최근 5년 농지관리기금 수입 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합계	3,267,165	3,184,523	2,850,693	2,796,174	3,279,946	3,466,941	3,721,984	3,153,289	4,006,330	2,868,163	2,328,915
자체수입	1,562,193	1,605,167	1,603,857	2,046,324	1,611,796	1,690,304	1,963,623	1,329,179	1,697,569	1,186,818	1,392,423
정부내부수입	406,816	397,542	348,680	334,390	1,258,881	1,245,932	1,441,589	1,434,286	1,890,920	1,449,653	711,092
여유자금회수	1,298,156	1,181,814	898,156	415,460	409,269	530,705	316,772	389,824	417,841	231,692	225,4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한편, '25년 수입 계획을 보면 정부내부 수입 및 여유자금 회수액, 법정부담금의 경우 결산 실적에 맞추어 현실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민간융자원금회수는 여전히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25년 농지관리기금 수입 계획수입 실적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계획(A)	실적(B)	
○ 자체수입	1,329,178	1,697,569	1,186,818	1,392,423
▪ 법정부담금	804,047	1,057,730	745,271	748,347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37,474	460,360	301,030	460,360
○ 정부내부수입	1,434,286	1,890,920	1,449,653	711,092
○ 여유자금회수	389,825	417,841	231,692	225,4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런데 현재의 고금리 기조에서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금액의 증가 요인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수입 예산은 여전히 과다 추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금 대출금리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금 대출금리		0~2%	0~2%	0~2%	0~2%	0~2%
한국은행 기준금리	최저	0.50	0.75	1.25	3.50	3.00
	최고	0.75	1.00	3.25	3.50	3.2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결산 실적과 향후 융자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입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관리기금 재정구조의 안정성 제고 필요

□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지출 추이를 보면, 일반사업비는 '20년부터 '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20년 1조 5,511억원→'24년 2조 393억원)하여 왔음.

【 최근 5년 농지관리기금 지출 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합계	3,267,165	3,184,523	2,850,693	2,796,174	3,279,946	3,466,941	3,721,984	3,153,289	4,006,330	2,868,163
일반 지출	1,568,701	1,551,056	1,715,472	1,715,469	1,789,790	1,789,789	1,834,358	1,829,800	2,023,720	2,039,324
정부 내부 지출	1,218,007	1,218,007	550,000	550,000	1,287,328	1,287,328	1,491,797	1,091,797	1,171,797	571,797
여유 자금 운용	480,457	415,460	585,221	530,705	202,828	389,824	395,829	231,692	810,813	257,042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또한, '21년에 5,307억원에 달하던 여유자금 규모는 이후 감소 추세에 따라 '24년에 2,570억원까지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음.

이는 농지연금 등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융자원금 회수액의 감소와 함께 최근 농지전용 수요 감소 및 부담금 감면 확대[149]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 자체가 감소하는 등 자체수입 재원이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49) 24년 6월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종전 30%에서 20%로 인하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예상치 못한 수입·지출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자체의 재정 완충 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농지관리기금은 토지 매입 계약 체결 시 일시에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농지은행사업, 장기 약정으로 매월 고정 금액을 확보하여야 하는 농지연금 사업 등의 재원이 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여유자금 확보가 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재정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현실화되기 전에 사업운영 방식 개선 등 지출 조정이나 수입원의 안정적 확보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 지양 필요

□ 또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5년 4월 공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부지와 관련하여 농지관리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즉, 세계잼버리 부지로 선정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는 농업 또는

농지와 무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 농지관리기금의 용도[150]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의 투입을 결정하면서 세계잼버리 부지는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야영에도 적합하지 않은 농지형태로 매립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관리기금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관리기금의 집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농지관리기금이 본래의 목적과 법령상 용도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출 전 목적의 정합성을 엄격히 검토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15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후 략>

2) 농지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사업에서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현행 예산 편성 방식을 시정하고 지급단가 인상 추이와 가입 현황 등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연금재정 추계를 통하여 적정 가입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지급단가를 책정하는 등 동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지연금(융자) 사업[151]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농지 자산 유동화를 통해 고령·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 것임.

2024회계연도에 당초 2,423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반영한 계획현액 2,625억 6,1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4회계연도 농지연금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농지연금	242,309	262,561	-	262,561	262,561	-		246,877

151)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지관리기금-농지연금(융자)(4130-410)

나) 검토의견

(1) 자의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농지연금은 종신형 및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으로는 종신정액형, 수시인출형 등이, 기간형으로는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농지연금의 종류 】

구분	지급방식	주요내용
종신형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
	수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
기간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만료 또는 사망 후 **공사에 농지매도를 약정**하고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이 지급**
	은퇴직불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지급기간 만료 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 * 농지이양은퇴직불금과 임대료, 농지연금 동시 수령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회계연도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2,423억 900만원에서 202억 5,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로 인해 증액된 계획현액 2,625억 6,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24년 예산 편성 시 전전년도인 '22년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소요 금액을 산출하여 예

산액이 소요액에 미달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152].

즉, '24년 예산 편성 시에 은퇴직불형을 제외한 신규가입 월지급금 지급단가 기준을 127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70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이 전전년도의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과소 편성된 예산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정하는 것은 특정 연도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음.

【 농지연금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계획(A)	변경(B)	실집행(C)	차이(A-C)
2020	147,877	177,572	176,722	28,845
2021	180,869	184,815	184,814	3,945
2022	210,568	240,751	240,751	30,183
2023	228,237	263,060	263,058	34,821
2024	242,309	262,561	262,552	20,243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는 농지 가격 상승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급단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년도도 아닌 전전년도 결산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과소 계상하는 예산 편성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152) 당초 계획보다 가입자수가 증대한 것도 사업비 부족 요인 중 하나임.

【 최근 7년 농지가격 추이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거래가(원/㎡)	57,153	55,889	67,284	81,434	77,753	61,612	57,207
표준지 공시지가(원/㎡)	34,050	35,966	37,397	41,441	44,706	41,681	41,925
담보농지 평균가격(원/㎡)	52,627	58,910	63,896	64,661	72,813	77,154	70,322

* 실거래가 및 표준지 공시지가 : 한국부동산원 자료
** 농지연금의 담보농지가격은 공시지가(100%)와 감정평가(90%) 중 선택할 수 있어 실거래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과 차이 발생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최근 일반형 신규가입 지원단가 예결산 현황 】

(단위: 천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예상
820	1,251	920	1,214	1,251	1,273	1,214	1,560	1,273	1,699	1,392	1,63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특히 이처럼 비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153]에서 규정한 변경 요건인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15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현행 예산 편성 방식을 시정하고, 지급단가 인상 추이와 가입 현황 등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재원 확보 필요

□ 한편,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는 앞서 살펴본 지급단가의 상향은 물론 농지연금 가입 연령 제한 완화(65세→60세)[154]로 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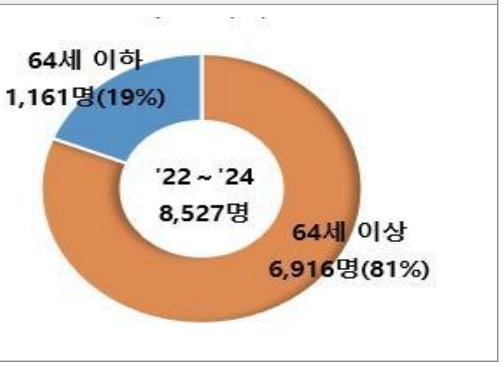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22년 2,530명, '23년 2,882명, '24년 3,115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64세 이하의 신규 가입자도 '22년 556명(22%), '23년 564명(20%), '24년 491명(16%)에 달하고 있음.

【 농지연금 가입 현황 】

<연도별 64세 이하 연금가입>



<64세 이하 연금 가입비율(누적)>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54) 도입('11년) 당시부터 65세 이상으로 유지되던 가입 연령이 '22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완화됨.

농식품부는 '24년까지는 종신정액형 상품 등의 신규 가입의 경우 가입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1,200건에서 1,821건을 초과한 3,021건의 가입이 이루어졌음.

그리고 해당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물론 당초 은퇴직불형 상품 가입 저조에 따른 여유분과 수시인출의 축소 운영을 통한 여유분을 통해 마련하였음.

【 상품별 신규가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계획
	계획	실적	
신규가입	68,495	55,838	29,536
종신정액형 등 일반형	9,929백만원(1,200건 × 1,273천원 × 6.5월)	33,370백만원(3,021건 × 1,699천원 × 6.5월)	18,096백만원(2,000건 × 1,392천원 × 6.5월)
은퇴직불형	22,679백만원(2,130건 × 1,638천원 × 4.8월)	938백만원(94건 × 2,079천원 × 4.8월)	2,552백만원(206건 × 1,906천원 × 6.5월)
수시인출형	35,887백만원(392건 × 91,550천원	21,521백만원(259건 × 83,093천원	4,176백만원(40건 × 104,390천원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시행('25.4.1.)[155]하였는데,

이는 수시인출형 연금에서 사업재원 부족을 이유로 인출 중단과 신

155)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법령	개 정 前	개 정 後
시행령 제19조의9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농지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규 가입 제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상품 수요에 걸맞는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인출금 지급 기한 설정과 예산 범위 내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함에 따른 것임.

그런데 상품 수요에 걸맞는 사업 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와는 다르게 신규가입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존재함.

’25년 예산을 보면, 은퇴직불형과 수시인출형 상품의 경우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고, 일반 신규가입 상품의 경우 2,000건을 가입목표로 설정, 139만원을 지급단가로 책정하여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음.

이는 전전년도인 ’23년의 지급단가(15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 지급단가가 16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예산으로 ’25년에 2,000건의 가입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이와 같이 농지연금 가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할 경우 자칫 과도한 신규 가입 제한과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적인 연금재정 추계를 통하여 적정 가입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지급단가를 책정하는 등 동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3) 맞춤형농지지원(융자):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 존중 및 청년농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가 사업 예산을 편성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사업 추진이나 예산을 확대할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이 국가 차원에서 청년농에게 안정적인 스마트팜 영농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에 있었음을 고려하여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와 청년농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맞춤형 농지지원(융자) 사업은 고령은퇴·이농·직업전환 및 비농업인(상속 등) 소유농지 등 기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임차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영농규모화, 농업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에 편성된 1조 2,060억 6000만원은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156].

【 2024회계연도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맞춤형농지지원 (융자)	1,206,060	-	1,206,060	1,206,060	-	-	1,113,440

15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 (1160-350)

나) 검토의견

□ 맞춤형 농지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정비[157]함으로써 농업법인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24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총 예산 300억원이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집행 단계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2024년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A)	교부액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A/B)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30,000	30,000	59	29,941	-	0.2
- 부지매입	28,000	28,000	-	18,000	-	0.0
- 기반조성	2,000	2,000	59	1,941	-	3.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는 동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부지매입 예산은 전액 이월되었고 기반조성에 필요한 일부 비용만이 집행되었음.

157)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배수로 및 진입로, 전기·통신시설 등 구축

□ ’23년에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신규 추진된 동 사업은 당초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24년에는 ’23년 대비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명을 ‘청년창업형스마트 농업단지’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3년 12월 동 사업을 ‘지출 전 사접협의’ 대상으로 지정한 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158]를 활용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필요성에 따라 농업법인이 해당 펀드의 투자를 받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159]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6월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농업법인이 매입한 후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고 일정 면적의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청년농 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계획 변경 전후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내용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생산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매도 등 창업 지원	농어촌공사가 기반조성한 사업 부지를 농업법인이 민간투자 등을 활용하여 매입한 후 대규모 스마트농업단지 조성(복합개발)

15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가 모펀드를 정부재정(1천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천억원) 등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2024년 1월에 출범하였음.

159)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재부 주관으로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법인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펀드 활용 SPC(특수목적법인)의 농지 매입 불가 및 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어 농업법인이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규모	5,448백만원, 총 6ha (3ha/개소)	48,000백만원, 총 40ha (20ha/개소)
청년농 지원	농어촌공사가 입주 청년농을 모집하여 임대 및 매매계약 체결하여 지원	농업법인이 매입한 부지 중 일정면적의 부지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지자체는 해당 부지에 스마트팜 시설 보조 등의 방법으로 시설을 건축하여 청년농 지원
사업 추진절차	대상지 선정 및 매입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입주 청년농 공모 및 선정 → 대상지 기반조성(소규모) → 공사와 청년농 간 계약 체결 → 스마트온실 건축	대상지 선정 및 매입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입주 농업법인 공모 및 선정 → 대상지 기반조성(대규모) → 공사와 농업법인간 계약 체결 → 농업법인 부지 일부 지자체 기부채납 → 스마트온실 등 건축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에 따라 당초 '24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12월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24년 7월이 되어서야 전북 남원과 전남 고흥 2개소를 대규모 스마트팜 대상지로 선정하였을 뿐, 부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임.

참고로, '25년 8월 현재 기준 대상지로 선정된 두 곳 모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설계 과정에 있으며, 토지 매수도 동시에 진행 중[160]임.

160)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흥지구는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승인 완료('25.4.4.) 및 사업부지 감정평가 완료(4.23) 후 부지매입 준비 중에 있고, 남원지구의 경우 현재 소유주 사업 동의율 76%이나, 세부설계 완료 전 100%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협의 매수 후 수용이 불가피하여 토지보상을 위한 대상 농지 공부 발급 및 기본조사를 실시 중임.

【 당초 사업 계획 및 진행상황 】

기 간	24년 예산 편성 시 계획	소요 예산	현재 진행상황	
			전북 남원	전남 고흥
24.1	사업대상지 선정	-	24.7.18	
24.4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5억원	25.4 기본계획 완료	25.3. 기본계획 완료
'24.5	부지매입	280억원	미정	25.8.(예정)
'24.7~9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1.5억원	시행계획 수립 위한 세부설계 중(25.5~12)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사업의 지원대상을 청년농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의 목적과 대상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사업 규모 확대('23. 6ha → '24. 40ha)로 청년농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대규모 스마트팜 시설 투자가 가능한 농업법인을 추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사업의 핵심은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아니라 청년농에 대한 직접적인 농지제공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국회가 사업 예산을 승인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 사업 추진이나 예산을 확대할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계획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의 취지를 일부 살려 전체 사업 부지 40ha 중 6ha에 대해서는 청년농이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여 농업법인에 부지를 매각하면, 농지를 매입한 농업법인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단지 조성 후 약 6개월~1년 가량 소요 예상)한 후 각각 3h의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161]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농지가 청년농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에 부지를 매각한 이후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와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입장임.

이 경우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이 국가 차원에서 청년농에게 안정적인 스마트팜 영농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에 있음을 고려할 때, 농

161) 농식품부에 따르면 부지 매각 농업법인 선정 단계에서 일정 부지(약 3ha)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함을 명시하여 공모하고, 농업법인과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이행 준수를 강화할 계획임.

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와 청년농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새만금지구개발: 새만금사업지역 내 조속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노력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사업 등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수 미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새만금지구개발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농생명용지 등을 조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액 565억원 중 560억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불용하였음.[162)]

【 2024회계연도 새만금지구개발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새만금지구개발	56,500	56,500	-	56,500	56,000	-	500	51,516
- 내부개발	39,500	39,500	-	39,500	39,000	-	500	3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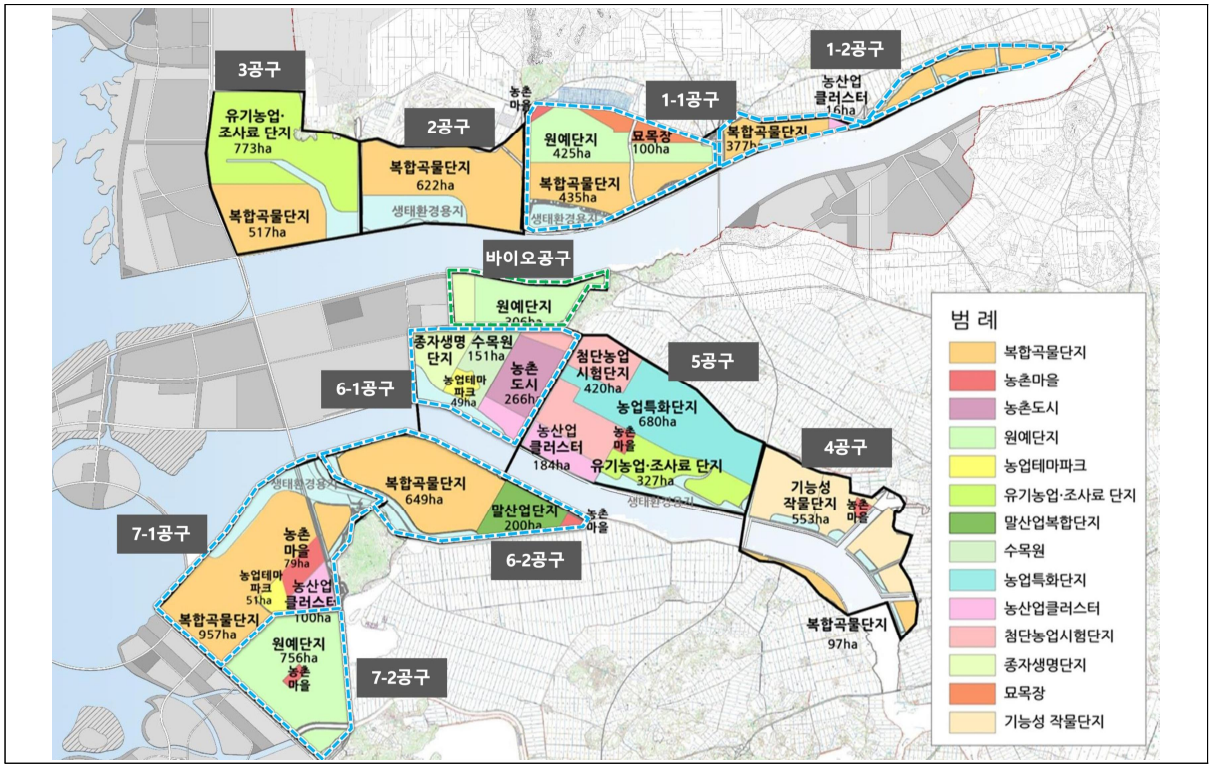
162)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지관리기금-새만금지구개발(4043-333)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내부개발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내측에 방수제를 축조하고 농생명용지를 조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액 395억원 중 390억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액 5억원은 농업용수 공급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예산임.

【 새만금사업지구 중 농생명용지의 공구 구분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처럼 농업용수 공급공사 사업비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공사 발주가 보류되었기 때문임.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서 농생명용지를 조성하고 농업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영농을 실시하는 2단계에 진입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2023년 8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가 보류되었고, 현재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특정지구의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생명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

구분	주요사업
1단계 (~2025년)	○ 기반조성공사 완료 - 내부토지 보호 및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해 방수제 축조 완료(62.1km) - 농생명용지(9,430ha) 조성과 단지내 도로 및 용·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 용수원으로부터 농생명용지까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및 송수관로 등 용수공급시설 설치** - 연차별로 준공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용수공급 전이라도** 농업소득 창출, 제염 촉진 및 지력 증진 등을 위해 **조사료 재배 등 임시영농 추진**

구분	주요사업
2단계 (2026~35년)	○ 상부시설 개발 및 **본격 영농실시** - 농산업클러스터, 첨단시설 원예단지, 농업테마파크, 농촌도시·마을 등 농생명용지 상부시설 개발 - 토지용도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농생명용지 임대·분양 등 본격 영농 추진 - 농촌도시·농촌마을·농업테마파크 등 장기 수요지역은 잠재 수요존으로 설정하여 수요 발생 및 개발 전까지 임시영농 등 다양한 농업적 활용

※ 자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2021.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새만금사업지구의 농업용수 공급공사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45억 4,300만원, 112억 8,10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특히, 2024년에는 본래 계획되어 있던 농업용수 공급공사 발주 관련 예산 5억원이 기획재정부와의 지출 전 사전협의 과정에서 배정되지 않아 불용되었으며, 그 결과 2025년 예산에 농업용수 공급공사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도 하였음.

【 최근 5년간 농업용수 공급공사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편성	-	-	41,300	22,315	-
집행	-	-	24,543 (59.4)	11,281 (50.6)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의 경우 동 사업이 기획재정부와의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이 됨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상황 및 해당연도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으며,

기본계획 재수립 후 농업용수 공급공사를 진행하여, 2026년에 신규공사를 발주하고 2029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2030년에는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기반 확충의 차질로 인하여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생명용지 활용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준공된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서 수출지향형 농업을 위한 농업특화단지를 2020년부터 10개 법인[163]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데,

현재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선정 시 계획한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작물이 아닌 조사료(IRG 등), 밀 등이 재배되거나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영농이 아닌 임시영농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임.

163) 2009년에 3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나 그 중 2개 법인이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2017년에 추가로 10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나 그 중 1개 법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현재 10개 법인이 참여함

【 농업특화단지 법인 선정 시 재배계획 작물 및 '24년 재배작물 】

참여법인	유형	면적 (ha)	재배작물	
			활용계획	'24년 실적
익산모던	시설	11	파프리카, 토마토	'22년 IRG 이후 미식재
팜조아	시설	11	딸기, 토마토, 엽채류 등	대파(4ha)
부안 마케팅	시설+일반	48	장미, 토마토, 쌈채	우리밀(32ha), 양파(16ha)
새만금 유기농	일반	43	보리순 외 9품목	IRG(30ha), 우리밀(13ha)
에쿠스	일반	24	고구마, 보리 마늘 등	우리밀
365	일반	23	연근, 귀리, 콩, 감자 등	청보리(17ha), 연근(6ha)
아그리코	일반	23	약용작물, 콩, 감자 등	우리밀
김제 우리미	일반	47	콩, 밀, 보리 등	우리밀
전북 환경농업	일반	24	해바라기, 유채, 감자 등	'22년 IRG (23ha), 보리(1ha) 이후 미식재
농산	시설+일반	182	파프리카, 토마토	IRG(117ha), 우리밀(25ha)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에 준공된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 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499ha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2025년부터 운영 중인데,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잠재적인 재정수입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생명용지를 활용

한 사업 등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완료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수 미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특정 국가들에 집중된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 진출국 다변화 필요

○ 현재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은 전체 참여 기업의 56.9%(37개)가 캄보디아, 러시아 등 단 4개국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진출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미래 해외식량 확보 기반 마련 및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의 해외투자환경조사, 전문교육, 영농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정보제공 및 워크숍 등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30억을 전액 집행하였음.[164]

【 2024회계연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3,000	-	-	-	3,000	3,000	-	-	2,83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6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지관리기금-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5032-30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 특히 주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확보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융자, 기술·인력, 정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같은 식량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가의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바, 국가 식량 안보의 해외 전초 기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짐.

동 사업의 추진 체계는 아래 표와 같음.

【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 추진 체계 】

부처		사업시행기관		최종 수혜대상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한국농어촌공사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 등
·기본계획 수립·통보 및 세부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정산·승인	▶	·(농어촌공사) 영농지원센터(러시아 연해주)를 운영하여 현지 진출기업들에 기술적·행정적 지원, 융자사업 관리 등 ·(해농협회) 민간기업의 인력양성, 정보·네트워킹, 컨설팅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	▶	·희망국가 사전투자환경조사·사후컨설팅, 국제 곡물과정 등 인력 양성교육 수료 ·최신 해외농업 관련 기술 및 정보 습득, 경영개선 등 리스크 최소화로 안정적 정착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동 사업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 현황(24년말 기준)을 살펴보면, 캄보디아·러시아·중국·인도네시아 4개국에 전체 활동 기업 65개 중 37개 기업(56.9%)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리적 인접성,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북방, 동남아지역을 해외농업자원개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였고, 이로 인해 러시아, 동남아 지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이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특정 국가 집중 현상은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의 잠재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 관련 진출 기업 현황(2024. 12. 기준) 】

국가	신고기업 ('09~'24년 신고 누적)	활동기업	비 고
합계	**235**	**65**	
캄보디아	**46**	**14**	**37(56.9%)**
러시아	**17**	**9**	
중국	**32**	**7**	
인도네시아	**22**	**7**	
미얀마	6	4	
라오스	15	3	
베트남	16	3	
키르기스스탄	10	3	
우즈베키스탄	5	1	
미국	5	1	
브라질	4	2	
호주	3	2	
우크라이나	3	1	
카자흐스탄	3	-	
인도	2	1	
파키스탄	1	1	
터키	1	1	
루마니아	1	1	
칠레	1	1	
페루	1	1	
볼리비아	1	1	
캐나다	1	1	
필리핀	14	-	
몽골	12	-	
우간다	2	-	
콩고민주공화국	2	-	
스리랑카	1	-	
타지키스탄	1	-	
아제르바이잔	1	-	
네덜란드	1	-	
우루과이	1	-	
마다가스카르	1	-	
모잠비크	1	-	
태국	1	-	
뉴질랜드	1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직접적 노출'의 문제가 있음.

러시아의 경우,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미국 등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 흑해 등 주요 물류망의 불안정,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곡물 수출 통제나 자산 동결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중국 또한 미·중 갈등과 같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자국 식량 안보를 이유로 한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 조치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리스크가 우리 해외 식량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특정 지역의 국지적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고, 토지 소유권 분쟁이나 정치적 불안정성, 취약한 물류 인프라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진출한 다수 기업이 동시에 타격을 입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이처럼 소수 국가에 대한 해외농업 자원개발의 과도한 의존은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가 곧바로 우리 해외 식량 공급망 전체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목적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달성을 위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선, 신규 유망 지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정부 주도의 정보 제공 및 외교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단독으로 개척하기 어려운 신규 시장에 대해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투자 환경정보, 법률 및 제도 등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간 농업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외교적 지원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은 당초 재산수입 8억원, 경상이전수입 20억, 정부내부수입 2조 9,872억 1,300만원 등 총 3조 193억 9,900만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사업운용 수입 및 여유자금회수액은 증가하였으나, 정부내부수입 감소로 2조 9,744억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조 9,702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사업운용 수입	4,790	86,380	82,180	-	4,200	77,390
- 재산수입	800	18,215	18,215	-	-	17,415
- 과태료	2,000	-	-	-	-	△2,000
- 경상이전수입	1,990	68,165	63,965	-	4,200	61,975
정부내부수입	2,987,213	2,717,213	2,717,213	-	-	△270,000
여유자금회수	27,396	170,873	170,873	-	-	143,477
합 계	3,019,399	2,974,467	2,970,267	-	4,200	△49,13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내역별로 보면 재산수입은 당초 8억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여유자금 운용 규모 확대에 따른 회수 이자금액 증가로 계획대비 174억 1,500만원이 증가한 182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음. 경상이전수입은 19억 9,0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과년도 사업 정산 잔액 등이 619억 7,500만원 증가하면서 639억 6,500만원임.

정부내부수입은 특별회계 전입금이 계획액 2조 9,872억 1,300만원 대비 2,700억원 감소하면서 2조 7,172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여유자금회수는 2023년 통화기관예치금 69억원과 비통화기관예치금 1,639억 7,300만원이 회수되어 계획액 대비 1,434억원 7,700만원 증가한 1,708억 7,300만원을 수납 완료하였음.

2) 지출결산

□ 2024회계연도 지출계획 3조 193억 9,9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3,600만원을 포함하여 지출현액 3조 194억원 3,500만원 중 2조 9,702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계획현액 3조 194억 3,500만원 중 농가소득보전으로 2조 6,169억 8,300만원, 기금운영비 1억 9,100만원, 여유자금 운용 3,530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격요건 적합 농업인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집행 잔액으로 2,920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일반지출	2,909,217	36	-	-	-	2,909,253	2,617,174	-	292,079
- 사업비	2,908,982	36	-	-	-	2,909,018	2,616,983	-	292,035
- 기금운영비	235	-	-	-	-	235	191	-	44
정부내부지출	-	-	-	-	-	-	-	-	-
- 예수금원금상환	-	-	-	-	-	-	-	-	-
- 예수금이자상환	-	-	-	-	-	-	-	-	-
여유자금운용	110,182	-	-	-	-	110,182	353,093	-	-
합 계	3,019,399	36	-	-	-	3,019,435	2,970,267	-	292,07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4회계연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은 당초 재산수입 290억 8,500만원, 경상이전수입 1,368억 4,4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649억 7,800만원,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576억 5,900만원 등 총 5,885억 6,600만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및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3,655억 5,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납기 미도래 과징금 1,500만원을 제외한 3,655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FTA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29,085**	**11,854**	**11,854**	**0**	**0**	**△17,231**
기타민간이자수입	25,705	7,641	7,641	0	0	△18,064
기타재산수입	3,380	4,213	4,213	0	0	833
경상이전수입	**136,844**	**114,732**	**114,717**	**0**	**15**	**△22,127**
과징금	-	17	2	0	15	2
위약금	-	521	521	0	0	521
법정부담금	92,474	83,417	83,417	0	0	△9,057
기타경상이전수입	44,370	30,777	30,777	0	0	△13,593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64,978**	**139,559**	**139,559**	**0**	**0**	**△125,419**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57,659**	**99,412**	**99,412**	**0**	**0**	**△58,247**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	-	-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57,659	99,412	99,412	0	0	△58,247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	-	-	-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	-	-	-	-	-
합 계	**588,566**	**365,557**	**365,542**	**0**	**15**	**△223,02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4회계연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수입결산의 특징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등의 수납액 실적이 예산액 대비 감소하였다는 점임.

□ 재산수입의 경우 290억 8,5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18억 5,400만원임.

세부내역별로 보면 기타민간이자수입은 기존 정책자금 상환 등에 따른 잔액 감소로 인해 융자이자수익이 예산대비 180억 6,400만원 감소한 76억 4,100만원을, 기타재산수입은 여유자금 운용 증가로 인해 예산대비 이자 회수액이 8억 3,300만원 증가한 42억 1,300만원을 수납함.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1,368억 4,4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147억 1,700만원임.

세부내역별로 보면 법정부담금은 924억 7,4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의 90.2%인 834억 1,700만원이었는데, 이는 한중 FTA 참깨 낙찰단가 하락 및 이행물량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443억 7,0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보조금 실집행률 증가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의 69.4%인 307억 7,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과징금 및 위약금으로 5억 2,300만원을 추가 수납함.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는 2,649억 7,8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의 52.7%인 1,395억 5,900만원인데, 이는 시중 고금리 등 정책자금 실수요 증가에 따라 반납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1,576억 5,9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의 63.1%인 994억 1,200만원임. 이는 2023년도 수입 수납액 실적이 예산액 대비 감소로 인해 줄어든 여유자금 운용액이 2024년 여유자금 회수금액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2) 지출결산

□ 2024회계연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지출 계획과 계획 현액은 5,885억 6,600만원으로 동일하나, 사업별 지출계획이 변경됨.

□ 계획 현액 5,885억 6,600만원 중 농가경영안정으로 660억 900만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550억원, 농업신산업육성 102억 9,600만원,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1,138억 100만원, 축산업진흥으로 1,108억원 6,100만원, 여유자금운용으로 78억 900만원 등 총 3,655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지연 등으로 축산업진흥 15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등으로 9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회계연도 FTA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농가경영안정	8,868	-	-	57,275	-	66,143	66,009	-	134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55,000	-	-	-	-	55,000	55,000	-	-
농업신산업육성	10,296	-	-	-	-	10,296	10,296	-	-
농산물수급안정 및유통효율화	114,490	-	-	-	-	114,490	113,801	-	689
축산업진흥	146,643	-	-	△20,681	-	125,962	110,861	15,000	101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1,766	-	-	-	-	1,766	1,766	-	-
여유자금운용	251,503	-	-	△36,594	-	214,909	7,809	-	-
합 계	**588,566**	**-**	**-**	**57,275 △57,275**	**-**	**588,566**	**365,542**	**15,000**	**92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총괄: FTA기금의 재정안전성 확보 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FTA기금의 안정적 수입원인 농특회계 전입금 확보에 주력하고, FTA기금 수입을 최근 결산 실적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며, 보조금의 정산 및 미반납액의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165]에 따라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04년부터 설치·운용한 기금임.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실적을 보면, 수입부문에서 계획액 5,885억원 중 3,655억원을 수납하고, 지출부문(여유자금운용 제외)에서 계획현액 3,736억원중 3,577억원을 지출하였음.

16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024회계연도 FTA기금 결산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 실적	'24		증감(B-A)
			계획(A)	실적(B)	
조달	○ 전입금	0	0	0	0
	○ 자체수입	263,729	430,907	266,130	△164,777
	▪ 법정부담금	68,758	92,474	83,417	△9,057
	▪ 위약금/과징금	218	-	523	523
	▪ 기타경상이전수입	29,281	44,370	30,777	△13,593
	▪ 융자원금회수	152,985	264,978	139,559	△125,419
	▪ 융자이자수입	8,008	25,705	7,641	△18,064
	▪ 예치금이자	4,479	3,380	4,213	833
	○ 여유자금회수	162,470	157,659	99,412	△58,247
합 계		426,199	588,566	365,542	△223,024
지출	○사업비	322,285	371,891	355,967	△15,924
	○기금운영비	4,502	1,766	1,766	-
	○여유자금운용	99,412	214,909	7,809	△207,100

나) 검토의견

(1) FTA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농특회계 전입금 확충 필요

□ FTA기금의 최근 운용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수입이 감소하면서 매년 지출이 자체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4년에는 피해보전직불 사업에서 예산의 초과 집행(572억원)이 이루어지면서 9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 최근 5년 수지차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지차(A-B)	17,184	-32,947	-28,348	-63,058	-91,603	-7,496**
수입(A)	540,575	448,308	341,797	263,729	266,130	276,192
	(104.5)*	(88.6)	(79.3)	(61.6)	(61.8)	(80.8)
지출(B)	523,391	481,255	370,145	326,787	357,733	283,688
	(99.6)	(92.9)	(94.4)	(92.6)	(95.7)	(98.2)

* 예산 대비 집행률

** 25년은 6월 수지 추정 기준(추경 미포함)이며”24년 이월 사업비 150억원 반영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와 같이 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최근 5년 FTA기금의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지출 감소('20년 5,234억원→'24년 3,577억원)보다 수입의 감소('20년 7,472억원→'24년 3,655억원)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먼저, 수입 부문에서 최근 5년 수입 총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수입 감소('20년 4,131억원→'24년 2,661억원)는 물론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급감 및 중단('20년 1,275억원→'23년 0원), 적자 결산으로 인한 여유자금 회수 감소('21년 2,238억원→ '24년 994) 등에 기인함.

【 최근 5년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명 및 내역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p)
계		747,157	672,054	532,436	426,199	365,542	284,001
정부 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27,494	50,368	4,687	-	-	-

구분	계정명 및 내역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p)
자체 수입	소계	413,081	397,920	336,930	263,729	266,130	276,192
	기타민간융자원금	289,739	240,502	199,399	152,985	139,559	134,989
	법정부담금	92,928	109,327	97,037	68,759	83,417	93,242
	기타경상이전수입	17,536	37,556	29,474	29,280	30,777	41,450
	기타민간이자수입	8,880	7,555	7,516	8,008	7,641	5,412
	기타재산수입	3,608	2,947	3,347	4,479	4,213	1,013
	위약금/가산금	390	33	157	218	523	86
여유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206,582	223,766	190,819	162,470	99,412	7,809

* 매년 결산 실적 기준으로 비율 산정, '25년은 6월 수지 추정 기준(추경 미포함)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지출 부분에서도 일반지출('20년 5,189억원→ '24년 3,560억원)과 여유자금 운용액('20년 2,238억원→ '24년 78억원)이 꾸준히 축소됨에 따라 매년 총액이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및 세부항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747,157	672,074	532,616	426,199	365,542	284,001
사업비	소계	518,863	476,696	365,694	322,285	355,967	281,971
	융자지출	230,328	200,117	171,233	134,832	99,824	138,236
	경상지출(보조사업)	253,536	236,579	154,461	147,453	201,143	147,735
	자본지출 (모태펀드 출자)	35,000	40,000	40,000	40,000	55,000	-**
기금 운영비	기금운영 관련 인건비, 기타경비 등	4,527	4,559	4,452	4,502	1,766	1,717
여유자금 운용	사업수행 이외의 여유자금	223,766	190,819	162,470	99,412	7,809	313

* '25년은 6월 수지 추정 기준(추경 미포함)이며, '24년 이월 사업비 150억원 반영

**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25년부터 농특회계로 이관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와 같이 기금 수지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FTA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여 FTA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24년 재정당국의 기금존치평가에서도 FTA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및 건전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FTA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먼저, 수입 재원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증가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민간융자원금 수입은 '21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융자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와 융자상환의 다수를 차지하는 조기상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임.

【 최근 5년 기타민간융자원금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융자금(기말)	1,010,175	969,089	940,351	921,962	881,559
융자원금 회수	289,739	240,502	199,399	152,985	139,559
조기상환 실적	244,851	196,413	168,478	122,275	108,31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조기상환 부진은 '22년부터 시중금리가 기금 대출금리보다 높

은 것에 기인하는데, 현재의 고금리 기조에서는 조기상환 부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기금 대출금리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금 대출금리		0~2%	0~2%	0~2%	0~2%	0~2%
한국은행 기준금리	최저	0.50	0.75	1.25	3.50	3.00
	최고	0.75	1.00	3.25	3.50	3.2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또한,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법정부담금(농산물 공매납입금) 역시 추가 FTA 체결로 TRQ 물량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금액상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한편, 지출 측면에서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추가 소요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FTA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5년 예산안 심사와 2024년 국정감사 실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각각 부대의견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고, 2022년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66]의 영향과 향후 한-메르코수르

166) RCEP는 2020년 11월 15일에 공식 서명되었고 각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음.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며,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MERCOSUR) FTA[167]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지출 소요의 증대 가능성은 커진 반면, 자체수입의 확대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고 여유자금은 고갈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FTA기금의 재전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 외부로부터 자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금 수입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바 있으나,[168]

이와 같은 공자기금 차입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의 효과는 있으나, 원리금 상환이 수반되는 차입성 재원인 만큼 기금의 구조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167)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공동시장으로, 2018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상품·서비스 교역과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168) <FTA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 금 조 달					
구분	'24 계획	'25			증감 (C-B)
		당초(A)	현계획(B)	수정(C)	
합 계	588,566	482,612	482,612	505,284	22,672
○ 자체수입	430,907	341,612	341,612	341,612	-
○ 정부내부수입	-	-	-	22,672	22,672
○ 여유자금회수	157,659	141,000	141,000	141,000	-

따라서 FTA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 차입보다는 실질적 수입 재원을 본원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그 대안으로는 '23년부터 전면 중단된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농특회계 전입금은 FTA기금 설치 당시부터 법률상 명시[169]된 주요 수입원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기금이 여유자금 회수액이나 자체 수입에 의존하면서 전입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전입이 중단된 바 있는데,

이러한 전입의 중단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재원 부족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음.

【 FTA기금 농특회계 전입금 추이 】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60,000	160,000	144,500	160,000	176,325	300,139	148,846	242,346	430,645	316,000	295,0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계**
380,000	343,000	195,000	150,000	110,000	127,494	50,388	4,867	-	-	3,894,55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69) 제14조(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 6. <생 략>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FTA기금 농특회계 전입금 추이 】

(단위: 억원)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FTA기금이 향후에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 완충과 농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안정적 수입원인 농특회계 전입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FTA기금 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한편, FTA기금 운용에 필요한 적정 농특회계 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기금의 정확한 수입 추계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최근 5년 수입 실적을 보면, 융자원금 회수액의 지속적인 감소로 '23년 및 '24년 모두 계획액 대비 결산액이 크게 하회하였고, 특히 '24년에는 2,23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25년에도 상당 수준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 수입액의 예결산 차이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수입	예산(A)	599,937	551,244	472,139	510,734	588,566	482,616
	결산(B)	747,157	672,074	532,616	426,199	365,542	284,001
	차이(B-A)	147,220	117,830	60,477	△84,535	△223,024	△198,615

* '25년은 추가 회수 포함한 예상 수치임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최근 5년 융자원금 회수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계획액	254,486	264,741	263,054	265,380	264,978
수입실적액	289,739	240,502	199,399	152,985	139,55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와 같이 예결산상 수입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금 수입의 최근 추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수입액을 예년 기준으로 계상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과다한 수입 계상은 결과적으로 지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편성 시에 FTA기금 수입을 최근 결산 실적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입 과다계상으로 인한 예산의 왜곡과 기금 운용의 불안정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3) 보조금 정산 및 미반납액 환수 철저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FTA기금 수탁운용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기금의 불안정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같은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노력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FTA기금 사업 중 하나인 피해보전직불사업에서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의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은 미반납액 규모는 2024년말 기준 11억 6,564만원에 달하고 있음.

【2022년 말 기준 피해보전직불 사업 보조금 미반납액】

(단위 :원)

연도	미반납액
2020년 이전	1,165,474,430
2021	9,210
2022	-
2023	157,640
2024	-
합계	1,165,641,28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20년부터 '23년까지는 농식품부가 지자체에 피해보전직불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금액이 크지 않아 집행잔액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납액의 대부분은 사업이 완료

된 지 4년 이상 경과한 사업연도에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70]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기한을 정하여 반납받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완료 후 4년이 경과한 미정산금이 존재하는 것은 마땅히 징수하여야 할 재정수입에 대한 확보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 대하여 미정산금의 반납 완료 시한 등을 명시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환수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보조금의 정산 및 미반납액의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17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피해보전직불: 계획액과 집행액 간 괴리 축소 노력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시조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직불금 수요 예측을 강화하는 등 계획액과 집행액 간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단년도의 지원대상에 국한하여 성과를 측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 성과의 지속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에 5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반영한 계획현액 626억 7,500만원 중 625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피해보전직불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피해보전직불	5,400	62,675	-	62,675	62,571	-	104	21,866

나) 검토의견

□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식량(11개), 축산(9개), 원예·특작(17개), 임업(5개) 등 총 4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피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정 요건(①국내산 가격이 평년 대비 90% 이하 하락, ②전체 수입량이 평년 수준 초과, ③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평년보다 증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24년 수입피해모니터링 품목 】

분야	구체적 품목
식량(11개)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축산(9개)	한우, 육우, 송아지가 해당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원예특작(17개)	참깨, 체리, 키위, 시설재배와 노지재배되는 만감류등의 감귤,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되는 포도,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임업(5개)	호두와 밤, 잣, 은행 대추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동사업의 시행 절차를 살펴보면, 전년도 12월에 수입피해 조사 대상품목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여 당해연도 1월부터 3월 사이 수입피해 조사·분석(상시조사품목 42개+신청품목)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에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선정함.

이후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지자체

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지원 자격을 조사·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고보조금 자금배정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지자체에 지급하게 됨.

그런데 동사업의 최근 집행 현황을 보면, '20년에 당초 계획보다 대폭 증액된 630억원이 집행된 이후 '21년부터 '23년까지 계획액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나, 예년보다 감액 편성된 '24년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대폭 증액(572억원)하여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음.

【 최근 5년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불용액
	당초	수정(A)					
2020	20,000	63,009		63,009	63,009	100	-
2021	20,000	20,000	-	20,000	706	3.5	19,294
2022	20,000	20,000	-	20,000	-	-	20,000
2023	18,000	18,000	-	18,000	332	1.8	17,668
2024	5,400	62,675	-	62,675	62,571	99.8	104

※ 자료: 농식품부 제출

'24년의 경우 한우, 한우송아지, 육우, 녹두 등 4가지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평년과 달리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의 초과 집행이 나타나게 된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고기의 경우 수입량이 평년값 대비 9.7% 이상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육류 수요 증가

효과('18~'22년)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음.

또한, 소고기와 같이 산업 규모가 큰 품목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171]

【 소고기 국내 공급 및 가격 동향 】

(단위: 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년 ('18~'22)	평년 대비 2023년 변화율(%)
총수입량		415,478	443,566	443,245	468,958	474,511	472,888	451,923	4.6
FTA 체결국 수입량[1] (협정세율 적용 물량)		409,008	434,522	434,672	459,288	367,303	467,339	426,067	9.7
협정세율 미적용 수입량[2]		6,471	9,044	8,573	9,670	107,208	5,549	9,096	-39.0
국내 생산량 (총공급량 대비 비중, %)		236,696 (36.3)	245,462 (35.6)	248,595 (35.9)	263,660 (36.0)	288,293 (37.8)	303,116 (39.1)	252,572 (35.9)	20.0
총 공급량		652,174	689,028	691,840	732,618	762,804	776,004	704,495	10.2
국산 평균 가격	한우(원/kg)	17,772	17,965	19,891	21,169	19,018	16,628	18,958	-12.3
	육우(원/kg)	10,368	10,096	10,727	11,649	10,580	9,369	10,558	-11.3
	한우송아지 (천원/두)	3,652	3,764	4,091	4,329	3,621	3,162	3,835	-17.5

주 1) FTA 체결국 수입량은 관세율을 감축·철폐하기로 한 HS코드에서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된 수입량만 집계
2) 협정세율 미적용 수입량은 총수입량에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 FTA 체결국 수입량을 제한 수입량
3) 평년은 해당 연도 직전 5개년 평균값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값
4) 한우와 육우의 평균가격은 전국평균경매가격(등급무관, 등외·결함 제외)이며, 한우송아지는 6~7개월령, 암·수 평균 산지가격
5) 2022년 쇠고기 총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급할당관세(2022년 7월 이후 쇠고기 관세 0%) 적용으로 FTA 체결국 수입 물량은 감소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입량), 축산물품질평가원(생산량, 한우·육우 가격), 농협중앙회(한우송아지 가격)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이 매년 계획액과 집행액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동 사업이 전년도의 수입 피해

171)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거 '20년의 경우에도 돼지가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예산이 초과 집행된 바 있음.

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점에 전년도의 직불금 지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직불금 지급 규모의 예측에 시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문 피해 동향의 가늠이 가능한 측면도 있으므로, 상시 조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직불금 수요 예측을 강화하는 등 계획액과 집행액 간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172].

□ 한편, 동사업은 성과지표로 'FTA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의 가격지지율'[173]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보전직불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미흡해 보임.

즉, 현행 성과지표는 당해연도 피해보전직불금이 실제 지급된 품목에 한정해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원대상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실제 최근 5년 지원대상 품목을 보면, '20년 3개(녹두, 밤, 돼지고기), '21년 및 '23년도 각각 1개(귀리, 생강), '24년에 4개 품목이었으며, '22년에는 지원 품목이 존재하지 않았음.

---

172) 동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5년까지 발생한 피해(실제 사업연도는 '26년까지)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한 후 시행이 종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다수 회부되어 있음.

173) 측정산식은[(당년가격 + 직불금) / 기준가격*] × 100
* 기준가격 : (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90%

또한, 동 사업은 FTA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피해 품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인데, 현행 지표는 단년도의 지원 품목만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지원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단년도의 지원대상에 국한하여 성과를 측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 성과의 지속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투자 지연 방지, 회수재원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필요 등

○ 2024년 결성한 일부 자펀드의 투자 실적이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상 기준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실투자가 부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이 대기자금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에 따라 회수재원을 통해 결성되는 자펀드의 운용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전통적인 농업금융방식인 투융자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함으로써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550억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174)]

174) 회계(기금)-세부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농식품모태펀드 출자(1151-300)

【 2024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55,000	55,000	-	55,000	55,000	-	-	55,000[175]

나) 검토의견

(1) 자펀드의 투자 지연 방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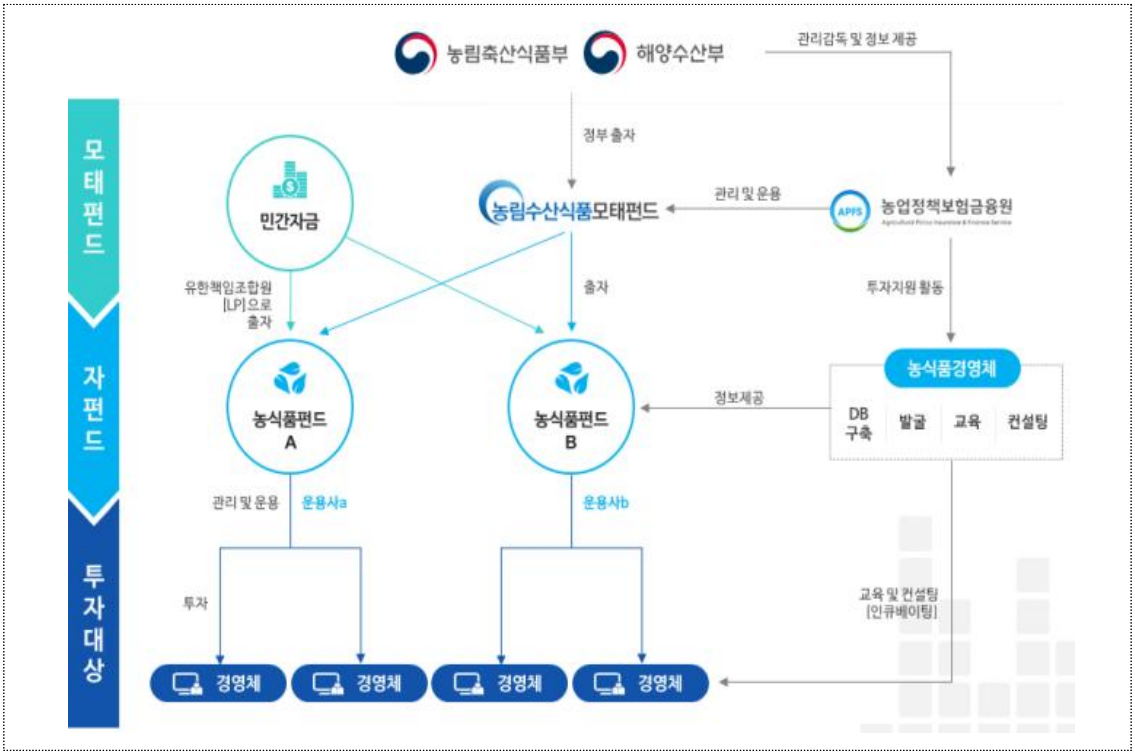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나 회사(자펀드)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이나 기금 등으로 조성한 펀드(모펀드)임.

모태펀드의 출자·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① 정부(농림부, 해수부) 재정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하고(정부 출자), ②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을 관리·운용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민간(자산운용사)과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농식품펀드, 자펀드)을 결성하면,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성장 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고, ④ 농식품경영체

175) 2025회계연도부터는 농특회계로 이관하여 편성됨.

로부터 투자금 회수 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에 재투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 구조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2024년에는 스마트농업펀드, 영파머스펀드, 푸드테크펀드, 세컨더리펀드 4개 특수목적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태펀드 출자금 55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출자계획 공고(2024.2월) 및 운용사 선정(2024.4~5월)을 거쳐 2024년 7월 5개의 투자조합이 결성되었음.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스마트농업펀드 1개 × 20,000백만원 × 60%(매칭비율) = 12,000백만원 ○ 영파머스펀드 1개 × 20,000백만원 × 80%(매칭비율) = 16,000백만원 ○ 푸드테크펀드 1개 × 20,000백만원 × 60%(매칭비율) = 12,000백만원 ○ 세컨더리펀드 1개 × 25,000백만원 × 60%(매칭비율) = 15,000백만원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런데 2024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서 정부 출자금 550억원을 바탕으로 결성한 자펀드의 실질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2개 펀드의 민간 투자액이 전혀 없고, 결성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7월말 기준으로도 결성액 대비 실투자금액 비율이 스마트농업 3.7%, 영파머스 10.0% 등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 2024년 결성 자펀드 운용 현황 】

(단위 : 억원)

투자분야	운용사	펀드결성규모			펀드 결성일	투자소진율	
		모태	민간	총계		'24.12월말	'25.7월말
푸드테크	롯데벤처스	120	90	210	'24.7.25	-	21.4%
스마트 농업	경남벤처투자 & BNK벤처투자	120	80	200	'24.7.24	3.7%	3.7%
영파머스	동훈인베스트먼트	80	20	100	'24.7.5	-	10.0%
	씨케이디창업투자	80	20	100	'24.7.17	10.0%	20.0%
세컨더리	에임인베스트먼트 & 하랑기술투자	150	151	301	'24.7.26	20.0%	51.4%
소계		550	361	911			

주: 투자소진율(투자금액/결성액)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농식품투자조합에서 기투자한 농식품경영체의 투자자산이나 농식품투자조합원의 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세컨더리 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소진율은 2025년 7월말 기준으로 51.4%이나, 37.8%는 정책 목적 외 일반 포트폴리오 투자에 해당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투자소진율은 13.6%에 불과함.

【 2024년 결성 세컨더리 펀드 운용 현황 】

(단위 : 억원)

조합명	투자소진율		주목적투자비율 (25.7월말 기준)
	'24.12월말	'25.7월말	
에임하랑 농업혁신 세컨더리 신기술 투자조합 1호	20.0%	51.4%	13.6%

주: 주목적 투자비율(주목적투자금액/결성액)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모태펀드는 자펀드 결성 이후 다년도에 걸쳐 투자기업을 발굴함에 따라 연내 실질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나, 실제 농식품 기업체에 대한 자펀드의 투자가 기준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 출자금이 대기자금으로 머물게 되어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며, 청년 창업, 스마트 농업 확대, 농식품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적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176]」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촉진을 위해 조합등록 후 1년 이내 25%, 2년 이내 50%, 3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60%, 4년 이내 80% 이상을 의무투자(약정총액 기준)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모태조합 운영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실투자가 부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이 대기자금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77]

17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177)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19년까지 결성된 자펀드는 결성총액 중 투자된 비율이 89% 수준이었으나, 2020년 결성 자펀드와 2021년 결성 자펀드는 투자율이 각각 49.8%, 35.4%인 상황으로 회수재원의 증가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0.).

(2) 세컨더리 펀드 등 운용 심사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

□ 일반적으로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투자기관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한 뒤, 상장(IPO)이나 기업매각(M&A) 등을 통한 최종 회수(exit)로 수익을 실현함.

그러나 이러한 회수 과정은 기업 상황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의 사유로 중도에 펀드 지분을 매각하려는 투자자의 수요가 발생하기도 함.

이 때 세컨더리 펀드는 ① 자펀드가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한 투자자산을 인수하거나 ② 농식품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은 자펀드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가 자금 필요 시 빠른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투자기업에게는 부족한 투자 기간을 보완함으로써 농식품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함.

현재까지 모태펀드를 통해 4개의 세컨더리 펀드가 결성되었는데, 1개 자펀드는 투자기간이 종료되어 3개의 세컨더리 펀드가 운용 중임.

【 세컨더리 펀드 운용 현황 】

투자분야	운용사	펀드결성규모			투자기간
		모태	민간	총계	
세컨더리	나우아이비캐피탈(주)	120	80	200	'18.12.~'22.12.
	포스코기술투자 & 메타인베스트먼트	120	400	520	'21.12.~'25.6.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 &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118	82	200	'23.8.~'27.8.
	에임인베스트먼트 & 하랑기술투자	150	151	301	'24.7.~'28.1.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세컨더리 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태에서 지분을 매입하기 때문에 모태펀드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줄어들고 자산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우량 자산은 기존 투자자가 매도할 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거래되는 자산에는 상대적으로 매각 수요가 큰 부실 자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정책자금의 중복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펀드 투자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개별 투자 대상 자산의 건전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중복 투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적 투자 내역의 확인이 필요함.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운용사)은 존속기간 또는 존속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정보 누설, 제공, 공개 금지 의무가 있어 투자대상 기업을 비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임.[178]

□ 그러나 해당 규약에서도 관련 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는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펀드의 운용 성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8)「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 제16조 (조합원의 권리 등) ① 조합원은 그 출자좌수와 본 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2. 조합재산을 조합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배분받을 권리
3. 기타 관련법령 및 조합규약에 의한 권리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원의 자격으로 지득한 정보를 조합의 존속기간 중 또는 조합존속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을 의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유한책임조합원(특별조합원 포함)은 본 조에 따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조합원 자격 취득 이전부터 당해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나. 당해 조합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개된 정보
다. 정보를 제공한 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라.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3) 회수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태펀드는 정부 예산을 기업이나 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태펀드에 예산을 출자하면 모태펀드에서 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운용됨.

이에 모태펀드 출자금이 특정 회계연도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후에는 해당 예산으로 결성된 자펀드의 운용기간(약 8~10년)이 종료되더라도 자펀드의 투자수익을 비롯한 청산금(회수재원)이 국고로 회수되지 않고 모태펀드에 남아 다른 자펀드에 대한 출자에 재사용되고 있음.

□ 2010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출범한 이후 운용 기간이 15년에 달함에 따라 회계연도별 출자에 활용된 재원을 예산액과 회수재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재출자된 회수재원은 3,474억원으로 예산액(2,100억원)의 1.65배에 달함.

【 최근 5년간(2020~2024년) 모태펀드 재원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	'21	'22	'23	'24	합 계
예산액	350	400	400	400	550	2,100
회수재원	390	467	1,126	835	656	3,474
소계	740	867	1,526	1,235	1,206	5,574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러나 이와 같은 운용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5조[179]에 근거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22.4.)」에서는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조합 만기(2040년)[180]를 고려하여

179) 제5조 (규약 작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8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재투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181] 현재까지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회수된 사례는 없음.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외에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182]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둘째,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와의 협의만을 거쳐 재출자한 회수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181) 규약 제32조(투자의 방법) ① 투자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조합출자증서의 취득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조합만기를 고려하여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182)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수재원만으로 출자한 자펀드 현황 】

(단위: 억원)

사업연도	투자분야	운용사	펀드결성규모		
			모태	민간	총계
2014	수출	㈜세종벤처파트너스 AJ캐피탈파트너스㈜	90	40	130
2015	농림축산식품업	농협은행(주) NH투자증권(주)	100	100	200
2016	농림축산식품업	지앰비인베스트먼트&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180	150	330
	스마트팜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60	40	200
		CKD창업투자	120	30	150
	6차산업화	(주)블루그린인베스트먼트	70	30	100
	수출	포스코기술투자(주)	70	30	100
2017	농림축산식품업	시너지IB투자	50	50	100
	ABC	㈜디티앤인베스트먼트& NH농협캐피탈㈜	140	80	220
		마그나인베스트먼트㈜	140	60	200
	6차산업화	㈜패스파인더에이치	70	30	100
2018	농림축산식품산업	㈜디티앤인베스트먼트&NH 농협캐피탈(주)	90	110	200
	지역특성화	AJ캐피탈파트너스(주)& (주)이수창업투자	40	60	100
	세컨더리	나우아이비캐피탈(주)	120	80	200
	6차산업화	㈜킹고투자파트너스	70	30	100
2019	농림축산식품산업	(주)UTC인베스트먼트& ㈜나이스에프엔아이	115	115	230
		㈜농협은행& ㈜나우아이비캐피탈	115	285	400
	ABC	㈜현대기술투자	70	30	100
2020	농림축산식품산업	롯데액셀러레이터	50	102	152
		㈜농협은행& ㈜나우아이비캐피탈	150	450	600
	농식품벤처	엔이이치벤처투자	100	30	130
	영파머스	나이스투자파트너스	90	10	100

사업 연도	투자분야	운용사	펀드결성규모		
			모태	민간	총계
2021	농식품벤처	동훈인베스트먼트㈜	80	20	100
	스마트농업	BNK벤처투자㈜	105	45	150
	마이크로	(유)동문파트너즈	52	13	65
	영파머스	㈜패스파인더에이치	90	15	105
	그린바이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90	60	150
	창업보육	씨엔티테크 주식회사	50	21.4	71.4
2022	농림축산식품산업	마그나인베스트먼트	150	150	300
	농식품벤처	나우아이비캐피탈	100	40	140
		로이투자파트너스	100	30	130
	마이크로	비하이인베스트먼트	52	13	65
		인라이트벤처스	52	13	65
		오라클벤처투자	52	13	65
	스마트농업	CKD창업투자	140	60	200
	그린바이오	패스파인더에이치	120	80	200
		BNK벤처투자	120	80	200
	영파머스	엔에이치벤처투자	90	15	105
	농식품 통합지원 (매칭형 직접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9.9	0.1	10
2023	농림축산식품산업	엑스퀘어드 & 푸른인베스트먼트	100	100.1	200.1
		시그나이트파트너스	100	102	202
	직접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9.7	0.3	30
	푸드테크	하이투자파트너스	60	40	100
	농식품벤처	씨제이인베스트먼트	100	25	125
	마이크로	어니스트벤처스	52	13	65
	수출	프롤로그벤처스	140	70	210
	지역특성화(전북)	엔비에이치캐피탈 & 웰투시벤처투자	60	60	120
	세컨더리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 &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118	82	200

사업 연도	투자분야	운용사	펀드결성규모		
			모태	민간	총계
2024	농림축산식품산업	현대기술투자 &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150	150	300
	그린바이오	나우아이비캐피탈	120	90	210
	전통주	엑스퀘어드	60	41	101
	반려동물	트리거투자파트너스	60	41.1	101.1
	지역경제활성화(일반)	씨제이인베스트먼트	50	60	110
	지역경제활성화(전남)	로이투자파트너스 & 한국가치투자	40	90	130
	후속투자	시너지아이비투자	120	110	230
	창업초기	소풍벤처스	56	24	8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2024년에는 그린바이오, 전통주, 반려동물 등이 회수재원만으로 결성되었는데, 이 경우 정부가 자의적으로 투자 분야를 선정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분야에 회수재원을 출자하는 등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른 펀드 운용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2024년 회수재원만으로 결성된 자펀드 중 4개 자펀드는 운용사 결성 철회 및 민간출자자 모집 지연 등에 따라 운용지침상 기준(최초 선정일부터 3개월 이내)보다 펀드 결성이 지연되어 실제 투자도 지연되었으며,

【 2024년 회수재원 조성 자펀드의 펀드 결성 지연 사유 】

구 분	최초선정일	펀드결성일	지연사유
전통주	‘24.4.26.	‘24.10.23.	민간출자자 모집 지연
반려동물	‘24.4.26.	‘24.12.23.	정기 출자사업에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 결성 철회(9.30.)에 따라 2차 출자사업에서 운용사 재선정(11.11.)
창업초기	‘24.7.11.	‘24.12.20.	민간출자자 모집 지연
후속투자	‘24.7.11.	‘24.12.10.	민간출자자 모집 지연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과거 회수재원만으로 결성한 펀드 중에는 2016년 결성된 6차산업 펀드와 같이 4년간 결성총액의 35.0%만 투자한 후 청산된 사례, 2023년 결성하였으나 2년간 주목적투자비율이 10.5%에 불과한 세컨더리 펀드의 사례도 있어 성과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보임.

【 회수재원 조성 자펀드 관리 미흡 사례 】

투자분야	펀드명	펀드 운용기간	투자 소진율 (‘25.6월)	주목적 투자비율 (‘25.6월)
6차산업(청산)	블루6차산업화투자조합1호	2016.8 ~2020.8	35.0%	35.0%
세컨더리	이크럭스 넥스트지 세컨더리 투자조합	2023.8 ~2027.8	32.7%	10.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에 따라 회수재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결성되는 자펀드의 운용계획[183]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국회의 재정통제와 예산안 심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0년 예산안 심의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모태펀드에 대해 국회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태조합 출자 사업 관련 회수자금에 대한 재투자 등 활용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음.

183)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수재원 투자계획을 포함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4) 축사시설현대화(보조, 융자):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 검토를 강화하고, 이월 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ICT 장비의 데이터 연계율이 저조하므로 의무 이행 점검 및 지원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규 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불필요한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신규사업 기획 시 정책 수요와 현장 여건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축사시설현대화(보조, 융자)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축사시설개선 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스마트축산단지조성 사업,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계획현액 1,189억 6,200백만원 중 1,038억 6,200만원을 집행(집행률 87.3%)하고 150억원을 이월, 1억원을 불용 처리하였음.[184]

184) 회계(기금)-세부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융자, 보조)(3760-332, 346)

【 2024년도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	139,643	118,962	-	118,962	103,862	15,000	100	133,517
축사시설 개선	71,675	64,974	-	64,974	49,874	15,000	100	77,521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63,193	53,008	-	53,008	53,008	-	-	49,721
스마트축산단지조성	1,575	980	-	980	980	-	-	6,275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3,200	-	-	-		-	-	-

나) 검토의견

(1)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관리 강화 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축사시설 개선’,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은 축산농가의 노후 축사시설 개선, ICT 장비 설치 및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비용을 보조 및 융자를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 사업 내역사업별 지원 조건 】

내역사업명		보조		융자	자부담
		국비	지방비		
축사시설 개선	시설현대화	-	-	80%	20%
	방역인프라 (CCTV 등 방역시설)	30%	-	30%	40%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ICT 시설설치지원	30%	-	50%	20%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70%	30%	-	-

□ 먼저,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남.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의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의 특성상 주변 민원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ICT 시설설치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장비 설치[185]임에도 불구하고 40%대의 실집행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185) <지원 대상>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활용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2024년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FTA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각 내역사업에서 교부액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액이 저조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적정예산만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 2022~2024년도 축사시설 개선-시설현대화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수정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	융자	52,154	51,654	51,654	36,159	87,813	44,255	29,859	13,699	50.4
2023	융자	38,400	38,400	38,400	29,859	68,259	40,008	22,617	5,634	58.6
2024	융자	51,200	54,400	39,400*	22,617	62,017	49,286	10,789	1,942	79.5

주: 수정액과 교부액의 차액인 15,000백만원은 기금 재원 부족으로 부처 차원에서 2025년으로 이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2~2024년도 축사시설 개선-방역인프라지원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수정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2022	보조	19,906	19,906	19,906	1,737	21,643	15,876	3,248	2,519	73.4
	융자	11,400	20,158	83	-	83	83	-	-	100.0
	소계	31,306	40,064	19,989	1,737	21,726	15,959	3,248	2,519	73.5
2023	보조	9,977	9,977	9,977	3,248	13,225	9,945	973	2,307	75.2
	융자	10,000	10,000	6	-	6	6	-	-	100.0
	소계	19,977	19,977	9,983	3,248	13,231	9,951	973	2,307	75.2
2024	보조	10,000	9,971	9,971	973	10,944	8,445	352	2,147	77.2
	융자	10,000	27*	27	-	27	27	-	-	100.0
	소계	20,000	9,998	9,998	973	10,971	8,472	352	2,147	77.2

주: 2024년 융자액 9,873백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재원 마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2~2024년도 ICT 시설설치지원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수정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2022	보조	29,400	29,400	29,400	5,857	35,257	22,322	10,662	2,273	63.3
	융자	49,000	41,755	41,755	24,589	66,344	20,452	26,336	19,556	30.8
	소계	78,400	71,155	71,155	30,446	101,601	42,774	36,998	21,829	42.1
2023	보조	25,875	31,160	28,575	10,662	39,237	22,470	15,084	1,683	57.3
	융자	43,125	49,527	42,265	26,336	68,601	21,407	26,635	20,559	31.2
	소계	69,000	80,687	70,840	36,998	107,838	43,877	41,719	22,242	40.7
2024	보조	15,116	14,089	14,089	15,084	62,173	22,600	5,515	1,058	36.4
	융자	35,595	26,437	26,437	26,635	53,072	33,780	18,520	772	63.6
	소계	50,711	40,526	40,526	41,719	115,245	56,380	24,035	1,830	48.9

주: 2024년 보조 1,027백만원, 융자 9,158백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재원 마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2~2024년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수정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2022	보조	9,183	2,458	2,458	14,125	16,583	1,408	6,275	8,900	8.5
	융자	-	-	-	-	-	-	-	-	-
	소계	9,183	2,458	2,458	14,125	16,583	1,408	6,275	8,900	8.5
2023	보조	13,344	3,100	525	6,275	6,800	525	6,275	-	7.7
	융자	6,402	-	-	-	-	-	-	-	-
	소계	19,746	3,100	525	6,275	6,800	525	6,275	-	7.7
2024	보조	1,575	980	980	6,275	7,255	980	6,275	-	13.5
	융자	-	-	-	-	-	-	-	-	-
	소계	1,575	980	980	6,275	7,255	980	6,275	-	13.5

주: 2024년 595백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재원 마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둘째, 2024~2025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등으로 FTA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기금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예컨대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4년 전년도 이월액 대비 추가적인 실집행액이 266억 6,90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융자시행주체인 농협은행에 1분기에만 351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이후로도 42억 6,000만원의 융자액을 추가로 교부하였음.

【 2022~2024년도 축사시설 개선-시설현대화 사업 융자금 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교부액	교부금액(교부일)			
		1차	2차	3차	4차
2022	52,154	25,575 ('22.4.1.)	12,788 ('22.6.20.)	1,004 ('22.7.20.)	12,287 ('22.11.21.)
2023	38,400	20,984 ('23.2.10.)	1,000 ('23.4.28.)	16,416 ('23.9.26.)	-
2024	39,400	35,140 ('24.3.29.)	1,000 ('24.9.30.)	3,260 ('24.12.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2021년 개시된 사업인 경남 고성군 스마트양돈단지 사업비(62억 7,500만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지시 이행 등으로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이월되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이월 및 재이월을 금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186]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

이러한 실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일부 선제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2024년 총 476여억 원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함으로써 기금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18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보조금)의 이월을 금지하되,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한하여 이월을 허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재이월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됨.

□ 셋째, 동 사업으로 구축된 축산농가 ICT시설의 데이터 연계율이 저조하게 나타나 사업 집행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해 보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ICT 장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나, 최근 3년간('23~'25) 장비를 도입 완료한 765개 농가 중 실제 데이터를 전송 중인 농가는 243농가(31.8%)에 불과함.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 내부의 가축분뇨, 유해가스 등이 센서 등 ICT장비의 데이터 전송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과학영농을 통한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농가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 검토를 강화하고, 이월 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187]과

187)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플랫폼 운영과 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보조금(2024년 62억 4,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함께 ICT 장비의 데이터 연계 의무 이행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FTA기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음.

(2) 신규 사업 기획 미흡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 불용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젖소 육성우[188] 전문목장 지원' 사업은 체계화된 육성우 사양관리를 통해 젖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육성우 전문목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 편성된 사업임.

동 사업은 3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의 80%를 융자 지원하며, 2년차인 2024년에는 융자액의 40%인 3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하였음.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 목　　적 : 육성우를 전문 관리하는 목장을 지원하여 공태기간 단축, 착유우 집중관리 등으로 낙농가의 우유 생산비 저감 도모
□ 사업기간 : 2023~2025년(3년)
□ 예　　산 : 10,000백만원(연차별 비율 10%, 40%, 50%)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용 등
□ 사업자 선정방법 : 지자체 공모(1개 지자체)

□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 없이 2023년 8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었음.

188) 육성우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6~12개월령 젖소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사업에서는 원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4개월령부터 착유 이전 모든 사육단계의 젖소를 대상으로 함.

이후, 현장의견 수렴을 위하여 낙농진흥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남낙농농협 등의 사업참여 의지를 확인하였으나, 전남낙농농협은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등과 사업 신청 시기 지연에 따른 어려움으로 축사시설 신설이 아닌 매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건의하였음.

【 2023년 추진 절차 및 일정 】

구 분	주 체	내용
사업공모 1차 신청(1.30~2.28) 사업공모 2차 신청(3.27~6.30)	낙·축협 지자체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공모 신청(없음)
⇩	⇩	⇩
유관기관[189] 간담회(8.1/9.14.)	농식품부	○ 현장의견 수렴(2회)
⇩	⇩	⇩
사업방식 변경 요청	전남낙농농협	○ 사업계획, 신청서 검토·확인
⇩	⇩	⇩
시행지침 개정(10.24.)	농식품부	○ 기재부 협의
⇩	⇩	⇩
사업철회(12.6.)	전남낙농농협	○ 대의원 총회 반대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10월 사업자금의 용도 변경(축사시설 신설 → 축사 매입)까지 하였으나, 전남낙농농협의 최종 사업참여 포기의사[190]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189) 낙농진흥회, 농협경제지주, 전국 낙·축협 담당자
190) 전남낙농농협의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참여가 무산됨(2023.12.6.)

2024년도에는 2년차 예산으로 3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2024년 7월 사업비 전액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은 유제품 시장개방 확대 및 사료가격 인상 등에 따라 우유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2021년 각계가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191] 논의에 따라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도입된 것이나, 축사 신축에 따르는 민원과 인허가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가 부진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어 사업성과가 전무했던 것은 추진방식과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실제 수요기관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등 신규사업이 체계적으로 기획되지 못한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러한 예산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91)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19인)를 구성하여 '21.8~12월까지 낙농산업 발전방안 논의

1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4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당초 기타재산이자수입 100억 1,0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484억 9,900만원, 여유자금회수 2,118억 4,000만원 등 3,703억 7,200만원을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여유자금회수액 등 증가로 계획 대비 381억 2,500만원 증가한 4,084억 9,700만원임.

□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68억 7,400만원, 경상이전수입으로 3,3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21억 5,500만원, 여유자금회수로 3,994억 3,500만원 등 징수결정액 4,084억 9,7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0,010	6,874	6,874	-	-	△3,136
- 기타재산이자수입	10,010	6,874	6,874	-	-	△3,136
경상이전수입	23	33	33	-	-	10
- 기타경상이전수입	23	33	33	-	-	1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48,499	2,155	2,155	-	-	△146,344
- 면허료및수수료	148,499	2,155	2,155	-	-	△146,344
여유자금회수	211,840	399,435	399,435	-	-	187,595
합 계	370,372	408,497	408,497	-	-	38,12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4회계연도 동 기금의 수입 결산 특징은 2023년 원수보험[192]의 손해율(보험금 지급액/보험료 수입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보험료(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계획 대비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점임.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당초 100억 1,0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23년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펀드[193] 신규설정에 따라 일부 이자가 선실현되어, 실제 수납액은 68억 7,400만원으로 계획 대비 감소하였음.

192) 재보험(Reinsurance)이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이고, 원수보험(DIRECT BUSINESS)은 재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을 말함.
193) 완전위탁펀드란 기금 여유자금을 자산운용사에 일괄 위탁하여, 운용사가 유형별 통합펀드로 분산 투자·운용하는 방식을 말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전년도 기금운영비 정산에 따른 잔여 운영비 반납액으로, 당초 2,3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23년 기금운영비 실집행률 감소로 정산 반납액이 증가하여 실제 수납액은 3,300만원임.

□ 면허료 및 수수료는 원수보험사와 정부 간 국가재보험 계약에 따른 재보험료 수입으로, 당초 1,484억 9,9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23년 원수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실제 수납액은 21억 5,500만원으로 계획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여유자금 회수는 전년도 기금 전체수입에서 재보험금, 기금운영비 등 지급 소요를 차감한 후 당해 회계연도에 회수하는 자금으로, 당초 2,118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음. '23년 기준 기금수입 4,001억 5,000만원 중 재보험금 1억 1,900만원(농작물 400만원, 양식수산물 1억 1,500만원) 및 기금운영비 5억 9,600만원을 지급한 결과, 실제 수납액은 3,994억 3,500만원임.

2) 지출결산

□ 2024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계획액은 3,703억 7,200만원임.

□ 재보험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 발생 시 국가가 재보험을 통해 그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으로, 재해로 인한 원수보험의 손해율이 전년 대비 상승함에 따라 재보험금 집행액이 1,586억 8,0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기금운영비로 5억 9,9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084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보험금의 집행잔액인 6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2024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일반지출	120,599	-	-	38,681	-	159,280	159,279	-	1
- 재보험금 지급	120,000	-	-	38,681	-	158,681	158,680	-	1
- 기금운영비	599	-	-	-	-	599	599	-	-
정부내부지출	-	-	-	-	-	-	-	-	-
여유자금운용	249,773	-	-	△38,681	-	211,092	249,218	-	-
합 계	370,372	-	-	38,681 △38,681	-	370,372	408,497	-	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3. 축산발전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4년도 축산발전기금은 당초 재산수입 138억 2,900만원, 경상이전수입 1,418억 9,300만원, 관유물매각대 325억 7,700만원, 융자원금회수 2,872억 9,100만원, 여유자금 909억 9,700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955억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 계획액 대비하여 재산수입 증가(15억 3,600만원), 경상이전수입 감소(331억 7,700만원), 관유물매각대 감소(70억 2,800만원), 융자원금회수 감소(541억 4,700만원) 등 총 419억 800만원이 감소한 9,201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음.

□ 재산수입으로 151억 7,100만원, 경상이전수입으로 1,015억 8,500만원, 관유물매각대 255억 4,900만원, 융자원금회수 수입으로 2,331억 4,400만원 등 총 9,129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납기미도래로 인해 재산수입 9,4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71억 3,100만원 등 총 72억 2,5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4년도 축산발전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3,829**	**15,365**	**15,171**	**-**	**94**	**1,442**
관유물대여료	14	14	14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815	15,351	15,157	-	**94**	1,442
경상이전수입	**141,893**	**108,716**	**101,585**	**-**	**7,131**	**△40,308**
위약금	-	-	-	-	-	-
법정부담금	2,832	2,625	2,598	-	27	△234
민간출연금	95,000	63,144	63,144	-	-	△31,856
기타경상이전수입	44,061	42,947	35,843	-	7,104	△8,218
관유물매각대	**32,577**	**25,549**	**25,549**	**-**	**-**	**△7,028**
고정자산매각대	864	587	587	-	-	△277
재고자산매각대	31,713	24,962	24,962	-	-	△6,751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87,291**	**233,144**	**233,144**	**-**	**-**	**△54,147**
융자원금회수	287,291	233,144	233,144	-	-	△54,147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90,997**	**119,605**	**119,605**	**-**	**-**	**28,608**
정부예금회수	90,997	119,605	119,605	-	-	28,608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5,500**	**417,800**	**417,800**	**-**	**-**	**22,300**
전입금	145,500	145,500	145,500	-	-	-
예수금	250,000	272,300	272,300	-	-	22,300
합 계	**962,087**	**920,179**	**912,954**	**-**	**7,225**	**△49,13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도 축산발전기금 수입결산의 특징은 정부예금회수가 계획대비 286억 800만원 증가, 민간출연금 납입이 계획대비 318억 5,600만원 감소하였다는 점임.

□ 융자원금회수액은 계획액 2,872억 9,100만원 대비 541억 4,700만원 감소한 2,331억 4,4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기금 융자사업 중 중도상환, '23년도 회기경과후반납액 규모가 계획액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 재산수입은 계획액 138억 2,900만원 대비 14억 4,200만원 증가한 152억 7,1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융자대여금이자 등 기타민간이자수입이 감소(33억 8,800만원)한 반면 보조금 반납이자 등 기타재산이자수입이 크게 증가(48억 3,000만원)하였기 때문임.

□ 경상이전수입은 계획액 1,418억 9,300만원 대비 403억 800만원 감소한 1,015억 8,5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감소(82억 1,800만원)하고, 법정부담금 및 민간출연금이 감소(320억 9,000만원)하였기 때문임.

□ 관유물매각대는 계획액 325억 7,700만원 대비 70억 2,800만원 감소한 255억 4,9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계획 대비 고정자산매각대 감소(2억 7,700만원)와 재고자산매각대 감소(67억 5,100만원) 때문임.

2) 지출결산

□ 2024년도 축산발전기금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물 수급 관리 88억 6,400만원 증액, 여유자금운용 88억 6,400만원 감액 등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전년도 이월액 29억 7,500만원으로 계획현액은 9,650억 6,300만원임.

□ 축산물수급관리 1,461억 4,000만원, 축산기술보급 522억 1,600만원,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3,657억 8,000만원, 친환경축산(축발) 1,524억 6,300만원, 축산물품질관리(축발) 644억 7,500만원, 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227억 3,800만원, 가축방역(축발) 648억 3,700만원, 기금운영비 17억 1,500만원, 공자기금이자상환(축발) 284억 500만원, 여유자금운용 141억 8,500만원 등 총 9,129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5억 1,900만원, 친환경축산(축발) 8억 200만원 총 13억 2,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417억 9,800만원, 축산물수급관리 55억 6,800만원 등 총 524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축산발전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일반지출	919,372	2,975	-	-	8,864	-	922,348	870,364	1,321	50,663
- 축산물수급관리	149,307	2,400	-	-	8,864	-	151,708	146,140	-	5,568
- 축산기술보급	52,766	-	-	-	-	-	52,766	52,216	-	550
- 축산업경쟁력 제고(축발)	407,522	575	-	-	-	-	408,097	365,780	519	41,798
- 친환경축산 (축발)	154,844	-	-	-	-	-	154,844	152,463	802	1,579
- 축산물 품질관리(축발)	65,511	-	-	-	-	-	65,511	64,475	-	1,036
- 축산물 위생안전성 (축발)	22,845	-	-	-	-	-	22,845	22,738	-	107
- 가축방역(축발)	64,837	-	-	-	-	-	64,837	64,837	-	-
- 기금운영비	1,740	-	-	-	-	-	1,740	1,715	-	25
정부내부지출	30,200	-	-	-	-	-	30,200	28,405	-	1,795
여유자금운용	12,515	-	-	-	△8,864	-	12,515	14,185	-	-
합 계	962,087	2,976	-	-	8,864 △8,864	-	965,063	912,954	1,321	52,45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말산업육성지원 :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기금 보조사업과 마사회 운영경비 간 기능·역할 구분 필요

○ 농어촌형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부지 미확보, 사업계획 포기 등으로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상당수 승마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사업 선정 단계에서 점검을 강화하고 실집행률을 비롯한 사업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축산발전기금 보조금과 마사회 운영경비가 명확한 기능이나 역할의 구분 없이 사용되어 성과관리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마사회 운영경비로 집행되는 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재원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유사·동일 사업의 이원화된 집행 구조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에 걸쳐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승마체험지원 등 말산업 저변확대, 승마시설확충 등의 말산업 기반조성, 우수 승용마 개량지원 등의 말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연구·통계조사 등의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2024년도 계획현액 184억 9,700만원 중 168억 6,900만원을 집행(집행률 91.2%)하고 5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194]

【 2024년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말산업육성지원(보조·융자)	17,922	17,922	575	18,497	16,869	520	1,108	16,141
말산업저변확대	8,725	8,725	-	8,725	8,565	-	160	8,725
말산업기반조성	4,494	4,520	225	4,745	3,762	520	463	3,195
말산업 경쟁력강화	1,028	1,028	-	1,028	891	-	137	986
말산업 역량강화지원	3,675	3,649	350	3,999	3,652	-	347	3,235

나) 검토의견

(1)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말산업 기반조성’ 사업 중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은 농어촌형승마시설[195]을 운영하려

194) 회계(기금)-세부사업: 축산발전기금-말산업육성지원(보조·융자)(3733-315, 321)

195)「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는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에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형 승마시설은 개소당 20억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민간형 승마시설은 개소당 10억원(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2개 연도에 걸쳐 각각 20%, 80%를 지급함.

【 2024년 농어촌형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ㅇ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보조)(1,760백만원)**
- (공공 1년차) 1개×2,000백만원×40%(매칭비율)×20%(1년차)=160백만원
- (공공 2년차) 1개×2,000백만원×40%(매칭비율)×80%(2년차) = 640백만원
- (공공 개보수) 1개×1,000백만원×40%(매칭비율) = 400백만원
- (민간 1년차) 2개×1,000백만원×20%(매칭비율)×20%(1년차)=80백만원
- (민간 2년차) 3개×1,000백만원×20%(매칭비율)×80%(2년차)=480백만원

ㅇ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융자)(1,099백만원)**
- (민간 2년차) 3개×1,100백만원×30%(매칭비율)×80%(2년차)=799백만원
- (민간 개보수) 1개×300백만원×100%(매칭비율)=300백만원

□ 먼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총 28억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실집행액이 9억 3,900만원(실집행률이 33.3%)에 불과함.

【 2024년 농어촌형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보조·융자)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경기	1,108	-	1,108	828	608	54.9	-	280
충북	40	-	40	13	-	-	-	27
전북	840	-	840	320	42	0.05	520	-
전남	160	-	160	160	-	-	-	-
경북	640	-	640	640	289	45.2	-	-
제주	71	225	296	175	-	-	-	121
합계	2,859	225	3,084	2,136	939	30.7	520	428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주요 집행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① 부지 미확보, ② 인허가 등 사전절차 지연, ③ 건축공사 지연, ④ 사업자의 사업계획 포기 또는 변경 등으로,

예컨대, 경북 성주, 전북 익산의 경우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경기 이천, 제주 제주시, 충북 괴산의 경우 사업자의 경영 악화 및 해외 이주 등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음.

【 2024년 농어촌형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행 부진 사유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사업 기간	예산액 (A)	교부액	실집행				집행 부진 사유
				실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경북 성주	'23～'24	640	640	289	45.2	351	-	○ 승마시설 부지 내 기재부 소유 부지 확보를 위해 군에서 기재부에 부지 매입을 요청('24.7.)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처리 지연 ○ 자산관리공사의 사전 매입 동의('25.4.) 및 성주군 매입 완료('25.6.) ○ 승마시설 부지 확보 이후 인허가 완료('25.4.), 공사 발주 및 착공('25.6.)
전북 김제	'23～'24	400	160	42	10.5	118	-	○ 공사 착공('24.8.19.) 이후 당초 준공은 '24년 11월이었으나 시공사 요청에 따라 4개월간 공사 중단 ○ 공사 재개('25.4.) 이후 사용승인 요청('25.6.), 사용승인 완료 예정('25.8.)
전북 익산	'23～'24	400	160	-	-	160	-	○ 사업 부지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24.3.)하였으나, 변경 심사 '부적격' 통지('24.4.) ○ 건축 설계('24.5~7.) 및 건축 인허가 재접수('24.8.) ○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결과 '재심의'('24.10~12.) -사유 : 인근 마을 의견 청취, 편의공간, 인접 도로 소음 문제 등 보완 필요 ○ 마을 주민 민원 해소 및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재심의 절차 이행 중('24.12~'25.7)

지자체	사업 기간	예산액 (A)	교부액	실집행				집행 부진 사유
				실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경기 이천	'23～'24	368	128	-	-	-	128	○ 사업 포기
제주 제주	'23～'24	120	-	-	-	-	-	○ 사업 포기
제주 제주	'23～'24	175	175	-	-	175	-	○ 보조사업자의 개인사정(자금확보 등)으로 사업 규모 축소를 위한 인허가 변경 진행 중(경관심의, 구조심의 등) ○ 인허가 완료 및 사업계획 변경 후 8월 착공 예정
전남 함평	'24～'25	160	160	-	-	160	-	○ 인허가 지연
경기 이천	'24～'25	40	40	-	-	40	-	○ 인허가 지연
충북 괴산	'24～'25	13	13	-	-	-	13	○ 사업 포기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동 사업은 2022년, 2023년에도 실집행률이 각각 15.6%, 50.4%에 그치는 등 유사한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농어촌형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보조·융자)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	1,350	-	1,350	1,110	210	15.6	-	240
2023	1,120	-	1,120	895	564	50.4	225	-
2024	2,859	225	3,084	2,136	939	30.7	520	428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또한, 2024년 기준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287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으로 인해 승마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196] 농어촌형 승마시설 264개의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시설이 22개(8.7%), 하루에 3회(연간 1,000회 이하) 정도 운영되는 시설이 113개(42.8%)로 상당수 시설의 운영실적이 저조함.

【 2024년 농어촌형승마시설 이용현황 】

구 분	실적없음	1~500회 미만	500~1,000회 미만	1,000~5,000회 미만	5,000회 이상	합 계
승마시설 수	22개	50개	41개	123개	28개	264개

주: 이용횟수는 정기승마(연 10회 기준)와 체험승마를 합한 실적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96) 전체 승마시설(체육시설 승마장, 농어촌형 승마시설, 기타 미신고 승마시설) 기준으로 ('13년) 331호→ ('15) 457→ ('17) 512→ ('19) 459→ ('23) 489('24년 말산업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 수립한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서 말 문화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부재로 승마시장의 성장이 더딘 상황으로,[197] 승마시설 대부분이 수익성이 저조하고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 선정 전 필수 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자의 금융조달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실집행률을 비롯한 사업실적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97) 승마산업 규모: (’17) 4,325억원 → (’18) 4,569 → (’19) 4,274 → (’20) 3,060 (말산업종합계획)

(2) 기금 보조사업과 마사회 운영경비 간 기능·역할 구분 필요

□ 한국마사회의 수입은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라 마권 발매금액에서 환급금 및 각종 세금을 제한 발매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198]으로 이루어짐.

이와 같은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이익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사회의 '운영경비'에는 경마사업 시행 비용뿐 아니라 말산업 진흥사업, 사회공헌 사업이 포함됨.

【 한국마사회 운영경비 사용 분야 】

분 야	'24결산	사업내용
경마사업	727,775 백만원	○ 전사경영관리: 전사 차원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선수단 운영 등 ○ 전사경마사업 : 전사 차원의 경주계획, 공정경마, 발매 및 CS 관리, 영천 경마공원 건설 추진 등 ○ 서울경영관리 및 서울경마사업 - 서울경마공원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서울경마공원 매출원가 관리, 서울경마공원의 경마시행, 공정경마, 발매·CS 운영 등 ○ 부산경남경영관리 및 부산경남경마사업 -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부산경남경마공원 매출원가 관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시행, 공정경마, 발매·CS 운영 등 ○ 제주경영관리 및 제주경마사업 - 제주경마공원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198)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
3. 자산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분 야	'24결산	사업내용
		- 제주경마공원 매출원가 관리, 제주경마공원의 경마시행, 공정경마, 발매·CS 운영 등 ○ 지점경마사업 : 장외발매소 개설 및 운영 등
말산업 진흥사업	37,352 백만원	○ 말산업육성사업 : 말산업연구, 말산업인력양성, 혈통등록 등 ○ 제주경주마목장사업 : 경주마 생산지원, 목장관리 등 ○ 장수경주마목장사업 : 경주마 생산지원, 목장관리 등 ○ 육성마사업: 제주 및 장수 경주마 육성업무 지원 등 ○ 승마보급사업 : 승마 보급 및 시설 관리, 말산업 인력 개발 등 ○ 마문화보급사업 : 말박물관 운영 등 ○ 목장/말산업 및 수익사업 추진 등
사회공헌 사업	7,695 백만원	○ 사회환원사업 : 기부금 관리 등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 그런데 마사회의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말산업 육성 관련 축산발전기금 보조금과 마사회 운영경비가 명확한 기능이나 역할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4년 한국마사회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 】

(단위 : 원)

구 분	사업 내역		지원액
말산업육성지원	말산업 저변확대	기승능력인증제 운영	340,625,303
		승마대회 지원	1,041,596,458
	말산업 기반조성	승용마 품평회	445,453,300
	말산업 경쟁력강화	승용마 개량지원	129,959,155
		생산농가 역량강화	52,824,414
		경주퇴역마 용도다각화	33,258,700
		경주퇴역마 조련지원	50,697,191
		도심승마체험 지원	308,452,522

구 분	사업 내역		지원액
	말산업 역량강화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223,180,799
		취업지원센터 운영	349,466,663
		말산업 전문 자격제도 운영	460,356,825
		창업지원센터 운영	65,266,340
		말산업 실태조사	398,931,100
		말산업 정책수립·관리	379,693,299
		말등록 및 이력관리	221,212,047
	총 계		4,500,974,116

예컨대 내역사업 ‘말산업 저변확대’의 ‘민간 승마대회 지원’ 예산의 경우, 마사회는 2023년까지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한국마사회장배 전국승마대회 개최 비용을 보조사업비와 운영경비를 통합하여 집행하였다가, 2024년부터는 마사회 운영경비만으로 해당 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내역사업 ‘말산업 경쟁력강화’ 중 ‘생산농가 역량강화’는 국내 승용마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및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마사회 운영경비로도 생산농가 현장 방문, 축발기금 사업의 심사 지원, 생산농가 간담회 비용 등을 집행하였고,

‘말 용도다각화’는 퇴역마의 렌더링(rendering)[199]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승용마는 축산발전기금 100%, 경

199) 동물 사체 등을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사료 등의 원료로 이용하는 방법

주마는 축산발전기금과 마사회 운영경비를 1:1 매칭으로 지원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모든 말에 대해 축산발전기금과 마사회 운영경비를 1:1로 매칭하여 지원 중임.

내역사업 '말산업 역량강화지원'에는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내장제사대회 개최 지원, 해외장제사대회 참가, 취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되는데, 국내장제사 대회 개최 용역 및 취업지원센터의 기본 경비를 마사회 운영경비에서 부담하고 있음.

【 2024년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과 마사회 운영경비 중복 내역 】

(단위 : 원)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		마사회 운영경비 집행내역	
말산업 저변확대	민간승마대회 개최 지원	아시아 승마대회	142,217,288
		장관배 승마대회 운영	38,138,800
		회장배 승마대회 운영	3,687,000
말산업 경쟁력강화	생산농가 역량강화	승용마 생산농가 현장 방문	2,100,000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현장 심사	4,535,000
		승용마 생산농가 간담회	1,080,000
	말 용도다각화	경주퇴역마 용도다각화	64,291,000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내장제사대회 개최용역	9,970,400
		한국 장제사챔피언십 운영	4,994,000
		장제사대회 집기비품 구매	102,181,526
	취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 및 창업센터 운영	347,880
		창업지원 및 창업센터 운영	670,700
		말산업 취업지원	12,474,940
		말산업 교육과정 운영	1,343,200
		말산업 교육, 컨설팅 및 협의	1,527,500
		취업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803,000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		마사회 운영경비 집행내역	
		교육 개발 및 운영 협의	270,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이와 반대로 마사회 자체사업인 '어린말 승마대회' 개최시 어린말 승마대회 물품 일부를 보조금(말산업 기반조성)으로 집행하거나, 마사회 경주마 개체식별 비용을 보조금(말산업 역량강화지원)으로 집행한 사례도 발견됨.

□ 이러한 사업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음.

첫째, 기금운용계획에서 사업비가 축소된 사업을 마사회 운영경비로 확대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의도한 경비 절감 효과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 '22~'24년도 내내역사업 예산 감축 현황 】

(단위 :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승마대회 개최 지원	1,955	1,600	1,200
말 용도다각화	250	250	100
생산농가 역량강화	100	80	56

※ 자료: 2024년도 말산업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 시행계획

둘째, 동일한 사업이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과 마사회 자체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집행되는 경우 사업별 투입 대비 성과를 명

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지고, 성과 부진이나 집행상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마사회 운영경비로 집행되는 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재원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유사·동일 사업의 이원화된 집행 구조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수급관리(보조): 축산물수급안정(위탁)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준수 및 객관적 집행 필요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수급안정(위탁)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전제로 축산물 할인행사 사업을 집행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축종별 가격 및 수급 동향에 근거하여 축산물수급안정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 취지·효과에 대한 홍보 등 사전 준비와 보조금 집행관리 의무를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축산물수급관리(보조)는 축산물 수급불안 발생 시 선제적인 수급조절 대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려는 사업으로, 낙농통계관리시스템, 축산물수급안정(경상), 축산물수급안정(위탁), 학교우유급식, 계란공판장활성화지원, 가축사육제한보상금,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계획현액 1,120억 2,300만원 중 1,064억 5,500만원을 집행(집행률 94.5%)하고 55억 6,800만원을 불용하였음.[200]

200) 회계(기금)-세부사업: 축산발전기금-축산물수급관리(보조)(3731-303)

【 2024년도 축산물수급관리(보조)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축산물수급관리(보조)	100,849	109,713	2,310	112,023	106,455	-	5,568	92,603
낙농통계관리시스템	600	600	-	600	600	-	-	900
축산물수급안정(경상)	43,257	43,257	-	43,257	43,107	-	150	43,207
축산물수급안정(위탁)	200	9,064	-	9,064	8,986	-	78	200
학교우유급식	46,508	46,508	-	46,508	41,327	-	5,181	39,353
계란공판장활성화지원	4,456	4,456	2,310	6,766	6,766	-	-	3,115
비육용암소시장육성	1,200	1,200	-	1,200	1,041	-	159	1,200
가축사육제한보상금	4,628	4,628	-	4,628	4,628	-	-	4,628

나) 검토의견

(1) 축산물수급안정(위탁)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준수 및 객관적 집행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축산물수급안정(위탁)’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불안정 시 수매·비축을 통해 수급안정을 추진하는 예비비성 사업으로 당초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에 계란 수급 불안정에 따른 신선란 수입(6억 4,200만원) 및 한우·한돈 할인행사 및 계란·닭

고기 납품단가 인하(82억 2,200만원) 지원을 위하여 세 차례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88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201]

【 2024년 축산물수급관리(보조)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사 유
1차 (‘24.2.14.)	200	842	642	□ 신선란 초도물량 수입(112만개)을 위하여 약 842백만원이 소요, 축산물수급안정(위탁)사업 ’24년도 예산은 2억원으로 기금 변경 필요 ※ 642백만원 = 842백만원(750원/구 × 1,123천개) - 200백만원(당초예산)
2차 (‘24.5.12.)	842	6,360	5,518	□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당·정협의(3.15.), 물가 긴급현안 간담회(3.15.) 및 민생경제 점검회의(3.18.) 등을 통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즉각 투입 및 추가 조치 즉시 시행 결정 ○ 한우·한돈 할인행사 및 계란·닭고기 납품단가 지원 규모 확대 추진 ※ 5,518백만원 = 한우 3,000백만원 + 한돈 1,365백만원 + 계란 953백만원 + 닭고기 200백만원
3차 (‘24.12.4.)	6,360	9,064	2,704	□ 축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24.5월 축산물수급안정(위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한우·한돈 할인행사 및 계란·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 ※ 2,704백만원 = 한우 2,208백만원 + 한우 72백만원 + 계란 320백만원 + 닭고기 104백만원

※ 자료: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 가운데 한우·한돈 할인행사는 대형마트 및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및 한돈을 일정 금액 이하로 판매할 때 판매량당

201) 여유자금운용에서 88억 6,400만원을 감액함.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계란 및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는 선별포장업체[202]나 계열업체[203]가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할 때 납품량당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산란계협회 등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음.

□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한우·한돈 할인행사 및 계란·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기간은 2024년 3~5월 중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전제로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절차를 위반한 문제가 있음.

【 2024년 축산물 할인행사 지원 내역 】

구 분	기 간	지원금액(백만원)
한우	3~5월	5,208
돼지고기	3~5월	1,436
계란	4~5월	1,272
닭고기	3~5월	26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2)

203) 축산계열화사업: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2~3월 농축산물 물가 급등[204]으로 인해 당정협의 및 물가 긴급현안 간담회를 통해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3.15.) 축산물 할인행사를 즉시 추진하였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두 차례(’24.5월, ‘24.12월)로 나누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기금관리주체가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205] 이러한 취지에서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미리 집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206] 사실상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음.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비의 부족분을 연말에 이루어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충당함에 따라 위탁사업자가 일정기간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 측면이 있음.

---

204)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 : (1월) 122.71(전년동월비 8.0%↑) → (2월) 125.98(11.4%↑)

205)「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06)「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미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301).

□ 둘째, 2024년 상반기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음.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과실(40.6%↑), 채소(12.2%↑)는 상승폭이 컸으나, 2024년 2~3월 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2.1%에 그쳤고, 닭고기는 전년동월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오히려 2024년 하반기(여름철 및 연말)에 상승폭이 컸음.

【 2024년 농축산물 및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

품목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축산물	122.71	125.98	126.54	123.54	121.90	119.50	120.59	123.15	126.65	125.27	119.00	122.32
전년동월대비	8.0	11.4	11.7	10.6	8.7	6.5	5.5	2.4	2.3	1.2	1.0	2.6
축산물	116.79	115.03	114.35	114.25	114.44	117.94	119.76	117.99	120.57	121.35	119.17	120.03
전년동월대비	-0.6	1.1	2.1	0.3	-2.6	-0.8	2.2	0.8	0.6	0.9	1.7	2.1
국산쇠고기	107.46	105.13	103.50	100.95	99.40	100.20	99.52	99.33	102.74	105.02	104.45	105.92
전년동월대비	-1.2	0.4	0.3	-1.0	-2.3	-2.2	-1.7	-2.7	-2.3	-2.6	-1.8	-1.0
돼지고기	113.61	110.79	110.67	113.80	115.96	124.49	128.92	124.90	128.26	128.19	123.59	123.68
전년동월대비	-2.3	-0.1	1.3	0.3	-5.2	-0.5	5.9	2.8	2.9	4.7	6.5	6.5
닭고기	129.70	130.47	131.82	130.89	129.70	127.79	129.78	129.73	130.02	129.26	124.72	125.33
전년동월대비	-3.8	-1.8	-2.4	-6.5	-7.8	-9.1	-7.1	-8.0	-5.7	-5.3	-6.4	-5.3
달걀	136.53	136.45	134.38	133.78	134.31	134.38	134.75	134.49	133.65	135.23	134.38	134.37
전년동월대비	1.5	4.8	5.7	3.1	0.9	0.2	1.7	1.8	-0.9	-1.2	-1.0	-1.2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반적인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 할인행사를 지원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축산물의 가중치[207]를 고려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축산법」상 축산발전기금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208]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에 특별한 불안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축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인행사를 지원한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긴급한 가격·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축산물수급안정'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금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더욱이 성수기 등에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지원 사업은 각 자조금단체에서도 집행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을 기금에서 중복 지원하는 것은 할인지원 사업 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207) 가중치합 1,000 중 한우 8.6, 돼지고기 9.8, 닭고기 1.5, 달걀 3.0

208)「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조금단체 할인행사 사업 현황 】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한우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한우의 날(11.1) 기념, 시식행사 및 할인판매 행사 추진
	온라인한우장터	온라인한우장터 사이트를 통해 한우 할인판매
	협업소비촉진행사	쿠팡, 컬리 등 온라인 업체와 협업하여 한우 할인판매
	유통사판매지원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한우 할인판매
	도시군지역판매촉진	지역 단위 행사에서 한우 할인판매
돼지	오프라인 홍보 행사	삼겹살데이(3.3), 한돈데이(10.1) 기념 소비촉진 시식회, 할인 행사 등 추진
	온·오프라인 한돈 소비 활성화	한돈몰,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농협 매장 대상 할인행사 및 판매 활성화 지원
닭고기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	유통매장 등 판매점에서의 닭고기 할인행사로 소비촉진 도모
	K-FOOD (삼계탕)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	삼계탕 해외수출 활성화 또는 국내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추진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축종별 가격 및 수급 동향에 근거하여 축산물수급안정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2) 비육용암소시장 육성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육용암소시장 육성’ 사업은 송아지 생산에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기용 암소(미경산우)의 난소결찰·적출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암소 4만 마리에 대해 10만원의 시술비 중 국비 3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2억원이 편성되었음.

【 비육용암소시장 육성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만 14개월령 이하 암소에게 난소 결찰 시술비를 지원하여 송아지 생산 감소 유도하고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 송아지 생산에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가치를 고기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 시행주체 : 주관시도·시군구, 협조농협경제지주, 축산물품질평가원

□ 지원내용 : 한우 암소 난소결찰·적출 시술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 지원조건 : 지자체경상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한우 암소 1마리당 6만원(국비 3, 지방비 3) 정액 지원

□ 사업규모 : ’24년 4만 마리, 40억원(국비 12, 지방비 12, 자부담 16)

○ 40억원 = 4만 마리 × 10만 원/마리

○ 자부담은 지방비, 농협자체비용으로 대체 가능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동 사업은 '22년 한우 사육마릿수가 356만두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여 한우 도매가격의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209]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고기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우 사육두수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임.

【도매가격(원/kg), 암소도축 비중(%), 가임암소수·1세미만개체수(천마리) 】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거세우 도매가격	16,855	18,941	17,710	18,735	19,116	21,241	22,667	20,980	18,619	17,963
암소 도축비중	46.8	48.0	45.7	44.6	44.6	45.5	45.2	47.4	50.4	49.2
가임 암소수	1,094	1,101	1,372	1,427	1,484	1,548	1,631	1,694	1,694	1,645
1세미만 개체수	777	792	834	861	906	962	1,008	1,028	931	883
전체 사육규모	2,769	2,810	2,871	2,962	3,078	3,227	3,415	3,557	3,501	3,37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러나 2024년 동 사업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은 4억 7,400만원(실집행률 39.5%)에 그쳤는데,

209) 한우 가격상승('14~'21)으로 농가 사육의향 제고 시 암소 사육규모의 확대가 번식확대 및 공급증가로 이어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음.

【 2024년 비육용암소시장 육성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지자체 경상보조	1,200	1,200	1,041	1,041	1,041	474	567	39.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와 같이 저조한 실집행률은 암소 난소결찰·적출 시술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이처럼 1차 교부액의 실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차 교부 시 잔여 교부액을 전액 교부함에 따라,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보조금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하였으며,

과반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의 법정 기한(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부 지자체는 현재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사업비를 교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10]에 따른 실적보고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함.

2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

【 2024년 비육용암소시장 육성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및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교부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실적보고서 제출
울산	33	15	18	45.5	2025.2.6.
경기	126	60	66	47.6	2025.2.1.
강원	126	40	86	31.7	2025.4.10.
충북	300	141	159	47.0	미제출
충남	72	17	55	23.6	미제출
전북	75	11	64	14.7	2025.4.18.
전남	36	5	31	13.9	2025.3.5.
경북	231	161	70	69.7	2025.8.11.
경남	36	22	14	61.1	2025.8.11.
제주	6	2	4	33.3	2025.4.28.
계	1,041	474	567	45.5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즉, 신규사업 추진 단계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제도 홍보 등 사전 준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에 대한 점검 등이 부족하여 실집행 미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 취지·효과에 대한 홍보 등 사전 준비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 집행관리 의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이라한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가축개량지원: 한우젖소개량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령 준수 필요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젖소개량지원 사업의 보조비목 체계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게 정비함으로써 지출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의 지출계획 변경은 객관적인 소요산정과 명확한 사업 목적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집행 부진 및 사업목적 미달성으로 이어졌으므로, 계획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을 선발·보급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가종축개량지원 사업, 지역단위개량지원 사업, 소사육방식개선 사업, 우수여왕벌 보급지원 사업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계획현액 527억 6,600만원 중 522억 1,6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0%)하고 5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음.[211]

211) 회계(기금)-세부사업: 축산발전기금-가축개량지원(3732-307)

【 2024년도 가축개량지원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가축개량지원	52,766	52,766	-	52,766	52,216	-	550	49,096
국가종축개량지원	46,353	47,503	-	47,503	47,503		-	47,133
지역단위개량지원	1,713	1,713	-	1,713	1,713	-	-	1,963
소사육방식개선	4,100	2,400	-	2,400	2,400	-	550	-
우수여왕벌보급지원	600	600	-	600	600	-	-	-

나) 검토의견

(1) 한우젖소개량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령 준수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종축개량지원’ 사업 중 ‘한우젖소개량지원’ 사업은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계획교배의 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한우개량사업소, 젖소개량사업소)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4년도에는 총 44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11억원이 증액되어 456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도 한우젖소개량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천원)

세부내역	교부결정액	비 고
1. 한우육종농가사업	3,305,000	한우개량사업소
○ 암소검정비	1,460,000	
○ 우형기 설치비	41,400	
○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1,580,000	
○ 농장후대검정 참여농가 지원	223,600	
2. 한우암소검정사업	3,324,000	한우개량사업소
○ 농가지도비	1,105,000	
○ 유전체분석비	75,000	
○ 친자확인비	549,000	
○ 개량컨설팅비	575,000	
○ 유전체 고능력암소 관리비	200,000	
○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 장려금 지원	610,000	
○ 암소검정시스템 고도화	10,000	
○ 가축인공수정 정보 전산화 사업지원	200,000	
3. 유우군능력검정사업	3,015,000	젖소개량사업소
○ 검정비	2,658,000	
○ 재료비	57,000	
○ 유성분분석기(320-07)	300,000	
4. 유전자원(저지종) 도입 및 보급사업	500,000	젖소개량사업소
○ 저지 수정란 도입	500,000	
5. 한우개량	25,262,000	한우개량사업소
○ 인건비	7,524,000	
○ 운영비	17,738,000	
6. 젖소개량	8,123,000	젖소개량사업소
○ 인건비	2,443,000	
○ 운영비	5,680,000	
7. 가축개량기술교육	145,000	가축개량원
8. 자산취득비(430-01)	877,000	
총합계	44,551,0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런데, ‘한우젖소개량지원’ 사업의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단계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한우젖소개량지원’ 사업 중 개량사업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해당하는 ‘한우개량’ 및 ‘젖소개량’ 사업의 지출계획서상 편성내역을 보면, ‘수용비(210-01)’에 각종 임차료(210-07), 용역비(210-14), 포상금(310-03)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업무추진비(240)’에 직책수행경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제세공과비 등(210-02)’에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210-10)가 계상되어 있는 등[212] 성질이 다른 비용이 동일 비목 내에 혼재되어 있어 사업비와 행정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에 따라 예산 규모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실정임.

【 ‘한우개량’ 및 ‘젖소개량’ 지출계획 구분 내역 】

보조비목	집행 내용
인건비	기본급, 자격급, 상여금, 직책급, 특수지근무수당, 법정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법적부담금, 비정규직 보수
급식비	식대
피복비	직원 근무복, 작업복, 방역복 등
수용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경비수당), 임차료, 용역비(시스템 유지보수, 컨설팅 등),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장려금 및 포상금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212) 괄호 안의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 따른 구분임.

보조비목	집행 내용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관리비, 시설 유지보수 등
재료비	정액제조 재료, 약품비, 사료비, 송아지 매입 및 제비용, 유전자 분석용 재료, 수정란 채란 및 이식 재료, 진단시약 등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직원 행사비
회의진행비	각종 협의회
제세공과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중식비, 직원 복지연금, 직원자녀 학자금, 건강검진비 등

※ 자료: 2024년도 가축개량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 재정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비목 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213] **보조비목 내**에 성격이 상이한 경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사업경비를 절감하고 행정경비를 증가시킬 소지가 있음.

예컨대, 한우개량사업소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사무용 가구 등을 구입하고, 국내여비로 계획된 금액을 국외출장 용도로 집행하기도 하였음.

21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 ‘한우개량’ 사업의 보조비목 내 용도 외 집행 사례 】

집행일자	집행용도	금액(원)	비목
2024-12-26	본관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사무용 가구 구입 비용 지급	99,692,200	시설장비유지비
2024-06-19 등 6건	해외연수 비용 지급, 국외출장 항공권, 체제비, 숙박비 등 지급	25,470,243	국내여비

따라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214] 및 별표 1에서는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 및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지침에 부합하도록 가축개량원에 대한 보조비목 체계를 정비하고, 지출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내역사업 ‘소사육방식개선’에서 상당 예산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215] ‘24.10월 내역변경을 통해 ‘한우개량’의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제세공과비 등을 11억원 증액하였는데, 당시 사유는 가축전염병(럼피스킨

214)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215) 동 내역사업의 보조사업자 또한 농협경제지주로, 당초 4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4억원만 집행하고, 5억 5,0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11억 5,000만원은 내역을 변경하여 한우젖소개량지원 사업에 11억원, 종축등록사업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병) 및 천재지변(집중호우) 대응, 씨수소 선발 시스템 개선, 한우능력평가대회 개최, 전기요금 증가 등 한우개량사업소의 현안 처리를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4.12월 말 '24.10월에 증액하였던 '**재료비**'를 연초 편성되었던 수준보다 감액하고, 노후 축사·사택 개보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 '제세공과비' 등을 증액하는 내용의 지출계획 변경안을 재차 승인하였는바, 사실상 합리적인 소요 예측 없이 불용 예산의 소진 목적으로 '24.10월 한우개량지원 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보임.

【 '24년 가축개량지원 사업 계획 변경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변경 전	'24.10월 변경	'24.12월 변경
1. 한우젖소개량지원	43,374,000	1,100,000	-
가. 한우개량지원	32,036,000	1,100,000	-
1)한우개량	25,262,000	1,100,000	322,943
가) 인건비	7,524,000	-	-
나) 급식비	17,000	-	-
다) 피복비	17,000	-	-
라) 수용비	4,210,277	150,000	355,564
마) 여비	134,347	-	△19,088
바) 시설장비유지비	759,000	260,000	807,098
사) 재료비	10,829,004	520,000	△844,961
아) 업무추진,회의진행비	107,000	-	-

구 분	변경 전	'24.10월 변경	'24.12월 변경
자) 제세공과비	975,372	170,000	24,330
차) 복리후생비	689,000	-	-
2) 사업비	6,774,000	-	△322,943
가) 한우육종농가사업	3,363,761	-	49,946
나) 한우암소검정사업	3,265,239	-	△361,133
다) 가축개량기술교육	145,000	-	△11,756
나. 젖소개량지원	11,338,000	-	-
4. 소 사육 방식개선	4,100,000	△1,150,000	-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노후 축사·사택 개보수 관련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계획 변경 승인('24.12.18.) 전인 '24년 9~12월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216]의 취지와 달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함.

【 노후 축사·사택 개보수 관련 계약 현황 】

구 분	내 용	소요액(원)	계약일	완료일
노후 축사 개보수	본관 앞 도로변 휀스 및 철문 교체	20,354,400	11.27	12.9
	방목지 철문 2차 설치	15,972,000	11.25	12.10
	AI센터 우사 바람막이 문 교체	50,952,000	11.26	12.24
	1방사 우사 지붕 보수	29,238,440	11.25	12.20
	2방사 우사 지붕 개폐 보수	4,370,000	11.28	12.15
	3당대 지붕 비막이 보강	18,330,000	11.28	12.10
	야외 고능력우사 지붕 보수	37,230,000	11.29	12.24
	씨수소우사 유도로 및 창고문 설치	22,578,600	11.25	12.10

2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내 용	소요액(원)	계약일	완료일
	방사 관리사 지붕 보수	29,208,080	11.27	12.23
	예비 변압기 구매	23,980,000	11.27	12.20
	1방사 환풍기 설치	8,140,000	11.18	12.9
	2방사 아랫동 비가림막 설치	8,608,600	11.28	12.12
	1당대우사 사료 급이시설 교체	7,243,500	11.18	12.12
	3당대우사 사료 급이시설 교체	22,654,500	11.27	12.9
	후대우사 사료 급이시설 교체	10,725,000	11.18	11.28
	1검정우사 휴게공간(관리사) 리모델링	32,622,920	9.30	10.31
	1검정우사 휴게공간(관리사) 리모델링 추가공사	13,848,780	11.20	11.22
	구비장 전동셔터 설치	69,300,000	12.17	12.27
	구비장 통로 보강공사	12,077,450	12.18	12.19
	분만우사 환풍기 설치	14,388,000	11.18	12.10
	씨수소우사 보정틀 설치 및 윈치커튼 교체	11,267,740	12.3	12.15
	야외 사양대기실 계단 및 난간 보수	48,952,200	12.4	12.20
	정비실 오일창고 설치 및 비가림막 확장	21,277,300	11.21	12.10
사택 개보수 (사무실 포함)	본관 내부 보수	94,547,200	11.29	12.23
	본관 주차장 보수 및 보강	85,753,800	12.2	12.27
	사택 1,2동 난간 및 샷시 교체	98,549,000	12.2	12.21
합 계		812,169,51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와 개량사업소는 보조사업의 지출계획 변경이 객관적인 소요산정과 명확한 사업 목적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임.

(2) 계획적 신규사업 추진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우수여왕벌 보급지원’ 사업은 꿀벌 질병 등 피해 발생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밀력·질병저항성 등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로 편성됨.

【 우수여왕벌 보급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100봉군 이상 전업농 중심으로 수밀력·질병저항성 등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으로 꿀벌 질병 등 피해 발생 완화 및 생산성 향상
□ (법적근거) 「축산법」 제3조, 「양봉산업법」 제12조
□ (사업기간) ´24. 1. ~ 12.
□ (총사업비) 2,000백만원 (국비 600, 지방비 600, 자부담 800)
※ 산출내역 : 200천원×10봉군×1,000호
□ (지원대상)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 (토종 꿀벌) 3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100봉군 이상 등록하여 사육 중인 농가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용)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우수 여왕벌 및 우수봉군을 구입하는 구입비용 지원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총 1,000호의 양봉농가에 10봉군씩 봉군구입 비용(20만원)의 30%(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3억 2,900만원(실집행률 54.8%)에 그침.

【 2024년 우수여왕벌 보급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강원도	47	-	47	-	0.0
경기도	41	16	25	-	39.0
경상남도	64	35	29	-	54.7
경상북도	167	111	56	-	66.5
부산광역시	2	1	1	-	50.0
울산광역시	3	1	2	-	33.3
인천광역시	4	2	2	-	50.0
전라남도	68	59	9	-	86.8
전라북도	52	38	14	-	73.1
제주특별자치도	17	17	-	-	100.0
충청남도	34	3	31	-	8.8
충청북도	101	46	55	-	45.5
합계	600	329	271	-	54.8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동 사업은 '22년 내성응애 발생, 방제적기 실기, 이상기온 등으로 전체 꿀벌 사육봉군의 43%가 월동 전(농진청 표본조사) 폐사하는 등 양봉농가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편성된 것이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여왕벌(장원벌, 로열1호, 젤리킹, 봉교1호)을 도기술원에 보급하면, 도기술원 및 종봉농가[217]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증식한 후 일반 양봉농가에 제공하는 체계로

217) (농촌진흥청) 종봉농가 1. 여왕벌 및 숫벌 양성 경험과 기술이 능숙한 자 2. 격리도서지역에 여왕벌 육종 및 증식 공간이 확보된 자 3. 인공수정이 가능한 자

설계되어 있어, 농촌진흥청의 증식시설 구축(도별 1개소, 총 9개소[218])이 선행되어야 일반 양봉농가에 우수여왕벌이 보급될 수 있는 구조임.

【 우수여왕벌 보급체계 】

구분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보급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
담당기관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목적	최근 월동꿀벌의 반복적 피해발생으로 국내 꿀벌산업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꿀벌 농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꿀벌 국가보급체계 구축	꿀벌 피해 발생 완화를 위해 양봉 전업농을 중심으로 질병저항성 및 수밀력이 우수한 보급여왕벌 공급
사업기간	2024~2026	2024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24년 사업비	5,725백만원(국비)	600백만원(국비)
사업대상	도농업기술원 및 종봉농가 등	양봉농가
추진체계	**원원여왕벌**(농진청) → **원여왕벌**(도기술원) → **보급여왕벌 전문증식**(도기술원·종봉농가) → **보급여왕벌 현장확산**(양봉농가) 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차이점	여왕벌 우수품종 개량 및 종봉 전문농가 육성	종봉농가를 통해 증식된 보급여왕벌 현장 공급
주요 지원내용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운영 지원,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기술 등	우수 여왕벌 봉군 구입비 지원

※ 자료: 농식품부 제출

218) 이후 5개소 구축으로 계획이 변경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보급체계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 여왕벌 봉군 구매 지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우수여왕벌 증식장이 인허가, 지역 민원 등으로 구축이 지연되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음.

【 우수여왕벌 보급 증식장 구축 현황 】

사업 연도	시도	증식장 위치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50%)	비고
2023 (3개소)	충남	보령 삽시도	2,400백만원	준공('25. 3)
	전남	영광 낙월도	2,400백만원	준공('25. 3)
	경북	통영 사량도	2,400백만원	준공('25. 8)
2024 (2개소)	전북	군산 연도	2,400백만원	준공('25. 12)
	전남	진도 가사도	2,400백만원	준공('25. 12)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9월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당초 우수여왕벌이 포함된 봉군 구입에 한정되었던 보조 대상 범위를 '우수봉군'으로 확대하여 보조 대상 범위를 완화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일부 예산은 10월 이후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품종을 보급하려는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2024년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지침 개정사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개정전)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개정후)
○ 우수여왕벌*이 포함된 봉군(소비 3매 이상 착봉 봉군) 입식비 * 장원벌, 로열1호, 젤리킹, 봉교1호	○ (동 일)
○ <추 가>	○ 우수봉군* 입식비 * (서양종 꿀벌)소비 5매 이상(착봉률 80% 이상) * (토종 꿀벌) 소비 3매 이상(착봉률 80% 이상) * 판매(공급)농가 기준 1)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로 등록한 지 3년 이상 경과 및 100봉군 이상 사육 농가 2) 봉군 판매일 기준 2개월 이내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2·3종)에 대해 '양성'이 나오지 않은 농가 3) 공급 시 육안으로 응애 발생이 없어야 함 4) 농진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서 우수봉군 공급 가능농가로 인정하는 농가

□ 이처럼 본 사업은 사업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할 뿐 아니라 당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계획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4) 가축분뇨처리지원(보조·융자):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 개선 필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축산환경관리원 청사신축 기본계획 용역 분할 계약

○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은 대상자 선정 시 입지 확보 가능성 및 주민 수용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부족함에 따라 추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수용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환경부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청사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형식상 연도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우회하였는바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약 사무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이 필요함.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에너지화 확대를 통한 축산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 악취측정ICT기계·장비, 공동자원화시설,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가축분뇨이용촉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산환경관리원운영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계획현액 689억 4,600만원 중 전액을 집행(집행률 94.5%)하였음.[219)]

219) 회계(기금)-세부사업: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보조·융자)(3735-329, 330)

【 2024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보조·융자)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가축분뇨처리지원	68,946	68,946	-	68,946	68,946	-	-	72,294
축산악취개선	26,460	25,806	-	25,806	25,806	-	-	26,460
악취측정ICT기계장비	500	500	-	500	500	-	-	500
공동자원화시설	25,010	24,522	-	24,522	22,671	-	-	28,164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250	250	-	250	250	-	-	250
가축분뇨이용촉진	3,200	3,200	-	3,200	3,200	-	-	3,2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6,125	7,267	-	7,267	7,267	-	-	6,125
축산환경관리원운영	7,401	7,401	-	7,401	7,401	-	-	7,595

나) 검토의견

(1)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 주민수용성 확인 절차 강화 및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중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민간형 6개소 및 공공형 1개소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209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4년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민간형> 19,571백만원
· [3년차] 8,425
- (함평) 11,450백만원 × 70%(국비50, 융자20) × 10%
- (고성) 15,000백만원 × 70%(국비50, 융자20) × 45%
- (익산) 9,200백만원 × 70%(국비50, 융자20) × 45%
· [2년차] 8,059
- (담양) 19,600백만원 × 70%(국비50, 융자20) × 45%
- (제주) 12,150백만원 × 70%(국비50, 융자20) × 25%
· [1년차] 3,087백만원
- (신규) 3개소 × 14,700백만원 × 70%(국비 50, 융자 20) × 10%
○ <공공형> 1,400백만원
· [3년차] 1개소 × 40,000백만원 × 70%(국비 50, 융자 20) × 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 중 '공공형 에너지화'는 1개소(제주)에 대한 3년차 사업비로 2024년에는 14억원, 사업이 개시된 2022년도부터 3년간 총 87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전액 불용됨.

【 2022~2024년도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농식품부		지자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제주	2022	2,100	2,100	2,100	-	2,100	-	2,100	-
	2023	5,250	2,625	2,625	2,100	4,725	-	4,725	-
	2024	1,400	-	-	4,725	-	-	-	6,82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가) 주민수용성 확인 절차 강화 필요

□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은 주민 반대로 인한 다수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포기 사례를 감안하여[220]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함으로써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로 추진한 사업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첫 사업대상자로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선정하였는바, 사업 예정부지확보 노력 및 주민동의 절차 추진상황 등 부분에서 JDC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임.[221]

그러나 JDC는 '22~'24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민원 심화로 인해 최종적으로 부지 확보에 실패하였고, '24.12월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220) '07년부터 '22년까지 주민 반대로 인해 가축분뇨처리시설 34개소 사업포기
22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골칫거리 가축분뇨, 주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파크로 변신, 2022.4.11.

【 2022~2024년도 제주시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 진행 경과 】

○ 제주 JDC '22년 공동자원화 공공형 사업자 선정('22.7월)
○ 최초 사업부지 토지매입 가격 협상 결렬('23.6월)
○ 부지 변경 계획 수립 및 대체부지* 토지매각 확약 완료('23.7월)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22-153 일원, 대상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평당 70만원(약 70억원)으로 토입 매입단가 확정('23.10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승인('23.11월)
○ 국토부 승인 과정에서 사업부지 인근 추가 민원 발생 등으로 주민민원 해소 등 요구('23.12월)
○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요구(안) 마련*('24.4월)
* 주민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 총 10회 실시하여 태양광 설치 등 주민요구사항 협의안 마련
○ 주민 대상 총회 및 상생협약 체결('24.7월)
○ 지역 민원 심화에 따라 최종 사업 포기서 제출 ('24.12월)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는 대상자 선정 시 입지 확보 가능성 및 주민 수용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부족했으며,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은 민간 주도 사업에 비해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 용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업이 추진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022년 공동자원화 시설 시행지침」에 따르면 민간형 사업신청자의 경우 법인명의 소유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하여 주민동의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나, 공공형 사

업의 경우 사업부지가 미확보된 경우에도 주민동의 절차 이행계획[222]을 제출하는 경우 예정부지를 제시해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JDC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음.

그 결과 민간형과 차별화된 첫 공공형 사업이 추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예산이 장기간 이월·불용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한 공공형 에너지화 실패 방지를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 등 사업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환경부 사업과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한편, 환경부에서도 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223] 두 사업 모두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과 환경

222) 사업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등

223)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방침 결정(해수부, '07.3.7.)에 따라, '07년부터 연간 50만톤 이상을 전량 자원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환경부, 민간은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시작함.

부 사업 간 실질적 차별성이 크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사업 비교 】

<table>
<tr><th>구분</th><th>공동자원화시설
(농식품부, 90개소)</th><th>공공처리시설
(환경부, 108개소)</th></tr>
<tr><td>사업 목적</td><td>• 가축분뇨 자원화처리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td><td>•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td></tr>
<tr><td>지원 내역</td><td>•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민간형: 퇴·액비화, 에너지화
- 공공형: 에너지화</td><td>• 가축분뇨 통합바이오가스화 신·증설
• 기존 공공처리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 전환
- 음식물(음폐수),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 처리하는 경우 최우선 반영</td></tr>
<tr><td>운영 기관</td><td>• 민간(축산농가, 농업법인), 농·축협 등</td><td>•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등</td></tr>
<tr><td>사업 대상</td><td>• 농업법인, 축산업허가자, 생산자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td><td>• 지자체, 농·축협</td></tr>
<tr><td>규모</td><td>• 70톤/일 이상</td><td>• 제한 없음</td></tr>
<tr><td>‘24년 기준 사업비</td><td>• 바이오가스화 100톤 기준 147억</td><td>• 바이오가스화 100톤 기준 265~355억
* 정화단독, 연계처리, 액비처리에 따라 상이</td></tr>
<tr><td>반입 비율</td><td>• 시설 반입용량의 70% 이상 가축분뇨</td><td>• 시설 반입용량 50% 이상 가축분뇨</td></tr>
<tr><td>지원 조건</td><td>• 공동자원화 지원조건(%)
<table>
<tr><th>구분</th><th>국비</th><th>지방비</th><th>융자</th><th>자담</th></tr>
<tr><td>퇴·액비비</td><td>40</td><td>30</td><td>30</td><td>-</td></tr>
<tr><td>바이오연계</td><td>40</td><td>30</td><td>30</td><td>-</td></tr>
<tr><td>에너지화</td><td>50</td><td>20</td><td>20</td><td>10</td></tr>
</table></td><td>• 공공처리시설 지원조건(%)
<table>
<tr><th>구분</th><th>국비</th><th>지방비</th><th>자담</th></tr>
<tr><td>광역시</td><td>60</td><td>40</td><td>-</td></tr>
<tr><td>광역시(군지역)</td><td>80</td><td>20</td><td>-</td></tr>
<tr><td>시·군·구</td><td>80</td><td>20</td><td>-</td></tr>
<tr><td>농·축협</td><td>70</td><td>10</td><td>20</td></tr>
</table></td></tr>
</table>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특히, 두 사업 모두 지자체 등의 가축분뇨 자원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비율은 환경부 지원 사업이 더 높은 상황임.

□ 이 경우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이 저하되고 동일 목적의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자의 혼선 및 행정력의 비효율적 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사업 건축기획 용역 계약

□ 축산환경관리원운영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224]에 따라 친환경적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축산환경관리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74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100.0%) 집행하였음.

【 2024년도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사업 세부내역 】

구 분		예산(백만원)	집행(백만원)	집행률(%)
합 계		7,401	7,401	100.0
축산환경관리원 운영지원	인건비	3,741	3,741	100.0
	운영비	1,243	1,243	100.0
	사업비	2,417	2,417	100.0

※ 자료: 축산환경관리원 제출

□ 축산환경관리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의 민간건물(2개층)을 임차하고 있으나, 충청남도·공주시에서 공주시 동현동 일원 토지의 30년 무상장기임대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2024년 7월 청사를 공주시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충남도청, 공주시와

2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MOU를 체결하고, 충남 공주시 청사 신축 계획(안)을 마련함.

【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 계획(안) 】

<table>
<tr><td>소재지</td><td>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일원</td><td rowspan="4">  </td></tr>
<tr><td>청사부지</td><td>공주시 무상장기임대(30년)</td></tr>
<tr><td>청사면적</td><td>연면적 7,200㎡(전용 5,400㎡, 공용 1,800㎡)</td></tr>
<tr><td>신축규모</td><td>3층 2개동(사무실 및 분석센터 3,500㎡,
교육센터 3,700㎡, 주차공간 150대)</td></tr>
<tr><td>사업비</td><td colspan="2"><table>
<tr><th>구분</th><th>금액(백만원)</th><th>세부내역</th><th>비고</th></tr>
<tr><td>설계비</td><td>1,467</td><td>26,496백만원×5.5%</td><td>공공발주사업 설계대가 산정
*직선보간법 4.89%+녹색·에너지</td></tr>
<tr><td>건축비</td><td>26,496</td><td>7,200㎡×368만원/㎡</td><td>'24년 공공건축 평균 단가(368만원/㎡)</td></tr>
<tr><td>감리비</td><td>2,120</td><td>26,496백만원×8%</td><td>「건설기술진흥법」 기준 요율(8%)</td></tr>
<tr><td>합계</td><td>30,083</td><td>-</td><td>-</td></tr>
</table></td></tr>
</table>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후 축산환경관리원은 2024년 10월 16일 정책·환경 여건 분석 기반 청사구축 방향성 도출을 위하여 연구용역비(260-01) 중 2,000만원으로 1차 건축기획 용역을 체결하였고, 2025년 2월 3일에는 청사구축 설계 및 사업추진 방향성 도출을 위하여 2,980만원의 2차 건축기획 용역을 체결하였음.

【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사업 건축기획 】

연번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수의계약사유
1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사업 건축기획	2024/10/16~ 2024/12/20	20,000천원	건축사무소 연화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사업 건축기획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2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사업 건축기획 (2차년도)	2025/2/3~ 2025/6/20	29,800천원	건축사무소 연화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사업 건축기획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 (여성기업)[225]

※ 자료: 축산환경관리원

□ 그런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동 계약은 당초부터 5개월(20주)간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2024년 연구용역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25회계연도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을 전제로 차년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연구용역비(260-01) 집행내역 】

연번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1	직무분석 및 평가 고도화	2024/05/02~ 2024/07/30	19,800천원	노무법인 위맥
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취득 용역	2024/08/08~ 2024/12/06	9,174천원	㈜한국표준기술원
3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사업 건축기획 용역	2024/10/16~ 2024/12/20	20,000천원	건축사무소 연화

※ 자료: 축산환경관리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사업 건축기획 예정 공정표 】

과업내용	추진일정 (20주)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Ⅰ. 부지현황조사 및 건립기본방향 도출	■	■	■	■																
Ⅱ. 수요조사				■	■	■	■	■												
Ⅲ. 적정규모						■	■	■	■	■	■									
Ⅳ. 건축 기본구상(안)								■	■	■	■	■	■	■	■	■				
Ⅴ. 사업 집행계획 및 시설 운영관리 방안															■					
Ⅵ. 착수보고회	■																			
Ⅶ. 중간보고회									■											
Ⅷ. 최종보고회																		■		
Ⅸ. 결과물 제출																			■	■

※ 자료: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신축사업 건축기획 용역 과업지시서(2024.10.)

□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 제20조[226]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은 실질적으로 하나인 과업을 형식상 연도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국고금 관

226)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리법」 제20조를 우회하였으므로,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약 사무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이 필요함.

5) 기타경비: 관서운영경비 미대상 지출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 축산발전기금은 관서운영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용임금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등 예산 집행담당자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등 국고금 지출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비는 축산발전기금의 위탁관리기관인 농협경제지주의 기금관리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 6억 2,200만원 중 5억 9,700만원(집행률 96.0%)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227]

【 2024년도 기타경비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기타경비	622	622	-	622	597	-	25	724
인건비	43	43	-	43	40	-	3	42
운영비	459	456	-	456	434	-	22	439
여비	7	10	-	10	10	-	-	7
업무추진비	15	15	-	15	15	-	-	15
연구용역비	-	-	-	-	-	-	-	120
민간이전	92	92	-	92	92	-	-	95
유형자산	6	6	-	6	6	-	-	6

227) 회계(기금)-세부사업: 축산발전기금-기타경비(7078-201)

나) 검토의견

□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228]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관의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하되,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관서운영경비)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229]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제20조와 관련 별지 제1호에 따르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운영비(210목), 특수활동비(230목) 등은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음.

그러나 인건비(110목) 중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외에 일상적인 인건비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포함되

---

228)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29)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③ 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지 않는바,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관의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함.

□ 그런데 축산발전기금의 위탁관리기관[230]인 농협경제지주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보수 및 상여금 등 상용임금(110-03목) 전액(4,0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관서운영경비 미대상 인건비(110-03)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 】

연번	일 자	집행 내용	집행액(원)
1	2024-01-30	24년 1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851,710
2	2024-02-14	24년 2월 상용임금 지급	300,000
3	2024-02-23	24년 2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536,740
4	2024-03-21	24년 3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242,710
5	2024-04-22	24년 4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944,470
6	2024-05-24	24년 5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288,850
7	2024-06-24	24년 6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366,660
8	2024-07-22	24년 7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405,560
9	2024-07-22	24년 7월 특별상여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300,000
10	2024-08-14	24년 8월 특별상여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500,000
11	2024-08-21	24년 8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412,790
12	2024-09-04	24년 9월 명절상여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400,000
13	2024-09-23	24년 9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235,480

230) **「축산법」 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연번	일 자	집행 내용	집행액(원)
14	2024-10-21	24년 9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503,010
15	2024-11-01	24년 10월 인건비(상용임금_퇴직자정산) 지급	4,647,640
16	2024-11-01	24년 10월 인건비(상용임금_퇴직급여) 지급	5,064,240
17	2024-11-01	24년 10월 특별상여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1,000,000
18	2024-11-22	24년 11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529,510
19	2024-12-24	24년 12월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2,281,620
20	2024-12-30	24년 12월 특별상여 인건비(상용임금) 지급	500,000
합 계			40,310,99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고금 지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건비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축산발전기금은 관서운영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원인 행위가 관서운영경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담당자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등 국고금 지출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14. 양곡증권정리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4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은 당초 사업운용수입 2억 8,700만원, 정부내부수입 1조 5,110억 9,400만원, 여유자금회수 197억 1,500만원 등 총 1조 5,310억 9,6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및 여유자금 회수금 증가 등으로 193억 1,700만원이 증가한 1조 5,504억 1,300만원이 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을 전액 수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사업운용 수입	287	1,637	1,637	-	-	1,350
- 이자수입	287	1,637	1,637	-	-	1,350
정부내부수입	1,511,094	1,511,094	1,511,094	-	-	-
- 공자기금예수금	1,350,192	1,350,192	1,350,192	-	-	-
- 일반회계전입금	160,902	160,902	160,902	-	-	-
여유자금회수	19,715	37,682	37,682	-	-	17,967
합 계	1,531,096	1,550,413	1,550,413	-	-	19,31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4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수입결산의 특징은 수입계획액에 비해 사업운용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액은 증가했다는 점임.

□ 사업운용 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2억 8,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16억 3,700만원으로, 이는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조 5,110억 9,400만원이었며, 전액 수납하였음.

2) 지출결산

□ 2024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지출결산을 보면, 당초 지출계획액 및 지출현액은 1조 5,310억 9,600만원임.

□ 정부내부지출 1조 5,131억 1,400만원과 여유자금운용 372억 9,900만원 등 1조 5,504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자기금 원금규모 감소로 인한 이자상환 집행잔액 179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4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계획 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일반지출	-	-	-	-	-	-	-	-	-
정부내부지출	1,531,096	-	-	-	-	1,531,096	1,513,114	-	17,982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1,427,000	-	-	-	-	1,427,000	1,427,000	-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104,096	-	-	-	-	104,096	86,114	-	17,982
여유자금운용	-	-	-	-	-	-	37,299	-	-
합 계	1,531,096	-	-	-	-	1,531,096	1,550,413	-	17,98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